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Ⅱ. 민족경제의 동태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1) 무역구조의 변동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청일전쟁 이전 무역품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수입품의 중심은 개항 직후부터 줄곧 면제품이었다. 면제품은 그 비중이 차츰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청일전쟁 직전에도 총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반면 미곡과 콩은 1890년 이래부터 수출주종품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그 이전에도 미곡과 콩은 중요한 수출품이었지만, 그 수출액은 매우 가변적이었고, 牛皮가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한 해가 많았다. 1890년을 기점으로 미곡·콩 등의 곡물을 수출하여 金巾 등의 면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1880년대 후반부터 해마다 무역수지의 적자를 보았는데, 그 상당한 부분은 금의 수출로 메워졌다. 조선이 농산물과 광산물이라는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가 정착된 기본적인 원인은 공업생산의 기술격차가 현저하여 조선이 공산품에서는 比較劣位에 있었던 점에서 구할 수 있다.

〈표 1〉 수출입액과 중요 수출입품의 비중

(단위:圓,%)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총 액	미곡	콩	총액	면제품	7989		
1887	804,996	11.2	41.7	2,815,441	67.3	3,620,437	- 2,010,445	
1888	867,058	2.5	54.4	3,046,443	64.4	3,913,501	- 2,179,385	
1889	1,233,841	6.3	52.3	3,377,815	50.6	4,611,656	- 2,143,974	

1890	3,550,478	57.4	28.3	4,727,839	56.6	8,728,317	- 1,177,361
1891	3,366,344	54.1	27.1	5,256,468	54.7	8,622,812	- 1,890,124
1892	2,443,739	40.9	32.7	4,598,485	47.5	7,042,224	- 2,154,746
1893	1,698,116	21.6	37.0	3,880,155	44.7	5,578,271	- 2,182,039
1894	2,311,215	42.4	21.9	5,831,563	42.8	8,142,778	- 3,520,348
1895	2,481,808	29.8	37.2	8,088,213	58.3	10,570,021	- 5,606,405
1896	4,728,700	53.1	27.0	6,531,324	53.3	11,260,024	- 1,802,624
1897	8,973,869	61.9	19.1	10,067,514	52.4	19,041,383	- 1,093,645
1898	5,709,489	48.3	19.7	11,825,249	43.9	17,534,738	- 6,115,760
1899	4,997,845	28.4	39.5	10,307,830	52.2	15,305,675	- 5,309,985
1900	9,439,867	38.4	25.1	11,013,590	52.3	20,453,457	- 1,573,723
1901	8,461,939	49.6	22.2	14,822,003	41.7	23,283,942	- 6,360,064
1902	8,317,070	42.4	20.9	13,657,063	40.7	21,974,133	- 5,339,993
1903	9,477,603	44.6	16.1	13,874,814	43.3	23,352,417	- 4,397,211
1904	6,933,504	18.8	34.6	27,034,345	31.3	33,967,849	-20,100,841
1905	6,904,301	12.9	37.8	31,959,582	37.6	38,863,883	-25,055,281
1906	8,132,844	19.7	43.2	29,534,857	27.8	37,667,701	-21,402,013
1907	16,479,834	45.9	23.6	41,611,530	30.2	58,091,364	-25,131,696
1908	13,463,947	48.2	25.0	41,021,436	27.6	54,485,383	-27,557,489
1909	15,399,678	35.9	22.8	36,646,256	25.4	52,045,937	-21,246,578
1910	18,868,177	34.1	27.7	39,737,039	29.0	58,605,223	-20,868,862

^{*} 李憲昶,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硏究》(서울大 경제학박사학위논문, 1990), 94쪽.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의 주된 무역상대국은 일본과 청국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조선과 거래하는 무역국 중에 청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라의 비중은 수출과 수입을 막론하고 1% 미만이었다. 구미 자본주의국은 조선시장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이전수출무역에서는 일본의 압도적인 우위가 변하지 않았지만, 수입무역에서는 청국의 지위가 현저히 신장되었다. 수출주종품인 미곡과 콩은 거의 일본에수출되어서,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해마다 전체의 9할을 넘었다. 청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6년 18%로부터 1893년

49%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표 2〉에 의하면, 金의 수출에서도 청국의 비중이 급속히 신장되어 1890년부터는 일본을 능가하게 되었다. 청국에는 인삼·해삼·종이류 소액을 제외하면 특별히 수출할 만한 상품이 없어서, 수입품의 대금은 주로 금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이다.

〈丑 2〉 貿易額의 清・日別 構成

(단위:천圓,%)

	1			1					L ES, 707
연도	輸入額	日本	淸 國	輸出額	日本	淸 國	金輸出	日本	淸 國
1886	2,474	82	18	504	97	3	1,130	81	19
1887	2,815	74	26	805	97	2	1,388	85	15
1888	3,046	72	28	867	91	8	1,374	75	25
1889	3,378	68	32	1,234	91	9	982	62	38
1890	4,728	65	35	3,550	98	2	750	37	63
1891	5,256	61	39	3,366	96	4	689	40	60
1892	4,598	55	45	2,444	93	6	853	43	57
1893	3,880	50	49	1,698	91	8	919	46	54
1894	5,832	63	35	2,311	89	7	934	68	32
1895	8,088	72	26	2,482	95	4	1,353	78	22
1896	6,531	66	33	4,729	93	6	1,390	58	42
1897	10,068	64	35	8,974	90	8	2,034	47	53
1898	11,818	57	42	5,709	79	20	2,376	50	50
1899	10,227	65	34	4,998	84	14	2,933	70	30
1900	10,940	75	24	9,440	77	21	3,633	84	16
1901	14,696	62	38	8,462	87	9	4,993	97	3
1902	13,541	64	36	8,317	79	18	5,064	99	1
1903	18,219	63	29	9,477	80	16			
1904	26,805	71	19	6,934	82	18			
1905	31,960	74	17	6,904	78	22			
1906	29,654	77	14	8,133	85	9			
1907	41,436	66	11	16,498	77	19			
1908	41,021	59	12	13,464	77	16			

^{*1. 1885~1893}년은《中國海關年報》, 附錄〈朝鮮海關年報〉.

^{2. 1894~1896}년은 信夫淳平. 《韓半島》(東京:東京堂書店. 1901). 647~648쪽.

^{3. 1897}년 이래는《第一次統監府統計年報》, 243~244쪽과《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 401쪽.

^{4. 1894}년 이래의 金輸出은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1943), 46~47쪽.

^{5. 1906}년 8월까지의 무역통계법은 最近經由國에 의하여 수입국을 구별하였지만, 동년 9월 이래부터는 製造國에 의하여 구별함.

156 Ⅱ. 민족경제의 동태

《표 2》에 나타난 1906년 8월까지의 수입무역 통계는 製造國이 아니라 最近經由國으로 분류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 이전에 수입된 金巾을 중심으로 하는 면제품은 대부분 구미 자본주의국가의 제품이었고, 청 국상인과 일본상인이 그 中繼貿易에 종사하면서 상업이윤을 획득하였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산업혁명을 수행한 구미국가의 압도적인 공업생산력의 우위가 공산품을 수입하고 1차산품을 수출하는 조선의 무역구성을 결정지었고, 일본이나 청국은 조선에 대하여 공업생산의 확고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은 청국과 일본을 매개로 하여 구미 자본주의국에 대하여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農工分業關聯을 맺었던 것이다. 개항장무역에 늦게 참여한 청국이 수입무역에서 현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청국상인이 일본상인에 비해 자본력이 우월하고 상업수완과 신용도에서 앞섰고, 중계무역항으로서 상하이(上海)가 나가사키(長崎)보다 우월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의 청국의 정치적 위세가 청국상인의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청국무역을 뒷받침하였던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표 3〉 對日 수입품의 製造地別 구성

(단위: 천圓, %)

							C L / 0 /
연 도	輸入額	日本産	外國産	연 도	輸入額	日本産	外國産
1880	1,148	12	88	1889	1,093	74	26
1881	1,093	10	90	1890	1,251	82	18
1882	1,743	11	89	1891	1,466	86	14
1883	438	41	59	1892	1,411	87	13
1884	457	48	52	1893	1,301	84	16
1885		50	50	1894	2,365	83	17
1886	829	85	15	1895	3,831	89	11
1887	552	65	35	1896	3,367	91	9
1888	707	79	21	1897	5,197	90	10

^{*} 北川修,〈日淸戰爭までの日鮮貿易〉(《歷史科學》1-1, 1932),〈제3표〉와〈제9표〉로부터 작성.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에 이미 중계무역을 탈피하려는 조짐을 보였

음이 주목된다. 〈표 3〉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에 일본제품의비중은 1882년 이전까지 1할 남짓하다가 1883년 이래에는 5할 전후로 상승하였고, 1890년부터는 수입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마다 8할을 넘어섰다. 일본이조선에 대한 자국산 제품 수출의 비중을 증대한 것은, 〈표 4〉에 나타난 바와같이, 당시 수입 주종품인 金巾의 중계무역을 청상에게 탈취당한 점에 기인한 면이 있었다. 금건의 중계수입 중에 일본상인의 몫은 1886년부터 1할 미만으로, 1888년부터 2% 이하로 떨어졌다. 청일전쟁 직전에는 청국상인이 금건 수입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금건의 중계무역의 열세는 일본으로 하여금일본산 면직물의 수출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일본의산업화의 개시에 따른 자국 공산품의 수출능력의 확대이다. 일본에서는 이시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雜工業이 성장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면방적업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이 발흥하였다.

〈표 4〉 金巾 中繼輸入의 清・日商間 구성

(단위: 천圓, %)

연 도	수입액	日本商	清商	연 도	수입액	日本商	清商
1885	555	16	89	1890	834	2	98
1886	522	7	93	1891	1,166	1	99
1887	678	7	93	1892	850	0.5	99.5
1888	699	2	98	1893	658	0.5	99.5
1889	492	2	98				

- *1. 北川修,〈日淸戰爭までの日鮮貿易〉(《歷史科學》1-1, 1932),〈제11표〉로부터 작성.
 - 2. 1885년의 구성비가 100을 넘는 것은 일본상과 청상의 수입액을 합한 것이 총수 입액보다 많기 때문임.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표 1〉에서 보면, 무역액은 다소 기복이 있지만 급증하는 추세였다. 1894~1910년 동안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7배정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수출입액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직전에 정체된 상태에 있다가 전쟁을 획기로 하

여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두 전쟁이 조일무역의 확대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전쟁은 무역시장에서 일본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청일전쟁 직전에 맹렬한 기세로 성장하여 총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던 청국의비중이 청일전쟁 이후에는 30%대로 하락하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10%대로하락하였으며, 그 반면 일본수입품의 비중이 신장하였다. 수입무역에서 일본의 지위 상승은 금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을 높였다. 〈표 2〉에 의하면, 청일전쟁 직전 금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4할대이던 것이 그 직후에 7할 내외로급등하였다.

일본제 면제품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시장을 급속히 개척하였다. 전쟁 중에 군수품의 조달과 노동력의 정발에 수반하여 다액의 일본화폐가 산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조선인의 金巾 등의 구매가 촉진되었다. 일본정부는 전쟁 중에 금건의 직수입, 유력 자본의 진출, 내지행상의 장려, 일본제 면제품의 판매 확대 등의 무역확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쟁 후에 금건의 직수입, 면제품 수출의 비약, 내지행상의 진전과 內地雜居, 일본상인의 자본축적, 甲午改革에 의한 판로 확대가 이루어져 무역이 확대되었던 것이다.1) 청일전 쟁은 무역담당자인 양국 상인의 세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본의 무역우위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하였다. 청국의 패배로 청국상인은 일시적으로 철수하여야 했고, 다시 복귀하였지만 상업활동을 뒷받침할 정치적 후원은 기대할수 없었다. 물론 청일전쟁이 일본의 조선시장 개척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당시 수입주종품이던 洋金巾의 수입권은 청국상인이 철수하자 일본상인이 장악하였지만, 얼마 후에 복귀한 청국상인이 탈환하였던 것이다. 러일전쟁을 통하여 일본의 정치적 지배가 확고해진 후부터 비로소 일본 상인이 중계무역에서도 청국상인을 압도할 수 있었다.2)

수입품 중 일본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무역시장에서 일본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인은 일본의 산업혁명의 수행에 따른 청일간 생산력 격차의 확대였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을 갈라놓고 일본의

¹⁾ 朴宗根、〈日清戰爭と朝鮮貿易〉(《歷史學研究》536, 1984).

²⁾ 朝鮮貿易協會、《朝鮮貿易史》(1943)、45~46쪽.

산업혁명의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조선은 밑으로부터 변혁을 지향한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세력에 패배당하였고, 청국의 洋務運動은 파산을 선고당하였다.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을 공업화에 활용할 수 있었고, 전쟁의 승리에 힘입어 제국주의로 본격적으로 전환하여갔다.

산업혁명이란 기계의 발명과 이용을 기초로 하여 자본제 생산양식이 전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이었다. 後發資本主義國은 선진자본주의의 외압을 막고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殖産興業政策을 추진하였는데, 명치유신이래 일본정부도 관영공장의 설립·운영,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과 저리 융자, 주식회사와 은행의 설립 장려 등의 식산흥업정책을 강력히 수행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二千錘紡績이 극히 부진한 때에,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의 지도하에 1만추 규모의 大阪紡績이 1882년 설립되고다음해에 개업하여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에 촉발되어 대도시의 면업 관계상인이 연이어 대판방적을 모델로 하여 대규모 기계제 방적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886~9년경 면방적업·철도업·광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발흥하였다. 이 기업발흥기는 산업혁명의 개시기로 파악된다. 러일전쟁을 획기로 力織機가 급속히 보급되어 역직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장의 생산액이 직물생산액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러일전쟁 직후에는 생산수단의 국산화의 방향이 확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러일전쟁 직후에 산업혁명이 종료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의 공업화에 수반하여 무역구조가 변하였다. 초기의 무역구조는 미국 및 프랑스에 生絲·茶를 수출하여 인도를 포함한 대영제국으로부터 綿絲·綿布를 수입하는 후진국형이었다. 그런데 면방적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제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수입 면제품을 구축하는 동시에, 나아가 청일전쟁 후에는 청국이나조선으로 면제품의 수출이 진전되고 러일전쟁 후에는 면제품의 대영제국으로의 수출도 신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무역구조가 후진국 유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선진국적 측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

면업에서는 방적자본이 확립됨과 동시에 만성적인 생산과잉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紡績連合會는 조업 단축을 시행하는 동시에 수출장려금의 교부에 의한 덤핑수출을 행하였다. 대규모 방적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면사

생산이 급증하여 1890년에는 벌써 수입량을 초과하고 1897년에는 수출량이수입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직포업을 兼營하는 방적회사가 증가하였는데, 여기서 생산된 면포가 다량 수출되었다.3)

일본에서 자본주의의 형성과 확립은 제국주의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일본에 있어서 조선무역은 비중이 작지만 신장률이 최고이고 그 대폭의 흑 자는 적자의 보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면업의 발전과 방적자본의 확립은 해 외시장의 개척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일본 면업의 2대시장은 청국과 조선인 데. 청국으로는 면사 수출이. 조선으로는 면포 수출이 중심을 이루었다. 조선 시장은 청국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지만, 일본제품의 비중이 컸다는 점에 서 일본면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특히 生金巾과 白木綿의 수출은 조선시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였다. 생금건은 직포업을 겸영하는 방적자본의 기계제 대공장에 의하여 생산된 반면. 백목면은 선대제 가내수공업 내지 매 뉴팩쳐의 제품이었다. 생금건 중에도 섬세한 고급의 제품은 영국제와 경쟁할 수 없었고, 토착 면포의 성질이 유사한 두터운 실로 짠 하급의 시팅이 주로 수출되었다. 일본의 선대제 가내면업 내지 면업 매뉴팩처는 바탄機의 도입 등 노동수단의 高次化를 달성함으로써 조선면업에 비하여 2~3배 높은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고 조선에서 백목면의 시장을 순조롭게 개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래면업이 力織機를 가지는 근대 기계공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조 선시장이 기여하였다.4)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일본은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조선보다 한 차원이 높은 공업생산력을 확립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조선과 農工分業 관련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선·후진국간 분업관련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표 5〉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5〉에 의하면, 1885년 대일 수입의 절반이 중계무역의 성격을

³⁾ 일본의 산업혁명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해서는 石井寬治,《日本經濟史》2版 (東京大學出版會, 1991), 3장 4절과 4장 1절을 참조.

⁴⁾ 村上勝彦、〈日本資本主義による朝鮮綿業の再編成〉(《日本帝國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經濟研究所, 1979).

갖고 있었다. 그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면제품 중에 일본산은 31%에 불과하였다. 대일 수입품 중 외국산품을 보면, 영국·미국·독일제품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면포가 최대 품목이었고 그 다음이 염료, 석유, 면사 등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서 식음료·구리·견포·면포를 수입하고 쌀·약재·생사·누에고치·眞棉類를 수출하는 점에서 농업후진국간의 무역관련이었다.

〈丑 5〉 朝・日貿易構造의 변화

(단위:천圓,%)

	중요 수출품	188	85	189	96	1908	
	미 곡	27.2(5.8)	2,852.0	(56.4)	6,036(44.4)	
수	대 두	53.5(11.5)	1,534.1	4,226(31.1)		
	牛 皮	305.0(65.3)	231.8	(4.6)	559(4.1)	
출	면 화	0.00	0.0)	2.2	(0.0)	248(1.8)	
	철 광 석		_		_	415(3.1)	
	중요 수입품	일본상품	외국상품	일본상품	외국상품	일본상품	
	음 • 식료품	음·식료품 74.2(31.8) 21.8(9.6)		336.4(11.0)	50.1(16.6)	4,509(15.3)	
	술	11.6(5.0)	11.6(5.0) 4.1(1.8)		4.5(1.5)	1,922(6.5)	
수	섬 유 류	섬 유 류 53.1(22.8) 116.9(51.4) 견 포 27.4(11.8) 1.2(0.5)		1,633.4(53.3) 43.9(14.5)		10,466(35.4)	
	견 포			79.6(2.0)	0.8(0.3)	188(0.6)	
	면 사	_	9.8(4.3)	403.7(13.2)	1.7(0.6)	2,733(9.2)	
입	면 포	20.7(8.9)	89.9(39.5)	880.2(28.7)	16.5(5.5)	5,523(18.7)	
	금속제품	6.4(2.7)	1.6(0.7)	188.1(6.1)	3.2(1.1)	1,186(4.0)	
	기계류	_	- 1.2(0.6)		0.7(0.2)	484(1.6)	
	합 계	233.3(100)	227.4(100)	3,065.3(100)	302.4(100)	29,569(100)	

^{*1.} 村上勝彦,〈植民地〉(《日本産業革命の研究》下, 東京大出版會, 1975),〈제2표〉와〈제3표〉로부터 작성.

그런데 일본이 산업혁명을 수행하여감에 따라, 한편에서는 중계무역을 서서히 탈피하여 자국 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증대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가하는 공장노동자에게 값싼 외국미를 공급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촉진하기위해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885년 단계에서 대일수입 섬유제품 중 31%에 불과하던 일본산의 비중이 1896년 단계

^{2.} 술은 음·식료품계에, 견포·면사·면포는 섬유류에 포함됨.

에는 97%에 이르렀다. 대일 수입품 전체에서는 일본산이 91%를 차지하였다. 수입품목의 구성이 변화하여 일본산 면포·면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 속제품·술·성냥 등 공산품이 증대하였다.

청일전쟁 이전에 수입 면제품의 중심을 이룬 구미국가의 金巾은 가격이 비싸면서도 내구력이 약하여 직접생산자층에게 널리 수요되지는 않았다. 그 런데 일본제 면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이점을 무기로 하 여 직접생산자층에 점차 수요기반을 확대하여갔고. 그에 수반하여 家內綿業 이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제 면제품 중에 중류층이 주로 소 비하는 시팅은 경인지역에 집중하였고. 그보다 저품질인 백목면은 함경ㆍ평 아도에 집중하였다. 외국면포의 침투에 대하여 직접생산자층이 輸入紡績絲를 이용한 土着綿布를 생산하여 대응함에 따라, 방적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일본면제품의 침투와 수입방적사를 이용한 대응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면화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조달하여 직포하였던 경기ㆍ황해ㆍ충청지방에서 는 수입방적사를 이용한 대응이 청일전쟁 직후부터 개시되어 1900년경을 전 후하여 정점에 달하였다가. 1903년이래 시팅의 수입으로 쇠퇴하였다. 이 지 역에서는 도시시장이 발달한 반면 면화재배가 활발하지 못했던 관계로, 외국 면제품의 침투가 가장 활발하였다. 토착면업의 중심지인 영호남ㆍ관서지방에 서는 외국면포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는데, 영남에서는 1897년부터, 관 서에서는 러일전쟁 후부터 수입방적사를 이용한 대응이 활발해졌다. 수입면 제품 중에서 면포가 방적사보다 많았다. 이것은 수입방적사를 이용한 대응이 대세는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면화 재배와 방적 · 직포가 결합되어 있 던 소농경영이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5)

일본의 공업화가 막 개시되려는 80년대에는 조선의 곡물수출은 양적으로 작았을 뿐만 아니라 기복이 심하였다. 일본이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1890년을 기점으로 미곡수출국에서 미곡수입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곡수출은 도약하였고 그 이래에는 안정되었다. 미곡과 콩이 수출

⁵⁾ 村上勝彦, 앞의 글,

吉野誠、〈李朝末期における綿製品輸入の展開〉(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編,《朝鮮 歴史論集》下、龍溪書舍、1979) 참조.

주종품의 지위를 굳혔던 것이다. 조선미는 일본미와 모양·품질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수입미 중에는 비싼 편이었고 도시시장에서 수요가 많았다. 조선미는 주로 오사카(大阪)·코오베(神戶) 지방에서 하층 노동자나 都市雜業層의주식으로 소비되었다.

1890년대이래 조선이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 재편되어감에 따라, 미곡·콩의 상품화가 한층 진전되었다. 지주·상층농민이 미곡판매층의 중핵을 이루었고 미곡상품화가 이들에게 경제적 상승의 계기인 반면, 영세농에게는 窮追販賣를 통하여 궁핍화·영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미곡수출의진전과 더불어 부농층, 특히 지주층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미곡구매자의 주된 층은 노동력판매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영세빈농이었으므로, 미곡수출의증가와 미가의 등귀는 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상인의 유통과정으로의 침투, 조선상인·농민에 대한 資金前貸의 활성화 등은 수출미의 안정된확보를 보장하였다.6) 러일전쟁 직후부터 일본인의 농지투자와 지주경영이진행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는 조선의 미곡유통과정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에 의한 미곡의 생산·유통의 전기구적 장악은 미곡수출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였다.

1890년대에 조선이 일본의 상품판매시장과 식량공급기지로 재편되어감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무역관련은 선·후진국간의 경공업 대 농업이란 국제분업체계로 전환되어갔다. 그것은 조선의 쌀을 소비하는 오사카·코오베 공업지대의 노동자가 생산한 면제품을 조선농민이 구입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米綿交換體制'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신(阪神)공업지대와 조선 농촌지대의 구조적 관련을 의미하여 그 내부에서는 한신공업지대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기반이었고 조선측의 미곡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 그 속에서 지주층의 성장과 빈농의 窮迫販賣・영세화・소작인화(결과적으로 지주제의 성장)를 의미했다.7)

吉野誠、〈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2.1975).

^{----, 〈}李朝末期にお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1978) 补圣.

⁷⁾ 村上勝彦,〈植民地〉(《日本産業革命の研究》下,東京大學出版會,1975),250쪽.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의 금수출이 청국으로의 수출을 압도하면서 급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공산품 수입이 확대되어 수입무역에서 청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 금수출에서의 일본의 우위를 낳은 기반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金吸收策도일본으로의 금수출을 확대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일본은 金本位制로이행한 다음해인 1898년부터 강력한 금 흡수책을 추진함에 따라, 금수출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으로부터 유출된 막대한 양의 금은 일본이산업혁명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요건이 된 금본위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에크게 기여하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 무역구조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다. 〈표 1〉에 의하면, 1890년이래 미곡과 콩을 위주로 하는 수출품의 단순한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 단, 철광석·비료·면화의 수출이 대두한 것이 주목된다. 그 반면수입에서는 1900년까지 대개 과반을 넘던 면제품의 비중이 그 이후 급격히감소하여 1906년이래 2할대로 떨어졌고, 목재·술·석탄·석유·종이 등의비중이 증대하고 철도투자와 광업투자를 위한 설비도 활발히 수입되었고 기계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수입품의 다양화는 외국자본주의의 경제적 침투의 확대를 반영한다. 일본자본주의는 조선을 철광석의공급지이면서 기계류의 판매시장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을 면제품 판매시장으로 재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화공급지로 편성하였다. 조일간의 수직적 분업관련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수입무역에서는 청국의 지위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획기로 하여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수입총액이 급증하였으므로, 대청수입액은 완만하나마 증가하는 추세였다. 청국상인이 중계무역권을 여전히 장악하였던 서양의 生金巾이 1890년대와 1900년대에 1~2백만 圓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었고, 쇄금건의 수입액은 급증하여 1905년이래 백만 원을 넘어섰다. 청국산 비단의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청국산 麻布가 청일전쟁 이후 인천항의 중요한 수입품으로 부상하였다.

청국 수입품의 중요한 결제수단이던 금의 대청수출은 청일전쟁 직후에 위축되었다가 1897~8년에는 백만 원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적극적인 금 흡수책을 추진함에 따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99년부터 대청 금수출은 급감하였다. 이것이 대청무역의 확대를 제약하는 한 요인이었다. 그 반면 청국으로의 물품 수출의 비중은 1897년 이전까지 5% 내외에 불과하다가 1898년 이래에는 2할 내외로 도약하였다. 대청수출의 증가를낳은 한 품목은 紅蔘이었다. 중국에 가는 사신의 公貿易資金으로 충당되고 개항장을 통한 수출이 금지되었던 홍삼은 청일전쟁으로 대청 朝貢貿易이 폐지됨에 따라 1895년부터 상인에 의하여 수출되었다. 1896년부터 홍삼은 인천항을 통하여 해마다 수십만 원 정도, 많은 해에는 백만 원 이상 수출되기에이르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만주 진출이 진전됨에 수반하여 在滿 일본인이 급증함에 따라, 1907년부터는 조선의 精米가 백만 원 내외 수출되기에이르렀다.

이상으로 보건대 청일전쟁 이후의 대청무역은 구미 면제품의 중계무역이 한 축을 이루었고, 개항 이전부터 육로로 인삼을 수출하여 비단을 수입하는 무역구조가 개항장무역으로 재편된 것이 다른 한 축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조청무역은 조일무역과 달리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의 만주로의 진출이 대청수출을 증가시킨 한 요인이었던 점도주목된다.

일본은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중계무역으로부터 탈피하고 조선에 대하여 미면교환체제라는 수직적 분업관련을 강요하였지만, 구미국가에 대해서는 2차세계대전 전까지도 고급 원자재와 기초 원료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화한 후에도 구미국가의 수입품이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였고, 식민지화 기초공사를 위한 고급설비를 선진 자본주의국에 의존하여야만 했다. 〈표 6〉에 의하면, 러일전쟁 이후에도 가는 실로 짠 고급면포인 金巾類에 대한 영국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았고, 석유는 미국이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있었다. 철도 부설을 위한 각종 자재는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은 철도 枕木을 전량공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표 6〉 1908년 重要輸入品의 製造國別 구성

(단위:천圓,%)

품 목	수 입 액	일 본	청 국	영 국	미국
結構統	2,024	98.9	1.1	0	-
시팅	2,976	71.9	0.2	26.6	1.3
금건	2,939	1.1	0	98.6	0.3
백목면	1,183	100	=	_	-
絹 綿 · 絲	713	0.1	99.9	_	-
석유	1,442	0.1	-	_	95.0
砂 · 精 糖	852	79.0	1.0	0.4	0.2
清 ・ 麥 酒	1,074	99.4	=	0	0.2
紙 卷 煙 草	1,053	58.4	16.7	9.5	4.6
木 材 · 板	1,671	69.9	28.1	_	2.0
石炭	1,371	99.9	0.1	_	_
鐵道部品	2,936	11.8	=	33.9	53.0

^{*1.《}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408~410\.

《표 1》에 의하면, 청일전쟁 이후에도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다. 상품무역수지의 적자는 확대되어간 금수출로 일부분 메워지기는 하였지만, 금수출을 포함해도 무역수지도 적자였다.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에 의거하여 공급의확대가 순조로운 공산물의 수입무역이 자연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 1차산품의 수출무역보다 빨리 증가하기 마련이어서, 무역적자가 불가피하였다. 무역적자의 확대는 자본수입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무역적자가 현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식민지화 기초공사에 수반하여 일본으로부터자본수입이 급증하였음을 반영한다.

〈표 7〉에 의하면, 조선의 교역조건은 대체로 1890년까지 개선되다가 그 이후 악화되어 1900년에 바닥에 달하였으며 그 이래 다시 개선되었다. 조선의 교역조건은 기복을 가졌지만, 악화되는 추세가 아니었다. 수출주종품인 미곡・콩과 수입주종품인 면제품간의 교역조건을 추계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조선 측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추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역조건이 유리하여

^{2.} 철도부품은 鐵條・竿, 電鍍板鐵, 軌條, 軌條附屬品, 筒鐵・管鐵, 鐵釘, 鐵道機關車 와 그 부속품, 鐵道客車貨車와 그 부속품, 鐵道沈木을 함한 것.

졌기 때문에 수출품 생산자와 소비자는 무역을 통한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본다면 교역조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역구조이다.8) 공산물을 수입하고 1차산물의 생산에 특화하는 분업관련 하에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렴한 공산물의 유입은 토착 공업의 성장기반을 억압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대적 공업생산조 직으로의 전환이 더욱 곤란해졌다.

〈표 7〉 상품교역조건의 변동

연	도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지	수	93	76	121	124	123	122	109	116	108	102	101	122
연	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1. 1901년을 지수 100으로 기준하여 작성한 것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2. 崔柳吉,〈韓國の貿易動向 1877-1911年〉(《アジア經濟》15-1, 1974),〈제 2표〉로 부터 작성.

이 시기 무역규모는 조선의 경제에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것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 무라카미 카츠히코(村上勝彦)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1인당 연간 면포소비량을 1疋로 본다면 1899~1901년 단계에서는 면제품의 소비량 중에 외국면포 41%, 紡績土布 27~30%, 在來土布 29~32%이며, 1908~10년 단계에서는 외국면포 62%, 방적토포 26~28%, 재래토포 12~10%였다고 한다.9) 그는 당시 조선의 인구를 1,200~1,300만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1,700만 정도로 추정되므로, 재래토포의 비중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 면제품의 침투에 따른 가내면업의 해체가 급격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908~1911년 농작물의 연평균 총수출액은 1,115만 圓인데, 당시 농작물 총생산액을 3억 원 정도로 잡으면, 농작물의 수출은 생산액의 4%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농작물의 상품화액의 1~2할 정도를 차지하였을

⁸⁾ 吳斗煥, 《韓國近代貨幣史》(韓國研究院, 1991), 18~34\.

⁹⁾ 村上勝彦, 앞의 글(1979), 168~170쪽.

것으로 추측된다. 수출주종품인 쌀과 콩은 한일합방 전후에 각각 60만 석 전후 수출되었는데, 그것은 각각 총생산량의 5% 내외, 17% 내외로 추정된다.¹⁰⁾ 이시기 무역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그 급속한 확대가 상품시장의 확대와 생산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 시장권의 재편성

먼저 市場圈의 개념과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 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면, 시장권은 그러 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로서 시장 권을 이해하기 위하여 經濟地理學. 그 중에서도 中心地理論을 도입하고자 한 다. 시장의 지역적 거점으로서 中心財를 공급하는 中心地는 그로부터 중심재 를 공급받는 補完區域을 가진다. 중심지와 그 보완구역을 포괄하는 영역을 시장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완구역은 중심재의 到達距離의 上限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달거리란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재화를 기꺼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중심지간의 거리를 말하고, 그 상한을 넘으면 중심재를 얻을 수 없 다. 도달거리는 인구의 분포, 시간-비용-거리를 고려한 경제적 거리, 중심 재의 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11) 중심재의 유형에 따라, 국지적 시장권, 원격 지 시장권, 무역시장권 등의 다양한 시장권의 유형이 나온다. 시장권의 확대 는 중심재의 도달거리가 증가하는. 따라서 그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 深化는 주어진 공간범위에서 교환관계에 의 참가자수가 증가하거나 개별 생산자의 상품생산에의 참여가 진전되는 것 으로 가주하다.

시장권 안에서는 상품의 순환이 완결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상인의 이동이 이루어져 상인의 연계망이 형성되고,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흐름과 금융의 지원이 수반된다. 시장권 안에서는 수급사정이나 가격체계에 대한 정

¹⁰⁾ 李憲昶,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研究》(서울大 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90), 304・348等.

¹¹⁾ 李憲昶, 위의 책, 16~17쪽.

보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상품순환의 완결성이 크므로, 가격이 상당한 聯動性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시장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품의 순환, 상인의이동과 연계망, 시장정보와 금융의 흐름, 가격체제를 들 수 있다.

개항이래 시장권의 재편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개항 전 시장권의 구조와 개항 이래의 외적 충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개항 전의 시장권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자. 조선후기의 상업중심지는 場市, 도시시장 및 浦口였다. 일반 장시는 행상과 주변의 농민이 참여하는 국지적 유통의 중 심지라면, 포구는 대량의 물자를 원격지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이 출입하는 원격지유통의 結節點이었다. 국지적 유통의 주된 담당자가 陸商이라면. 客主 는 대규모의 원격지유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후기에 장시밀도가 증가하면서 장시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장시간의 분화가 이루어져 大場이 출 현하였다. 대장은 小場의 이출품을 集荷하고 圈外로부터의 이입품을 배급하 는 기능을 하였다. 대장간의 분화도 진전되어 最大場이 출현하였다. 그런데 당시 도매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만큼 시장의 계층구조는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는 定期市라면, 도시시장은 市廛商業을 핵으로 하는 상설시장이 었다. 도시시장은 주변의 장시와 포구를 통하여 광역의 집산범위를 가졌고, 서울은 거의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상품을 흡수하였다. 産地의 장시에서 국 지적 행상에 의하여 집하된 물자는 객주의 주선을 거쳐 원격지유통을 담당하 는 행상에 넘겨져 대개 포구를 경유하여 소비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객주 를 거쳐 국지적 행상에 넘겨져 소비자로 전달되었다. 물론 품목ㆍ유통거리ㆍ 유통수단 등에 따라 流涌經路의 다양한 편차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상인간의 연계를 통하여 도시시장과 포구와 장시가 연계되었다. 원격지행상이 객주를 통하여 국지적 행상과 만나는 곳이 포구나 大場이었다.12)

개항이래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따른 국제무역의 성장이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시장권의 재편성을 초래하였다. 세계시장에 종속된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을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무역시장이 확대하여 전통적인 국내시장을 재편·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국

¹²⁾ 李憲昶、〈開港期 忠淸南道의 流通構造〉(《近代朝鮮工業化研究》,一潮閣, 1993).

제무역이 개항장을 거점으로 이루어졌고, 개항장의 성립과 발달이 시장권의 재편성을 낳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개항장은 국제무역의 거점으로서 내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국제분업관련 속에 편입시켰고, 그러한 가운데 개항장 시장권이 형성·성장하였다.13) 개항장 시장권은 개항장이 국제분업관련과 국내의 원격지유통을 통하여 자신의 상품유통망에 편입시키는 背後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輸移出品이 각지에서 상품으로서 생산·유통되어 개항장에 이르고 輸移入品이 개항장을 거쳐 각지로 유통·소비되는 영역이다. 개항장 시장권의 범위는 수이출품의 出荷範圍와 수이입품의 到達範圍를 말하며, 그 범위는 경제적 거리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와 심화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국내에서의 구매력 증가와 생산 확대, 외국에서의 공급력의 신장과 국내품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한 무역의 확대이다. 무역규모의 확대는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무역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수반된 유통비용을 결정하는 유통조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무역 확대가 유통조건의 정비를 요구하고, 후자는 다시 전자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가진다.

1880년대에 형성된 개항장과 배후지 간의 기본적인 유통망은 (주로 외국인) 貿易商—開港場客主—遠隔地行商—내지의 상인—소비자 또는 생산자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장권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한 것이 원격지행상, 특히 조선인 船商,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개항장객주였다. 선상과 객주는 영리계산에 밝아 유통조건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였고, 그러한 반응이 시장권의 신속한 재편・확대를 초래한 조선 내적 요인이었다.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재편을 초래한 조선외적 요인으로는 무역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자본의 투하, 외국과의 定期直通航路, 금융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상인자본 투하의 증대, 정기직통항로의 개설, 금융기관의 설립 등은 무역거래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내지의 농민이 수출품을 비싸게 팔고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개항장 시장권을 확대・심화시키고 무역을 증진시켰다. 일본상인이 개항장의 은행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무역자

¹³⁾ 개항장 시장권과 그 변동에 관한 설명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李憲昶, 앞의 책(1990), 제1장 開港場市場圈의 成長을 참조한 것임.

초기에 개항된 釜山・元山・仁川은 개항 초부터 부근의 배후지 뿐만 아니라 원격지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부산은 80년대 초에 서해안과 원산 방면과 거래하였고, 원산은 개항 직후에 서울 부근의 牛皮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이 것은 개항 이전 원격지유통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고, 조선상인의 활동이 이러한 광역의 거래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개항장의 무역설비의 정비는 내륙의 시장권을 계속 확장시켰다. 한 예를 들면, 부산 부근의 3~4백 리 이내의 범위에서 집산되는 우피가 1895년을 기점으로 5~6백 리 내지 7~8백 리 밖에서 이입되기에 이르렀다.14)

무역설비의 확장에 따른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ㆍ심화는 圈內 금융의 확대와 유통구조의 재편을 수반하였다. 초기의 권내 유통경로에서는 위탁매매업을 통하여 내지의 상인이나 농민을 외국무역상에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開 港場客主가 거래기반의 축적, 일정한 자금력 및 특권을 토대로 하여 거래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상인이 일본 금융기관의 지원과 불 평등조약 상의 內地行商이란 특권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항장객주로부터 거래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유통경로를 재편하였다. 자본력이 취약한 개항장 객주를 비롯한 조선상인은 근대적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일본상인의 資金 先貸에 얽매여 상거래를 지배당하게 되고 고리대에 걸려 파산당하기도 하였 다. 게다가 외국상인은 개항장객주의 중계를 받지 않고 내지행상을 통해 산 지의 상인·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다. 1887년부터 일본인행상이, 1888년부터 중국인행상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지와 포구의 객주가 외국상인 의 위탁매매를 담당하면서 성장하였는데, 이들도 외국상인의 자금선대에 종 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내지행상의 확대가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고 무역규 모는 계속 확대하여, 개항장의 객주수가 대체로 19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증가하였다. 개항장객주를 배제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계에

^{14)《}通商彙纂》55, 號外〈1895年 釜山港貿易年報〉, 72\.

의존한 유통경로가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철도운송의 확대와 外國人內地定住商業의 발달이 개항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개항장객주를 매개로 하는 유통경로를 급격히 해체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15)

청일전쟁 이전에 개항장은 부산·원산·인천뿐이었지만, 1897년에 木浦와 鎮南浦가, 1899년에 群山·馬山 및 城津이 개항되었다. 이들 포구는 개항되기 전부터 부산·원산·인천의 시장권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들은 개항 직후에 시장권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였고 무역설비가 정비된 기존 개항장의 중계를 받아 외국무역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목포가 개항된 다음해에 부근의 조선인 船商이 목포의 쌀값이 부산에 비하여 1升에 2文 이상 헐하다면 부산으로 가 서 판매하고 金巾 등의 수입품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돌아왔다고 한다.16) 새 로운 개항장에 무역상인이 진출하고 定期直通航路와 금융기관 등의 무역설 비가 정비되면서 기존 개항장과 수출입품의 가격차가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부근 배후지의 선상들을 끌어들여 독립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증설된 개항장의 독립된 무역항으로의 성장은 단지 기존 개항장의 시장권을 잠식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개항장이 원격지를 시장권에 포섭하더라도 내륙교통의 불편과 그에 따른 높은 운임, 그리고 재래선박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활발한 교환관계를 가지기 어려웠는데, 개항장의 증설은 종전에 表皮的으로밖에 접촉할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한 관련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청일전쟁 직후에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하고 수륙교통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개항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무역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는데, 목포와 군산이 개항된 이래에는 이 지역의 외국무역이 급속히 신장하였다. 그리고 개항장의 증설은 종전에 교통관계 상 포섭할 수 없었던 지역을 새롭게 그 시장권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진남포의 개항은 평안북도의 연안지방을 개항장시장권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러일전쟁 이전에 일본상인은 반식민지 내의 식민지인 개항장을 거점으로

¹⁵⁾ 吉野誠, 앞의 글(1975).

李炳天,《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서울大 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85) 补조.

^{16) 《}通商彙纂》121、〈木浦、群山兩地相場ノ懸隔(1898년 12월 10일)〉, 50~51쪽.

하여 內地行商과 불법적인 內地定住를 통해 내지에 침투하였지만, 러일전쟁이후에는 내지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지배가 확고해지고 내지정주가 法認되고 철도와 新作路란 내륙교통수단이 정비됨에 따라 침략의 거점을 항구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이 내륙 곳곳의 요충지에 설정할 수 있었다. 1903년 조선 거주 일본인 24,627명의 7%가 내지에 거주하는 데에 그쳤는데, 1909년에는 146,147명의 37%가 내지에 거주하였다. 1905년에는 일본선박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으로의 자유항행권을 획득하였는데, 이것도 일본상인의 내지침투를 촉진시켰다. 개항장을 거점으로 한 내지 침투의 시대가 철도 등에 의해 전국적 지배가 실현되는 시대로 전환되었고, 철도수송의 확대에 수반하여 시장권의 급격한 재편성이 일어났다.

인천-서울간의 운임이 인천-오사카간의 운임의 2배 가까이 되었고 結氷期에는 수운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900년 완공된 京仁鐵道는 기선 운송을 대체하면서 경·인간의 교통편의를 한층 증진하였다.17) 1905년과 1906년에 京釜鐵道와 京義鐵道가 각각 완공되어 정비된 도로망과 항만에 연결되면서 수송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경부철도는 영업 개시와 더불어 關金連絡船을 통하여 일본 내의 주요 철도와 연락운수를 하였고, 경부·경의철도가 동일한賃率 하에 일반영업을 개시한 1908년부터는 일본철도의 全線 各 驛과 연락운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운과 강운의 화물을 철도로 흡수하기 위하여 장거리운임의 체감법과 항구에 도착하는 곡물의 特定運賃制를 실시하였다.18)

신속성과 안정성을 가진 철도운송은 이러한 이 점에 힘입어 수운을 점점 잠식하고 압도하여갔다. 漢江水運은 1907~8년경부터 점차 철도운송에 잠식되어갔고, 특히 1908년 철도요금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거리 운송비가 절감됨에 따라, 상인들의 철도 이용이 확산되었다.19) 1911년 철도에 의하여 서울로 유입되는 미곡은 26만여 석인데, 한강수운에 의한 것을 미곡으로 환산하면 22만 석 정도였고, 牛馬背에 의한 이입은 소량에 그쳤다. 육로로 서울에

^{17) 《}通商彙纂》52,〈1895年中京城商况年報〉,62\. 朝鮮總督府、《京城商工業調查》(1913),14\.

¹⁸⁾ 이 시기 철도운송에 관해서는 鄭在貞,〈韓末·日帝初期(1905~1906년) 鐵道運輸 의 植民地的 性格〉(《韓國學報》28·29, 1985)을 주로 참조하였다.

^{19) 《}財務彙報》10, 1909년 3월, 〈五江商民近況〉, 21쪽.

이입되던 명태가 개항 이후에는 기선의 운송으로 바뀌었는데, 경부철도가 개통된 이래에는 선편으로 부산에 수송한 다음 철도로 서울에 이입되었다. 선편으로 인천을 경유하여 유입되던 모시는 대전-군산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로 전환되어갔다.20) 1911년 부산에 집하된 곡물의 49%가, 인천에서는 41%가 철도수송에 의거하였다. 철도운송은 단지 운송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육상 운송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수집력을 강화하였다.

경인철도는 운송구역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서울과 인천간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정도에 그쳤겠지만, 경부철도와 경의철도는 시장권의 재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부·경의철도가 개통된 이래 부산의집산력은 현저히 신장되고 인천의 집산력은 위축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내륙의 도시가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하였던 점이다. 특히 서울시장의 성장이 현저하였다. "鐵道聯帶輸送 및 일반 回送貨物의 수송을 개시하면서부터는 종래 인천·부산 兩港 상인의 손을 거쳐 수입·이입되던 화물이 점차 서울상인의 직접 거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종래 오직 인천에 의하여 행하여지던 서울의 무역은 철도연대수송의 개시이래 점차 경성의 직접거래로 바뀌었다." 京城稅關에 통관수속을 거친 것으로서 부산을 경유하여 철도연대수송으로 수입된 것과 인천항을 경유하여 수입된 것 중에 전자의 비중이 1908년에 70%, 1909년에 76%, 1910년에 82%, 1911년에 83%였다.²¹⁾

인천의 수입무역이 190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1908년부터 격감하였던 것으로 보건대, 인천의 물화집산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1908년의 철도연대수송이었다. 인천은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경기·충청·황해·평안 등의道에서의 物貨集散의 중심점"이었지만, 1897~9년에 걸쳐 진남포·목포·군산이 개항되고 게다가 경부·경의철도가 개통되고 1908년부터 철도연대수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집산구역이 현저히 축소되어갔다. 그래서 인천의 집산구역은 수운으로 접촉하기 편리한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축소되어서, 1911년의연안무역액 중에 황해·전북·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였다.220

^{20) 《}京城商工業調査》, 126~130\, 153\, 159~163\, 171\, 171\, 18.

^{21)《}京城商工業調查》,62~63\.

예컨대 종관철도가 개통되고 遠距離運賃低減法이 실시됨에 따라 일찍이 船便에 의하여 일단 인천을 경유하여 이입하던 和金巾은 철도편에 의하여 직접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용지로 搬送되기에 이른 것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인천의 집산구역의 축소를 달리 본다면 서울이 물화의 소비지인 동시에 근대 교통기관의 발달에 수반하여 화물집산지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²³⁾

경부·경의철도는 중요 상업지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었고, 철도역의 정거장 구역마다 일본인이 이주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경부철도의 영업 개시 직후부터 일본인은 철도역 주변에 활발히 진출하여 상설점포를 설립하고 상권을 장악하여갔다. 이들은 거래처·금융면에서 개항장의 무역상인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일본과의 직거래를 추진하였다. 개항장과 철도 연선의 상설점포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새로이 형성되고, 심지어는 오사카·코오베의 무역상과 조선 내륙의 일본상인 간에 철도연락운수를 통하여 직결되기도 하였다. 개항장이 침략의 거점으로서 의의를 약화함에 따라 開港場客主의 존립기반이 극히 취약해졌다. 또한 일본상인의 내지정주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산지와 포구의 상인이 한층 일본상인에 종속되거나 무력해졌고, 청국인 행상의 세력도 약화되었다.44) 요컨대 철도운송은 조선시장의 일본경제에 대한 편입을 한층 심화시키고, 일본상인의 국내 상권에 대한 지배력을 현저히 신장시켰다.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심화와 철도망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분업 관련망이 확대·심화되었지만, 한일합방 무렵에도 전국을 완전히 포섭한 것은 아니었다. 내륙교통의 전통적인 수준으로 인하여 국제무역과 미약한 관련을 맺은지역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 육로수송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수상운송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그래서 평안도 동북부지방에서는 높은 수송비로 인하여수출물의 반출이 수지가 맞지 않았다 한다. 江陵은 강원도에서는 개항장에접근하기 유리한 굴지의 시장이었지만, 1908년경에도 정기항로가 개설되지

²²⁾ 朝鮮總督府、《仁川港商工業調査》(1913)、49쪽 및 125~130쪽.

²³⁾ 朝鮮總督府, 위의 책, 88~89쪽 및 92・125쪽.

²⁴⁾ 鄭在貞, 앞의 글, 158~166쪽.

않아 미곡의 가격이 원산의 1/3 정도였다 한다.25)

개항장체제와 철도운송은 단지 시장권의 재편을 낳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면이 있었다. 개항장 무역은 저율 관세만 부담하면 거래 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선·은행·근대적 통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 므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 비하여 거래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었고, 그 로 인하여 수입품의 수요와 수출품의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철 도의 개통은 내륙 유통의 혁신을 낳았다. 개항전부터 육로로 유입되던 서양 산 면포가 개항장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청국 산 마포가 새로운 수요자층을 확보하였다. 이들 수입품은 국내 代替상품의 수요를 위축시키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수요는 확대되었음을 다음의 인용 에서 알 수 있다.

전라도는 본품(麻布-인용자주)의 산출지이며 종전에는 그것을 他道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량은 제한되어 일반의 수요에 응할 수 없었으나, 이곳(木浦-인용자주)의 개항 후에는 도리어 이 산지로 외국품을 수입하는 현상이나타났다(《通商彙纂》108、〈木浦ニ於ケル麻布輸入ノ情況(1898년 8월)〉、38쪽).

즉 전통적인 생산·유통조직하에서 일반의 수요에 응할 衣料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하고도 실용적인 청국 마포의 수입은 수요를 창출하기 마련이다. 개항장의 성장과 무역설비의 확장은 상품시장을 확대하는 기구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포의 산지인 전라도에서도 공급이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었다면, 마포의 이입지인 서울에서는 청국 마포의 수입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한층 컸을 것이다.

개항장 시장권의 확대·심화와 철도유통망의 확산은 국제분업관련에 입각한 유통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내분업관련에 입각한 유통에 영향을 주고 전통적 시장구조를 변모시킨다. 원격지유통의 변모가특히 현저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개항된 곳 중 개항 전부터 원격지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한 곳은 馬山뿐이었지만, 이들이 개항장이 되어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객주 등의 조선상인을 끌어들이고 기선 등의 무역설비를

²⁵⁾ 李憲昶, 앞의 책(1990), 62~64쪽.

정비함에 따라 국내 분업관련에 입각한 원격지유통의 중심지로도 부상하였다. 강화도조약 이전에는 마산이 함경도의 명태 등 각종 물산이 이입되어 삼남의 물산과 교역되는 대집산지였는데, 먼저 개항된 부산이 마산의 원격지유통을 흡수하였다. 전라 서부에서 조선인선상의 거점이던 법성포와 沙浦는 목포가 개항되면서 그 지위를 탈취당하였다. 기선은 육로를 통한 원격지유통을 해상수송으로 전환시키면서 개항장의 집산력을 강화하였다. 개항 전에 함경도의 명태 등은 해상수송의 위험으로 인하여 육로로 서울에 반입되었지만,점차 원산항에서 기선에 의뢰하여 해로로 서울로 수송되기에 이르렀다. 철도의 개통 이후에는 해상수송이 철도수송으로 전환되었다.26)

개항장이 해상의 원격지유통 체계를 크게 변모시켰지만, 내륙의 유통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필자는 충청도지방의 장시망이 개항 이래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이고 그 기본구조가 변동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장시망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따른 상품유통의 성장과 변동이라는 충격을 커다란 재편을 겪지 않고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27)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개항장 시장권은 전통적인 유통망에 의존하였고, 그럼으로써 초기부터 광역의 시장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철도유통은 내륙의 원격지유통 체계를 급격히 변모시켰다. 〈표 8〉에서 1908년경 충청북도의 수출입품의 유통로를 보면, 괴산-청안-진천의 위쪽에서는 전통적인 한강수운과 육로에, 청주의 아래쪽에서는 주로 경부철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부철도는 개통된 지 수년 이내에 철도가 통과하는 내륙 지방의 원격지유통을 흡수하였다. 철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충주·괴산·음성지방은 1908년경 忠州場을 거점으로 하는 한강 수운에 의존하였지만, 합방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조치원역을 통하여 철도유통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충청북도 내륙의 원격지유통의 중심이 한강수운으로부터 철도운송으로 급격히 전환하였던 것이다.

철도 정거장 구역에는 일본인 定住商業이 발달하였으므로, 철도수송망에

²⁶⁾ 李憲昶, 앞의 책(1990), 51~54쪽.

²⁷⁾ 李憲昶,〈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場市網과 그 變動〉(《經濟史學》18, 1994), 43쪽.

178 Ⅱ. 민족경제의 동태

포섭된 지역의 확대는 일본상인의 상권 장악의 진전을 보여준다. 예컨대 충청북도의 沃川市場에 이입되는 석유·금건·면사·명태 기타 잡화류는 대부분 부산·인천·대전 방면으로부터 정거장 앞의 일본인이 구입하여 다시 그것을 시장의 상인에 轉賣하였고 곡류도 정거장 앞의 일본인이 조선인의 仲買로 하여금 買集시켜서 철도편에 의해 각지로 출하하였던 것이다.28)

〈표 8〉 충청북도 각 군별 수출입품의 유통경로

郡名	1908년경	그 이후의 변화
永春	堤川場을 경유	
堤川	서울-漢江水運-忠州牧溪・淸風北津-堤川	
丹陽	서울-漢江水運-丹陽	
清風	서울-漢江水運-淸風	
忠州	서울-漢江水運-忠州	13년 鳥致院과 관계를 가짐
延豊	槐山場을 경유	
槐山	서울-忠州盤川-槐山牧渡-槐山	11년 鳥致院과 관계를 가짐
陰城	서울-陸路-陰竹長湖院・忠州鷹盤川-陰城	11년 鳥致院과 관계를 가짐
清安	서울-鳥致院-淸州-淸安	11년 鳥致院에 강하게 편입
	인천-牙山屯浦-鎭川-淸安	
鎭川	인천-屯浦-安城場‧稷山笠場-鎭川	13년 鳥致院과 활발한 관계
清州	주로 鳥致院, 부분적으로 屯浦·芙江을 경유	11년 거의가 鳥致院을 경유
文義	沙金의 경우 芙江을 거쳐 수출,	
懐仁	주로 鳥致院, 부분적으로 大田을 경유	11년 大田과의 관련이 확대
報恩	沃川驛을 경유	
沃川	곡물은 부산으로 直送, 수입품은 江景-芙江 경유	11년 수입품도 철도로 인천ㆍ
		대전으로부터 직송
青山	深川驛을 경유	별 변화가 없음
永同	철도로 부산·인천·서울에 直結	"
黃澗	철도로 부산·인천·서울에 直結	"

- * 1. 1908년경은 忠淸北道觀察道,《韓國忠淸北道一班》, 1909.
 - 2. 1911년은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沿線市場一班》, 1912.
 - 3. 1913년은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驛勢一班》上, 1914.

²⁸⁾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沿線市場一班》(1912), 73쪽.

내륙의 원격지유통의 중심지인 合市의 쇠퇴도 철도유통과 일본인 정주상업의 발달에 기인한 바가 크다. 개항전 전국의 약재를 취급하는 특수한 시장으로서 성립된 大邱와 公州의 令市는 1880년대에는 전국 각지의 특산물은 물론 수입품을 활발히 집산하는 유럽의 大市와 같은 것으로 성장하여 있었다. 갑오경장 후에는 全州・晋州・淸州에도 영시가 발생하였다. 영시의 발달은 지방관의 시장육성책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 1900년대가 되면 영시가 쇠퇴하여 한일합방 당시에는 대구의 藥令市만 남았다.29) 철도운송에 의한 원격지유통의 재편은 영시와 같은 전통적인 원격지 유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켰던 것이다.

철도우수가 장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철도망은 가급적 상업거점인 장 시를 많이 통과하게끔 설계되었다. 1911년말 철도역 111곳 중에 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와 개항장에 위치한 역을 제외하면 모두 96곳이었다는데, 그 중 십리 이내에 장시를 가진 역이 70곳이었다. 그 중에 철도 부설 전에 장시의 존재가 확인된 역은 51곳이었던 것으로 보건대. 철도운수는 장시의 확산에 기여하였다.30) 철도에 의한 내륙교통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래 큰 시장은 더 욱 커지고 작은 시장은 더욱 작아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철도의 개통 전 에는 각 산지의 물자가 "牛背에 의해 각지의 시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비 시장에 모여들었는데, 鳥山・芙江・金泉과 같은 중요한 철도연선시장이 남대 문시장이나 부산과 직접 거래하고 그곳에 직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1) 그 반면 철도유통은 소규모 장시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종래 장시에서 집하되어 원격지로 이출되던 물화는 일본인 정주상인이 철도연선시장의 상권을 장악 하면서부터 장시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거장으로 가서 철도편에 의하여 각지로 이출되었다. 철도운송은 일본자본주의와 내지의 생산자·소비자간의 경제적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지원하였고, 그러한 과정 에서 내지시장의 구조가 재편되었던 것이다.32)

〈李憲昶〉

²⁹⁾ 李憲昶, 앞의 책(1990), 224~230쪽.

³⁰⁾ 李憲昶, 위의 책, 222쪽.

^{31) 《}通商彙纂》 49. 〈京釜鐡道全通ノ經濟界ニ及ホセル影響〉(1905년 7월 19일), 23・24쪽.

³²⁾ 李憲昶, 앞의 책(1990), 206~207쪽.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1) 상회사 설립

(1) 회사정책

가. 갑오 · 광무개혁기의 회사정책

개항 이후 회사 명칭의 기업조직이 출현한 데에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기여한 바가 컸다. 兪吉濬은 1882년《商會規則》을 저술하여 기선회사의 설립방식을 소개하였으며,1)《漢城旬報》도 1883년에〈會社說〉이라는 논설을 실어회사의 설립과 운영, 국가의 회사 보호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2)정부에서도 신사유람단, 영선사의 파견을 계기로 식산홍업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883년부터 機器局・博文局・廣印社・蠶桑公司・蓮花烟務局・三湖玻璃局・交河農桑社 등의 官營・官督商辦型 기업을 속속 설립하였다.3)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민간에서도 大同會社・長通會社 등회사 명칭을 쓰는 기업조직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민영회사들은 전통적 상업질서, 즉 都賈商業體制 위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4) 개화파 지식인들이 소개했던 회사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들 회사가 합자를 통해 자본을 마련하였던 점에서는 서구의 회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정부에 대한 납세를 대가로 하여 영업독점권· 장세청부권 등의 특권을 행사하였던 점에서는 都賈와도 유사한 존재였다.5)

¹⁾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兪吉濬全書》4-政治經濟編(一潮閣, 1971), 89쪽.

^{2) 《}漢城旬報》, 1883년 10월 21일, 〈會社說〉,

全遇容,《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研究》(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22쪽.

⁴⁾ 도고상업체제에 관해서는 姜萬吉, 〈開化期의 商工業問題〉(《朝鮮時代 商工業 史研究》, 한길사, 1984) 참조.

⁵⁾ 개항 직후 회사의 영업특권에 대해서는 韓祐劤,《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一 潮閣, 1970) 참조.

회사의 조직·운영원리도 전래의 상인단체인 都中의 運營例나 민간 자치규 례인 향약에서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기 회사가 지닌 이러한 성격은 전통적 상업질서가 온존된 상황에서 서구의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회사가 명실상부한 근대적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질서 전반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극심한 재정곤란으로 인해 관영 기업조차 운영할 수 없었던 정부가 그와 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오히려 1880년대 말부터는 회사를 수세확대를 위한 징세청부기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이그에 따라 이 무렵부터 상회사 뿐 아니라 수세를 주업무로 하는 객주조직이나 도고도 회사의 명칭을 쓰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회사의 존립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1894년 갑오개혁때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개화파 정권은 화폐·재정개혁과 아울러 貢物制度의혁파와 市價貿用, 六矣廛 폐지, 商理局의 혁파, 각종 특권회사와 收稅都賈의혁파, 雜稅 철폐 등 도고상업체제의 혁파에도 주력하였으며,7) 이와 관련하여 1895년 4월에는 農商工部告示 제1호로〈各 會社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還收하는 件〉을 공포하였다.8) 이는 도고적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종전의회사를 전면 혁파하고, 근대적 경제질서에 합당한 회사만을 새로 육성하려는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또 1895년 11월 10일에는 法律 제17호로〈商務會議所規例〉를 제정하여 객주 상법회사의 도고적 성격을 일소하고, 이를 근대적상업회의소의 위상을 갖는 순수 협의기관으로 개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화파 정권의 급진적인 회사 근대화정책은, 그들의 구상대로라면 가장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되었어야 할 상인층 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외국 상인의 상권침투를 가속화하는 구실을 하였을 뿐이다. 도고상업체제는 민간에서의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한 독점적 폐쇄성으로 인해 외국 자본의 침투를 일정 정도 저지하는 역할도

⁶⁾ 須川英德,《李朝商業政策史研究-十八・十九世紀における公權力と商業-》(東京大 出版會, 1994), 201~202等.

⁷⁾ 吳斗煥, 〈甲午 經濟改革의 構造와 性格〉(《仁荷大論文集》3, 1984), 14쪽.

⁸⁾ 宋炳基 外,《韓末近代法令資料集》1(國會圖書館, 1970).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9)

개화파 정권이 붕괴한 후 高宗은 양반유생층과 특권상인층의 지지를 얻어 강력한 皇權을 구축하였으며,¹⁰⁾ 이를 바탕으로 근대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고종의 전제황권이 구축된 광무년간에는 토지소유권의 확립, 호구 파악, 산업 재편, 지세 징수 등 국가 경영 전반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위한 量田·地契發給事業이 추진되는 한편,¹¹⁾ 식산흥업정책도 본격화하였다.

광무년간의 경제정책 및 식산홍업정책은 외세를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지주 및 특권상인층의 기득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던 바, 회사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에 입각해 있었다. 그리하여 특권상인으로부터 수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물종별, 지역별 영업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특권적 상업질서가 복구됨에 따라 민간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수탈을 기반으로 황실과 특권 관료층이 대자본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광무년간의 식산홍업정책은 외국에 침탈된 이권의 회수와 추가적인 이권 침탈의 방지를 통한 국내 생산기반의 보호, 그리고 근대적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의 확대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정부는 1899년에 프랑스로부터 경의철도 부설권을 반환받은 이래, 철도부설권의 추가적인 양도를 중단하였으며, 1898년 6월에는 전국의 주요 광산을 모두 내장원 소유로 하고 외국인에게 광산채굴권을 일절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12) 동시에 각종 회사의 장정, 규칙에도 "외국인에게 권한을 양도하거나,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허가는 취소하며, 사원은 엄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외국인에게 이권을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였다.13)

⁹⁾ 姜萬吉,〈大韓帝國時期의 商工業問題〉(《亞細亞研究》16-2, 1973) 참조.

¹⁰⁾ 나애자,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광무개혁〉(《한국사》11, 한길사, 1994) 159~ 160쪽.

¹¹⁾ 李永鶴, 〈대한제국 전기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 사. 1995). 35쪽.

¹²⁾ 李潤相, 〈열강의 이권침탈과 경제의 예속화과정〉(《한국사》11, 한길사, 1994), 288쪽.

¹³⁾ 全遇容, 앞의 책, 97쪽.

식산흥업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활발히 추진된 것은 각종 기술학교의 설립이었다. 1899년과 1900년에〈商工學校 관제〉와〈礦務學校 관제〉가 각각 제정되었고, 1899년에는 郵務學堂과 電務學堂이, 1901년에는 잠업시험장이 설립되었다.14) 사립학교에서도 실업교육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1900년에는 漢城織造學校와 私立廣成商業學校・私立鐵道學校가 개설되었고,15) 私立樂英學校내에 工業傳授科와 鐵道科가 설치되었으며,16) 私立與化學校도 量地速成科를 설치하였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를 분설하는 회사도 생겨나서, 織造緞布株式會社(鍾路織組社)가 기술학교를 분설하였으며,17) 大韓國內鐵道運輸會社도 철도기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식산흥업정책과 운동에 힘입어 은행업과 운수업을 기축으로 하는 다수의 근대 기업이 설립되었고, 그 설립자는 거의가 고위 관료나 특권적 대상인들이었다.

그런데 광무년간에는 근대적 기업 뿐 아니라 다수의 都賈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소상인·수공업자를 수탈하는 양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당시 상업·재정정책의 정점에는 내장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18) 내장원은 人蔘·鑛山·庖肆·海稅 등을 전관하는 한편,19) 상업세 징수를 확대하였다. 그에 따라 내장원 납세를 전제로 도고권을 행사하는 특권회사가 난립하는 양상이 빚어졌던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생산력적 토대를 확충할 수 있을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인·소농민층에 대한 수탈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광무년간 식산흥업정책이 처한 근본적인 딜레마였다. 식산흥업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되어야 할 상인·수공업자들이 오히려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이 됨으로써 광

¹⁴⁾ 劉奉鎬, 〈大韓帝國下 實業教育 展開考〉(《大韓帝國研究》 2,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 1984), 64~66쪽.

¹⁵⁾ 金根培,《日帝時期 朝鮮人 科學技術人力의 成長》(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20쪽.

^{16) 《}皇城新聞》, 1900년 12월 18일, 雜報.

^{17) 《}皇城新聞》, 1900년 3월 22일, 廣告.

¹⁸⁾ 金載昊, 《甲午改革 이후 近代的 財政制度의 形成過程에 關한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¹⁹⁾ 楊尙弦,《大韓帝國期 內藏院 財政管理研究-人蔘・鑛山・庖肆・海稅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무 경제개혁의 지지기반은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개혁을 위해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는 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인회사 통제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①방비를 완전히 할 것, ②외정을 감독할 것, ③재정을 감독할 것, ④교통기관을 장악할 것, ⑤통신기관을 장악할 것, ⑥최식을 도모할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對韓方針 및 對韓施設綱領〉을 확정지었다.20) 이 중 경제부문에서 일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교통·통신시설의 장악과 농업·임업·광업·어업 등 원료 채취 부문의 '개발'이었다. 이는 한국을 상품판매시장 및 원료·식량 구입시장, 일본인 이민의 배출지로 만들기 위한 제반 시설을 정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21) 그런데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와 직결시키는 한편,한국 경제의 재편을 위한 재원을 한국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메가다타네타로(目質田種太郎) 주도의 화폐·재정정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의도에서추진된 것이었다. 이들 사업의 결과 한국 경제의 대일 예속화는 결정적으로되었고,22) 국내 자본의 축적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많지 않은 한인 소유 자본마저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사업에 끌어들였다. 화폐정리에 따른 錢荒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한인 巨商들의 자본을 끌어 모아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와 수형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농·공업의 개발을 명목으로 각지 지주와 유력 상인들의 자금을 農工銀行과 東洋拓殖株式會社로 끌어들였다.

통감부는 화폐·재정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일본 농업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도 착수하였는데, 통감부의 한인회사에 대한 정책도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서 마련되었다. 일제는 광무년간 한인회사에 부여

²⁰⁾ 日本外務省編,《日本外交文書》37-1(日本國際連合協會,1958),〈對韓方針及對韓施設綱領〉,351~356等.

²¹⁾ 權泰檍, 〈1904~1910년 일제의 한국침략 구상과 '시정개선'〉(《韓國史論》31, 서울대 국사학과, 1994), 231쪽.

²²⁾ 박영호, 〈한국의 식민지적 자본주의화 과정에 관한 일연구-한말 화폐정리사 업을 중심으로-〉(《韓國資本主義論》, 한울, 1990), 126쪽.

되었던 제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하여 1906년 10월 칙령 62호로〈各種認許의 效力及期限에 關한 件〉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²³⁾ 관료들의 회사 참여를 일체 금지함으로써 관료 자본의 회사 유입을 저지하였고,²⁴⁾ 농림업·수산업·광업등 원료채취부문에 설립된 회사들을 강제 해산시켰다.²⁵⁾ 나아가 1909년 하반기에는 한인회사에 대한 사전적이고도 철저한 단속을 목표로 회사관계법-이는 1910년〈조선회사령〉으로 구체화되었다-제정에 착수하기도 하였다.²⁶⁾

반면 통감부는 한국 거주 일인이나 새로 이주해 온 일인의 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광무년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내국인과의 합작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인의 한국내 회사 설립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은 통감부의 지원하에 속속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일인 회사들은 한국내 각종 이권을 장악해 나갔으며, 일부는 광무년간의 수세도고회사를 능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한인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2) 상회사의 설립

가. 갑오·광무개혁기의 상회사

갑오개혁 이후 1905년까지의 회사 설립 상황을 개괄해 보면 〈표 1〉과 같다.27〉 1894년에 신규 출현 회사가 적은 것은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되지만, 1898년까지 10개 안팎의회사가 설립되는 정도에 머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이 회사 설립을 억제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갑오개혁 직후 회사 설립의 부진은 기본적으로는 개화파 정권의 엄격한 회사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99년

^{23) 《}勅令》下-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近代法令篇(서울대 도서관, 1981), 204쪽.

^{24) 《}農商工部來去文》(奎 17782), 光武 11년 정월 7일, 照覆 제2호.

^{25) 《}訓令謄錄》, 광무 10년, 道訓 제93호(국사편찬위원회, 《各司謄錄》 41-1, 1990).

^{26)《}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15일, 雜報〈會社有法〉,

^{27) 〈}표 1〉에서는 해당 연도에 설립된 회사 뿐 아니라 최초로 기록에 나타나는 회사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회 사에 관한 일관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이로써 전체적인 추이 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후, 즉〈大韓國制〉의 발포로 상징되는 황권의 전제화에 발맞추어 회사 설립이 급증하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부터 내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상업질서가 부활되면서 회사의 설립도 급증하였던 것이다.

업종 연도	금융업	농림업	제조업	광업	상업	운수업	수산업	청부·토건업	기타	계
1894		1			3	1				5
1895			2		2		8			12
1896	2		3		6	3			2	16
1897	1	1	1		2	3			2	10
1898	2					3		1	7	13
1899	4	2	5	2	13	8		2	4	40
1900		3	2	3	15	3	1	3	4	32
1901	1	2	3		4	1	1	4	8	24
1902		3		1	16	2		3	6	31
1903	1	1	1	1	10	3	1		2	20
1904		4	3	2	3	1		1	5	19
계	11	17	20	9	72	28	11	14	40	222

^{*1.} 全遇容,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의 부록을 토대로 작성.

1895년까지 설립되었거나 활동하고 있던 회사들은 대개 製氷業이나 해산물 채취업 관련 회사들로서 갑오개혁 이전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이었다. 근대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1896년경부터였다. 중앙은행을 목표로 한 大朝鮮銀行과 한미합작의 漢城電氣會社가 이 해에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들이었다. 1897~1898년에도 漢城銀行・特立第一大韓銀行・大韓帝國人工養蠶合資會社・大朝鮮苧麻製絲會社 등의 금융업, 제조업회사들이 출현하였다. 특히 이 무렵에는 운수회사의 설립이 활발하여 廣通社・韓國郵遞汽船會社・永興會社・艀船株式會社 등의 해운회사가 다수 설립되었는데,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선박의 미개항장 항행을 엄격히 금지한 데에 힘

^{2.} 기타는 인쇄·출판업, 제약·매약업, 영리목적의 용역업 등이다.

입은 바 컸다. 또 경인·경부철도 부설공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청부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들도 이 때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였다.²⁸⁾

그런데 1899년 이후에는 1896년부터의 근대 기업 설립 추세에 덧붙여 내장원 상납을 전제로 특정 물종에 대한 전매권을 주장하거나 상인들에게 株金 명목의 잡세를 징수하는 데에만 열중한 收稅都賈會社들이 특히 급속히늘어났다. 이 기간 중에도 大韓協同汽船會社·元一輪船會社·濟益船社·漢上紡績股本會社·織造緞布株式會社·香烟合資會社·信錫煙草合名會社・鏡城煤礦會社 등 상당한 자본을 갖추고 근대적 경영기법을 채용한 회사가 계속 설립되었지만,²⁹⁾ 회사수의 급증을 추동한 것은 바로 도고회사들이었다.

광무년간 가장 대규모로 설립된 근대적 기업은 은행들이었다. 조세금납화조치로 인해 국고금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을 뿐 아니라 화폐유통도급속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96년에는 大朝鮮銀行이, 다음해에는 大韓特立第一銀行(大韓銀行)과 漢城銀行이, 1899년에는 大韓天一銀行이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은행은 모두가 황실 및 고위 관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한성은행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중앙은행을 목표로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국고금 관리 시도는 탁지부고문 브라운(J. M. Brown, 柏卓安)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자금을 관리하는 등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면서도 사설 은행으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 다음으로 대규모의 근대적 회사가 출현한 부문은 해운업이었다. 민간해운회사는 官督商辦型 회사였던 利運社가 소멸한 1896년부터 각지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德利會社·泰運會社·廣通社·永昌會社 등 소규모 해운회사가 먼저 출현하였고, 뒤이어 郵遞汽船會社·大韓協同汽船會社·大韓協同鄉 船會社 등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규모 회사도 속속 설립되었다. 특히 대한협동우선회사는 관료자본을 주축으로 하여 정부의 각별한 지원하에 국제 항로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광무년간해운회사의 설립이 활발하였던 데에는 정부가〈管船司官制〉와〈國內船稅規則〉을 제정하는 등 연안 해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

²⁸⁾ 鄭在貞, 《日帝의 韓國鐵道侵略과 韓國人의 對應》(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참조. 29) 이 글에 제시한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全遇容, 앞의 책 참조.

편, 정부 소유선박을 불하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지원을 베푼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30)

광무년간에는 경부철도 공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철도회사도 다수 출현하였다. 특히 경부철도 공사에 한인회사의 참여를 의무화한〈京釜鐵道合同〉계약은 공사청부회사가 속출하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 이 계약을 계기로 大韓國內鐵道會社·大韓京釜鐵道役夫會社 등 대소규모의 토건회사가 속출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일본 토건회사에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도 많았지만,31) 일부는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반면 근대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회사 설립이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와 지식인 일반의 식산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國富의 근원을 제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취약한 상태였다. 공장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금융지원과 관세장벽등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였지만, 백동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지속적 하락, 관세자주권의 침해로 인한 효율적 보호장치의 부재등으로 인해 제조업 회사가 설 수 있는 기반은 대단히 취약했다. 광무년간개명관료층을 중심으로 漢上紡績股本會社・織造緞布株式會社・香烟合資會社등의 제조업 회사가 적지 않게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광무년간에는 官許農桑會社·牧養社·大韓帝國人工養蠶合資會社·開墾會社· 養蠶會社·農業會社·農鑛會社·煤礦合資會社·鏡城煤礦會社·海産會社 등 농 림업·광업·수산업회사도 다수 설립되어 회사조직이 경제 각 부문으로 확 산되어 갔던 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회사가 설립된 부문은 상업부문이었 다. 그런데 이 시기의 상업회사 증가는 상인층의 영업권 독점 시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조선 후기 이래의 상업발전과 개항으로 인한 상품유통의 확대를 기 반으로 성장해 온 상인층은 특권적 상업질서에 편승하여 내장원과 밀착해 갔다.

³⁰⁾ 羅愛子,《韓國近代海運業發展에 關한 研究(1876~1904)》(이화여대 박사학위논 문, 1994) 참조.

³¹⁾ 鄭在貞, 앞의 책, 243쪽.

麻浦米商會社·軍部用達會社·米豆會社·石油用達會社·炭商會社 등은 모두 내장원에 납세하는 대가로 특정 물종을 전담 취급하거나 특정 관부에 대한 물자조달을 독점한 회사들로서, 기본적으로는 도고의 연장이었다. 상업회사 일반이 도고적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 설립을 빙자하여 株金 명목의 잡세를 수탈하거나 영업독점권을 명목으로 영세상인을 수탈하는 회사도 속출하였다. 각지의 加沙里會社와 麴子會社, 仁川의 柴炭會社·漁商會社・米豆會社・菜果會社・翔物會社・南草會社, 沃溝의 魚鹽會社, 長淵의 魚物會社, 元山의 鹽商會, 利原의 五種會社, 全州의 八商會社 등은 모두 특정 물종의 전매권을 자임하면서 소상인·소생산자를 수탈한 도고회사들이었다.

나. 통감부시기의 상회사

일제가 한국 내정 전반을 좌우하기 시작한 1905년부터 1910년 강점에 이르기까지의 회사 설립(신청) 상황을 표시하면 〈표 2〉와 같다.32)

〈표 2〉 1905~1910년간 한인회사의 설립(신청) 경	상황
----------------------------------	----

업종 연도	금융업	농림업	제조업 광업	상업	운수업	수산업	청부업 토건업	기타	계
1905	7	6	8	9	6		6	2	44
1906	10	2	13	21	11	4	6	14	81
1907	7	5	8	19	9	3	6	9	66
1908	4	8	11	25	8		3	13	72
1909	5	9	24	20	5	1	2	15	81
1910	3	7	32	22	6	1	1	9	81
계	36	37	96	116	45	9	24	62	425

^{*} 全遇容,《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32) 〈}표 3〉은 회사의 설립(신청) 상황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표에 수록된 회사 중 실제로는 인가받지 못한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신청에 그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신청) 건수는 광무년간과 비교할 때 3~4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적 금융체계가 붕괴되고 회사에 대한 정부의 시혜가 중단되는 한편, 통감부의 한인회사 억압이 본격화되는 등 회사의 설립, 경영 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설립 시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관제 변경 등에 따라 퇴직한 관리들이 회사 설립에 주목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을사조약 이후 급격히 고양된 구국계몽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계몽운동가들은 회사 설립과 근대적 산업자본 육성에 대한일반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접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셋째는 일제의 화폐·재정정리로 인해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금융기관이 정비된 점을 들 수 있다. 넷째로는 일본인의 한국내 회사 설립 증가이다. 한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일인들 중에는 정보나 商慣習上의 이유로 한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또 통감부의 한인회사 억압을 회피하기 위해 일인을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한 인도 늘어났다.

통감부시기의 회사 설립이 이처럼 守勢的으로 진행됨에 따라 회사의 활동도 광무년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금융업 부문에서는 일본제일은행과 각지 농공은행이 각각 중앙은행 업무와 지방 금융을 전담하게됨에 따라 단순한 상업자금 대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만이 설립될 수있었다. 韓一銀行・韓美協同倉庫會社・龜浦貯蓄株式會社・株式會社韓隆社(京城隆興株式會社)・株式會社大韓商業社・義州保産合資會社 등이 모두 상업자금이나 토지구입 자금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었다.

농림업 부문에서는 특히 柞蠶 관련 회사가 다수 설립되었는데, 이들 회사는 일본 생사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작잠, 또는 家蠶 재배에 주력하고 있었다.33) 安義鶴峴蠶業會社・蠶農社・柞蠶合資會社・全羅南道株式蠶農社・柞蠶株式會社・種桑會社・柞蠶製炭株式會社 등은 모두 蠶繭만을 생산하기 위

³³⁾ 일본의 생사 수출은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生絲의 원료인 蠶繭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였다. 石井寬治、〈産業資本(2)-絹業〉 (大石嘉一郎 편、《日本産業革命の研究》、東京大 出版會, 1975), 171~173쪽.

해 설립된 것들이었다.

통감부시기 한인의 회사 설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부문의 약진이다. 이 시기의 제조업회사 증가는 전래의 수공업 생산을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난 점, 한인 상인이일제 수입품 취급으로부터 배제되는 데 대응하여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대한관심이 높아진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설립되거나 계획된 제조업 회사를 생산부문별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1905~1910년간 한인 제조업회사의 업종별 분포

업종 연도	織布	烟草	醸造	製紙	木工	製革	機械 鐵物	陶器	製粉	其他	계
1905	1	1		2						2	6
1906	2	1	3		1					1	8
1907	1	1	3	1						1	7
1908	1		1	3		2	1	1		2	11
1909	5	5	2	2	1	1	4	1			21
1910	10	4	2	1	1	2		1	1	4	26
계	20	12	11	9	3	5	5	3	1	10	79

^{*} 全遇容,《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제조업 회사는 제혁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수용이나 수입대체적 부문에서 설립되고 있었다. 大韓煙草株式會社・谷香合資會社・半島製烟社・盤松製烟社・廣盛商會 등의 연초회사, 漢城織物株式會社・漢城染織會社・韓興織組會社・京城織紐合名會社 등의 직물업회사, 京城釀造合名會社・酒類釀造會社 등의 양조회사, 造紙用達會社・大韓製紙會社 등의 제지회사, 平壤磁器製造株式會社・汾院磁器株式會社 등의 도자기 제조회사, 大韓獸皮合資會社・合名牛皮會社 등의 제혁회사, 印刷工業會社 등의 인쇄회사, 鐵工製造株式會社 등의 철기제조회사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제조업회사들인데, 이들은 규모의 대소에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수공업적 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까지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이 낮았던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비교적 넓은 시장이 존재하는 영역에는 예외없이 일본자본이 침투해 들어왔던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보호나 보조를 기대할 수 없었던 한인자본가들이 거액의 투자를 요하는 신기술 채용에 나설 수는 없었기때문이다.

통감부시기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강요받은 것은 상업회사들이었다. 일제는 일본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개항장 객주의 독점영업권을 부인하고 수세도고회사를 철폐하는 등 도고상업체제를 해체해 나갔다. 그에 따라 통감부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상업회사가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속출하였다. 통감부시기의 상업회사 설립에서 나타나는특징은 첫째 객주업 전문회사의 등장, 둘째 일본상품의 직수입을 목표로한 무역회사의 출현, 셋째 도시 定住商業의 발달에 따른 시장관리회사의성립, 넷째 지역별・물종별 전매권이 소멸된 데 대응한 조달업・용달업회사의 증가이다.

객주업 전문회사는 객주의 영업독점권(주인권)이 공식적으로 부인된 상황에서, 객주들을 회사 형태로 재결집하는 한편 자본규모를 늘려 日商의 상권침탈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大韓貿易商社·紫巖泰興社·廣濟社·客主協信商會·水陸物産株式會社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객주업회사들이었다.

한편 일본 상인의 직무역 독점이 내지 정주상업의 합법화를 기반으로 한 층 강화됨에 따라 수입품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된 상인들은 이것을 타개할 목적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彰信社·合名會社共益社·淸鹽會社·淸韓貿易合資會社·興業社·株式會社湖上館商會·大韓貿易商社·韓美興業株式會社 등은 모두 서울·의주·개성 등 전통적인 商都의 상인들이 외국의 특정회사와 특판계약을 맺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전담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이었다.

시장·상가 관리회사는 도시 정주상업의 발전과 시전 특권의 폐지를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지만, 광무년

간에는 육의전에 시장세 징수권이 부여되는 등 시전 특권은 상당 부분 부활하였다.34)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통감부 설치를 계기로 다시 소멸되었으며, 그에 따라 시장의 관리 방식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1896년부터 진행된 서울 도시개조 과정에서 선혜청 창고 일대와 梨峴 일대에 상설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그에 대한 추가적 관리의 필요성도 새롭게 대두되었다.35) 그에 따라 廣藏會社・京城隆興株式會社・市場開運會社 등이 각각 특정지역에 상가를 조성하고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특정 물종을 전담하는 장시를 개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용달업 역시 도시 상업의 한 형태로서, 汲水商・柴商 등 일상소비품 취급 상인들은 都中을 구성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물과 땔감 등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전통적인 상업 질서가 해체되면서 도중이 지니고 있던 동직조합적 성격 역시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영세상인을 장악하려는 상업자본의 공세가 본격화되었다. 柴炭株式用達會社・漢城材木柴炭株式會社・薪穀會社・供需商社 등은 일상 소비품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을 규합하여 설립한 대표적 용달회사들이었다.

통감부시기에 가장 집중적인 억압을 받은 부문은 일제가〈對韓施設綱領〉에서 우선적으로 장악할 뜻을 밝힌 바 있던 운수업과 토건업, 수산업 부문이었다. 해운회사들은 1905년 철도운송의 본격적 개시와 1906년 통신원 폐지로인한 해운 자주권의 상실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大韓協同郵船會社 등을제외하고는 거의 소멸해 버렸다.36) 해운회사가 소멸한 대신에 철도운송을 보조하는 小운송업회사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철도를 장악한 통감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본 규모 역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토건업회사도 통감부시기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경부철도 부설 공사에서 한인회사가 완전히 배제된 이후에도 각종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토건회사가

³⁴⁾ 全遇容, 앞의 책, 236쪽.

³⁵⁾ 광무년간 서울의 도시정비과정에 대해서는 李泰鎭, ⟨18~19세기 서울의 근대 적 도시발달 양상⟩(《서울학연구》4,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1995) 참조.

^{36) 《}官報》, 광무 10년 7월 27일, 〈勅令 제35호〉.

활동할 여지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埋築會社·大韓土木建築會社 등이 새로 설립되기도 하였지만,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관급공사의 발주권을 통감부가 장악함으로써 한인 토건회사의 존립기반은 송두리째 부인당하였다. 대신 한인들은 일인 토건회사에 인부를 모집·공급해 주는 청부회사만을 설립할 수 있었을 뿐이다. 통감부시기의 대표적인 청부업회사는 勞動勸業社·大韓役夫會社·京江雇軍房會社·勞動運送合名會社 등이었다.

수산업 역시〈對韓施設綱領〉에서 그 장악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문이었지만, 이미 개항 직후부터 연안어업은 사실상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광무년간에도 한인회사는 고작 어시장 경영과 어물 매매에 주력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통감부시기에는 그나마 일본인들이 탈취해 버림으로써, 1908년 현재 주요 어시장 중 한인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곳은 몽산포(共榮社)와 인천(漁商會社)에 불과하였다.

한편 일제는 표면상 도고회사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았고, 광무년간 도고회사의 설립을 가능케 했던 내장원의 재정기반도 붕괴되었기 때문에 통감부시기에는 원칙적으로 도고회사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수세도고회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고상업체제의 강고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감부의 한인 수탈정책도 이에 적지 않은영향을 미쳤다. 통감부는 일인이나 친일적 한인들의 수세도고회사를 통한 민중수탈은 용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龍淵掘江會社・津船組合會社・陸運穀料會社・保船會社・商業會社・韓國畜産會社 등은 모두 일진회원등의 친일 한인들이 설립한 것으로 광무년간의 수세도고회사와 다를 바 없는 민중수탈을 자행하였다.

수세도고회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권위에 기탁하여 상민을 수탈하는 기구였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보호나 특권 부여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시기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통감부였다.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도고상업체제의 청산을 표방했지만, 이면에서는 도고상업체제에 입각한 일본인과 일부 친일 관리, 상인층의 민중수탈을 용인함으로써 한인의 자본을 일본인의 수중에 넘겨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3) 상회사의 설립주체

갑오개혁 이후 회사 설립을 주도한 것은 개명 관료들이었다. 관료층이 회사 설립을 주도한 데에는, 첫째 갑오개혁을 계기로 하여 관료의 회사참여가 합법화되었던 점,37) 둘째 회사에 대한 고종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고종 스스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셋째 독립협회 등의 식산흥업운동에 일부 개명 관료들이 참여하였던 점, 넷째 관료집단의 수중에 거액의화폐자산이 집적되어 있었던 점 등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회사는 관료들이 설립을 주도하면서도 그 운영은 일찍부터 관료들과 밀접한관계를 맺고 부를 축적해 온 상인들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상인들이 관료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38) 관료와 상인들은 外劃과 같은 신용거래 관계로도 맺어져 있었다. 특권적 경제질서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인층의 입장에서도 고위 관료와 합작하는 것이유리하였을 것이다.

광무년간에 관료와 상인층이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상황의 변화, 회사의 성격 등에 따라 참여하는 층위나 결합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갑오개혁 직후에는 정부의 도고회사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인해 상인층의 독자적 회사 설립은 극도로 위축된반면, 주로 개화파 정권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관료층의 회사 설립이 활발하였다. 安駒壽・金宗漢・尹致昊・李采淵 등이 건양・광무 연초에 가장 적극적으로 회사 설립에 나섰던 고위 관료들이었다. 이들과 더불어 金益昇・吳龜泳・禹慶善・鄭顯哲 등 주로 개항장 일대에서 경력을 쌓은 중하급 관료들도 회사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은 관직을 통한 출세보다는 기업 경영을 통한 치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의 전제 황권이 체제적으로 확립된 1899년경부터는 황제의 측근들인 李容翊・李允用・李采淵・閔泳煥・閔丙奭・李載純・崔錫肇 등이 회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37) 《}官報》, 1894년 7월 2일, 議案 〈休官後에 任便營商케 하는 件〉.

³⁸⁾ 全遇容, 앞의 책, 163쪽.

관료층의 회사 참여가 정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기복을 보이고 있었음에 반해, 상인층은 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참여하였다. 金基永・鄭永斗・李根培・白完爀 등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서울 주변의 거상들과 趙秉澤・趙鎭泰・洪忠鉉 등 일찍부터 세도가문과 연계를 맺어 온 상인들은 정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회사에 자본을 대고 실무를 담당하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였다.

광무년간 고위 관료들이 회사 설립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통감부시기에는 관직과는 무관한 사람들, 즉 상인이나 지방 지주들의 회사 참여가 급속히늘어났다. 재정·금융·화폐권이 일제에 장악되고 내장원 재정기반이 해체되는 등 경제주권이 허구화된 상태에서 관료들의 회사 참여가 위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더욱이 일제는 현직 관료의 회사에 대한 출자나 경영참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관료자본이 일제의 의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고위관료층의 회사 참여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일부 친일과고관들의 회사 참여는 오히려 늘어났다. 통감부시기 회사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고위 관료로는 金宗漢・閔詠綺・兪吉濬・李根澔・李鳳來・李允用・李載克・李埈鎔・李址鎔・李夏榮・張錫周・趙重應・趙義淵 등을 들 수 있는데,이들은 광무년간 일본에 망명했다가 러일전쟁 이후 귀국한 자들이거나, 乙巳條約 체결에 협력함으로써 일제의 우대를 받던 자들, 또는 종친이나 외척으로 을사조약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반면 통감부 설치 이후 한인 관료가 지속적으로 축출되었던 사정을 반영하여 중하위 관료 출신자들의 회사 참여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군대가 해산되는 1907년을 계기로 이들의 회사 설립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관직에서 쫓겨난 관료들이 새로운 생계수단을 기업경영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통감부시기 기업경영에 특히 열성적이었던 중하위 관료 출신 인사들은 白寅基·沈宜碩·安國善・吳台煥·尹致晟·尹致旿・鄭鎭弘・崔錫彰・韓相龍・金光濟・金漢奎・林炳恒・鄭寅琥・趙鍾緒 등이었는데, 이들은 국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관직으로 나아갔을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거나(韓相龍・白寅基), 관직에 있으면서관련 분야의 회사 설립에 참여한 인물(沈宜碩・吳台煥). 또는 관직 생활을 지속

하다가 퇴직당한 후 본격적으로 기업활동에 참여한 인물(尹致晟·尹致旿·鄭鎭 弘·林炳恒·鄭寅琥·趙鍾緒·金光濟)들이었다.39)

통감부시기 상인층의 회사 참여 증가는 기본적으로 錢荒으로 인한 화폐의 부족, 외획과 어음의 폐지에 따른 신용거래의 두절 등과 같은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상인들은 합자를 통해 가용화폐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전황과 금융경색에 대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개항장 등지의 객주들 역시 내장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紳商會社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냉엄한 경쟁의 세계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합자를 통한 규모의 확대는 절실한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1905년 이후 상인층은 경향 각처에서 활발하게 회사 설립에 나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金時鉉・金然鶴・朴承稷・裵東爀・白完爀・成文永・吳榮根・尹晶錫・李鴻謨・趙秉澤・趙彰漢・韓慶履・洪肯燮・洪鍾院・金溶泰・李學宰・金用集・閔濬鎬・朴基英・呂三鉉・李源植・崔思永・金致允・朴奉燁・劉錫・李重來・鄭國永・鄭斗煥・秦學胄・崔翊煥 등으로서, 시전상인과 경장객주가 대다수를 점하기는 하였지만, 개항장객주나 松商(개성상인)・灣商(의주상인)도 적지 않았다.

일제는 또한 농공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의 한국 지배에 필수적인 금융기관, 식민회사를 설립하는 데 한인 자본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력 지주가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일시적 참여로 그치고 말았지만, 상당수는 이를 계기로 회사 경영에 눈을 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각 항구 주변에서 객주 영업을 개시하거나 중소규모의 금융기관·제조업회사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전북의 朴永根, 경북의李柄學・崔浚, 전남의 玄基奉, 경남의 金弘祚 등은 모두 수십 정보의 토지를소유한 대지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공은행 참여를 계기로 지방에서회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³⁹⁾ 全遇容, 앞의 책, 269~271쪽.

2) 상권수호운동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개항 직후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교역은 원칙적으로 '거류지 무역'에 의해수행되어야 했지만,40) 거류지 무역기구는 일찍이 1882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거류지 밖으로의 자유왕래거리인 '間行里程'은 최초 거류지 밖 10리로 규정되었지만, 1882년에는 50리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는 다시 100리로 확대되었다. 그나마 1883년 朝英條約에 의해 外商의 내지 행상권이 용인됨으로써 거류지 무역기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41)

외상의 내륙 행상은 18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청일전쟁을 전후해서는 內陸에 定住하는 외상까지 나오게 되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군의 비호를 받은 일상의 불법적인 내륙 정주상업과 행상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 1897년경부터는 淸商 역시 환류하였으며, 이들은 1899년 한청조약의 체결로 내지정주권을 획득하기까지 하였다.42)

한편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을 계기로 서울에도 외국 상인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에서는 육의전이 국가에 대한 應役을 대가로 禁亂廛權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서울 거주 외상들은 국가에 아무런부담도 지지 않는 존재로서 시전 상인들의 처지에서 볼 때에는 난전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시전 상인들은 1890년 대규모 철시투쟁을 단행하면서 정부에외상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교섭에 나섰으나 청일양국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무산되고 말았다.43)

갑오개혁 이후 외상의 서울내 정주상업은 한층 확대되었지만, 육의전의 특

⁴⁰⁾ 杉山伸也、〈東アジアにおける'外壓'の構造〉(《歷史學研究》560, 1986) 참조.

⁴¹⁾ 李炳天, 《開港期 外國商人의 浸透의 韓國商人의 對應》(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140~160쪽.

⁴²⁾ 李炳天, 위의 책, 123~124쪽.

⁴³⁾ 金正起, 〈1890년 서울 商人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鬪爭〉(《韓國史研究》67, 1989) 참조.

권은 오히려 소멸해 버렸다.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일상과 거래하는 非市廛商 人을 단속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일상의 상권 확대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시전상인들은 일상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까지 박탈당한 셈이 되어 버렸다.

외상의 불법적인 내륙 정주상업과 행상을 통한 직무역 독점은 국내 수입 무역상과 객주, 행상인 등 상인층 일반의 존립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었다. 청상은 고유의 합자조직을 이용하여, 일상은 재한 일본은행의 금융지 원을 이용하여 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韓商은 근대적 금융기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합 자를 통한 자본규모의 외형적 증대, 즉 회사의 설립과 아울러 외상의 불법적 인 내륙 침투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광무년간의 회사 설립 증가와 상인층의 상권수호운동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가, 상무사 복설운동과 〈개정상무회의소규례〉

수출품의 최초 매집상인 동시에 수입품의 최종 매출상이기도 하였던 보부상들은 개항 이후 惠商公局(1885 이후 商理局)으로 조직되어 정부에 일정액의信票代를 납부하는 대가로 시장세를 징수하는 등의 영업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44) 보부상들의 독점권 행사는 한편으로 지방의 물가를 등귀시키고 소생산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外商의 불법적인 내륙 행상을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으로 상리국이 해체됨으로써 보부상은 개별화된 영세상인으로만 남게 되었다.

아관파천으로 일본의 세력이 일정하게 후퇴하자, 보부상들은 이를 계기로 예전의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고종의 황권 강화책을 뒷받침하면서 그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보부상들은 1897년경부터 負商廳 및 任房 복설을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의 계속되는 견제와 비난 속에서 정부

⁴⁴⁾ 全遇容, 앞의 책, 67~69쪽.

가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임방 복설문제는 상당 기간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89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독립협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보부상들은 이를 임방 복설의호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마침 정부에서도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보부상들을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합치되었다.

그리하여 보부상단체인 皇國協會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기 전날인 11월 20일, 정부는 商務社의 복설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었다. 45) 이 조치는 황국협회가 독립협회와 함께 혁파되면서 바로 취소되었지만,46) 이는 독립협회 해산조치에 상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독립협회 탄압을 마무리한 다음해 2월에는 다시〈商務所章程〉을 인허함으로써 임방 복설을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다만 과거의 상리국이 적지않은 폐단을 낳은 바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商務會議所規例〉를 개정하여 상무사에 보부상 단체로서의 성격과 정부의 식산홍업정책을 보조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부여하는 방안이었다.47)

《改正商務會議所規例》에 의하면 상무사는 전국 상업 일반을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의 상민은 누구나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했다. 상무사는 또한 상공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을 발간하며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을 보조해야 했다. 상무사는 단순한 보부상 단체가 아니라 전국의 상공업 일반을 관장하는 강력한 기구가 된 것이었고, 정부는 이를 통해 식산흥업과 상권보호의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무사는 애초 의도한 바의 식산흥업 추진기구로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였다. 상무사가 비록 시장세 등을 징수할 수는 있었지만, 그 정도 재원으로 민간단체가 정부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상무사는 강력한 행상독점권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外商의 불법적인 내륙 행상을

^{45) 《}독립신문》, 1898년 11월 22일,

^{46) 《}독립신문》, 1898년 11월 26일.

^{47) 《}독립신문》, 1899년 3월 20일, 잡보〈부상사건〉. 《皇城新聞》, 1899년 3월 20일, 잡보〈農部告示〉.

저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 객주회사의 상권수호운동

개항 이후 개항장 객주들은 거류지 무역기구를 이용하여 수출입 중계업무를 독점함으로써 성장해 나갔다. 개항장 객주가 수출입 무역을 통해 얻는 이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들이 얻는 이윤의 일부를 재정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개항장 객주에 대한 수세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899년 객주영업세가 창설됨으로써 객주상법회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는 1893년의 〈상법회사절목〉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갑오개혁 당시 도고·여각·회사가 一幷革罷되면서 객주 상법회사역시 혁파될 운명에 처하였다. 개화파 정권은 개항장 일대의 상법회사가 행사하던 영업독점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객주 상법회사에 부과된 납세의 의무도 소멸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48) 객주들로서는 중앙 납세의 의무가 사라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겠지만, 영업독점권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객주 상법회사에 대한 일반적 통제규정이 마련된 것은 1899년〈상무회의소규례〉가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객주 상법회사는 상무사의 分社로 규정되었고, 사장은 내장원경이, 부사장은 각 港 감리가, 총무는 내장원 주사가, 부총무는 該 港 경찰관이 각각 例兼하게 되었다.49) 객주 상법회사가 내장원의 직할로 들어감에 따라 그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도 모두 내장원에 상납되었다. 객주회사는 내장원에 납세하는 대가로 독점 영업권을 추인받을 수있었다. 개항장 객주들은 의무적으로 객주회사에 가입하여야 하였으며,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객주들은 엄단되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탈루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대단히 무거웠으며, 영업권의 양도・상속・매매등의 경우에는 각각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50)

⁴⁸⁾ 大韓商工會議所. 《商工會議所 90年史》(1976). 26零.

^{49)《}紳商會社章程》(國會圖書館 所藏), 제1관 제1조, 광무 3년 10월. 《務安港土商會社章程》(至 18958).

^{50) 《}務安港士商會社章程》(奎 18958), 제3관 제2조.

객주회사는 내장원에 고액의 세금을 내는 대신에 매매 알선에 따른 구문율을 높임으로써 外貨에 대해 일정한 장벽을 쌓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개항장 객주들의 단결력을 높임으로써 外商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기여하였다. 객주회사가 폐쇄적 동직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외상이 개별 객주를 금융적으로 예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개항장 객주들은 객주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외상의 상권 침투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仁川紳商會社는 1896년 일본 상인들이 鷄林奬業團을 결성하여 불법적인 내륙행상을 자행하자 정부에 그 해산을 촉구하였으며, 1901년부터는 客商이 外商과 거래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출입업무를 대행하였다.51) 또 동년 6월에는 일본 상인의 곡물 사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본인 상업회의소와 교섭하는 한편, 일본 상인과는 선금거래만 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하였고,52) 1902년에는 일본 제일은행권의 불법 유통에 항의하여 그 수취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東萊・三和・元山 등지의 객주회사 역시 외상의 불법 행위에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보의 교환과 구문의 통일, 하역 인부 조직의 관리 등을 통해 객주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다.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

외상의 불법적인 정주상업으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서울의 시전상인들이었다. 특히 일상들은 청일전쟁 이후 서울 도심까지 진출해들어와 시전상인들의 상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더욱이 갑오개혁으로인해 시전의 특권이 전면 부인됨으로써 이들의 곤경은 한층 심화되었다. 시전 상인들은 〈상무회의소규례〉에 입각하여 한성상업회의소를 결성하기는 하였지만, 이 때의 상업회의소는 단순한 조사·자문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외상의 상권 침탈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보부상들의 상무사 복설운동과 보조를 같이 하여 시전상인들 역 시 1898년부터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먼저

^{51) 《}皇城新聞》, 광무 5년 5월 29일, 廣告.

^{52)《}通商彙纂》195.〈仁川第一季貿易〉(1901年6月25日附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1898년 4월에 洪鍾宇를 疏頭로 하여 ①都下의 외국 장사를 항구로 내쫓을 것, ②國中의 외국 군사를 물러가게 할 것, ③외국 상인의 내륙 행상을 금지할 것, ④외국 화폐의 유통을 금지할 것, ⑤ 곡물의 수출을 금지할 것, ⑥ 서울에 외국인 거류지를 획정하고 거류세를 징수할 것, ⑦외국인의 홍삼 蒸造를 금할 것 등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는 외상의 상권 침투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국권의 침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이에 대해 헛되이 외국을 배척하기보다는 먼저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하였지만,53)시전상인들은 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동년 9월 황국중앙총상회를 결성하였다. 회장에는 독립협회의 단핵을 받고 면관된 趙秉式을 추대하였는데, 이는 독립협회에 대항하여 황권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립협회의 정부 견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취한 이러한 태도는 황국중앙총상회 인가에 장애로 작용하여, 설립되자마자 일단 철파지시를 받았다.54) 그러나 황국중앙총상회는 곧이어 농상공부대신으로 부터인가를 얻었고, 정부에서는 인가 절차를 문제삼아 농상공부 대신과 황국중앙총상회장 조병식을 유배하면서도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에서독립협회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한 편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5)

정부의 인허를 얻은 황국중앙총상회는 그 장정에서 상권회복과 상민보호를 위해 설립했음을 분명히 하고, ① 중앙 各廛이 위치한 서울의 일정 구역에서 는 외국인이 장사할 수 없도록 할 것, ② 상업세는 농상공부 인지세만 부과하 되, 그를 황국중앙총상회에서 구관할 것, ③ 황국중앙총상회에 가입하지 않고 서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등 5개월여 전의 상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활동방침을 밝혔다.56) 이는 특권적 상업체제의 부활을 통한 상권 회복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보부상들의 상무사 복설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53) 《}독립신문》, 광무 2년 4월 14일, 논설,

^{54) 《}독립신문》, 광무 2년 9월 16일, 잡보〈상회철파〉.

^{55) 《}독립신문》, 광무 2년 9월 28일, 잡보〈황국중앙총상회사인가〉.

^{56) 《}독립신문》, 광무 2년 9월 30일, 잡보〈황국중앙총상회〉.

그런데 독립협회는 황국중앙총상회 설립 때에도 홍종우 상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를 비판하였다. 독립협회로 대표되는 개화파 지식인들은 외상의 상권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상 배척은 헛되이 분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의 갈등은 뒤이어 발생한 金鴻陸 毒茶事件을 둘러싼 양 단체의 연대 활동을 계기로 해소되었던 것 같다. 독립협회가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의 관계자 처벌 요구에 동참하였고, 이어 양단체는 외국 상인의 도성내 정주상업과 허가받지 않은 내륙행상을 금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상소를 올렸다.57)

정부에서도 1898년 10월 19일자로 각도 관찰사에게 개항장 조계 10리 밖에서 상설 점포를 개설하거나 토지·가옥을 임차하고 있는 외국인을 통상구조계로 철환시키도록 훈령하였고, 이듬해인 1899년 1월 10일 다시 이를 재촉하였다. 58) 물론 중앙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지방관에 의해 그대로 이행될 수는 없었다. 영사재관권이 허용된 상황에서 외국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책임문제를 두려워 한 지방관들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황국중앙총상회는 관민공동회에 참여하는 등 독립협회와의 연대 활동을 지속하였지만, 독립협회가 해산당하면서 황국중앙총상회 역시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황국중앙총상회의주장은 1899년〈상무회의소규례〉가 개정될 때 상당 부분 수용되었고, 육의전의 특권도 부분적으로 부활되었다. 시전상인들은 이후 이를 배경으로 외상의상권 침탈에 저항하는 한편, 정부 관리 및 황실 주도로 설립된 회사에 참여하는 등 광무년간 식산홍업운동의 주역으로도 나섰다.

^{57) 《}독립신문》, 광무 2년 10월 18일 ; 19일, 잡보〈양회편지〉; 20일, 잡보〈황국중 앙총상회편지〉.

慎鏞廈,〈19世紀末의 韓國對外貿易의 展開外 商權問題-獨立協會와 皇國中央總商會의 商權守護運動〉(《亞細亞研究》17-2, 1974).

⁵⁸⁾ 金敬泰、〈甲申·甲午期의 商權回復問題〉(《韓國史研究》50·51, 1985), 355\.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러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한 일제는 특권적 상업체제를 해체하여 일본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4년 2월 상무사가 철폐되었으며, 개항장의 객주회사에 대한 收稅도 폐지되었다. 이들 조치로 인해 특권적 상업질서는 사실상 해체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외상의 상권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와해되었다. 더욱이 정치권력이 사실상 일본인에게 장악된 상황에서는 상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방안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통감부시기에는 한인 자본가들 스스로 일본인 자본가와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었다. 또 이 무렵에는 지식인들도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교육과 산업의 장려를 통한 실력양성을 주창하였다. 그리하여 大韓協會・西北學會 등 이 시기에 설립된 계몽운동 단체에는 대개 實業部가 조직되었고, 그와는 별도로 식산흥업운동만을 목적으로 한연구단체, 실행단체도 속속 설립되었다.

〈표 4〉 1908~1910년간 실업단체 일람

연도	실 업 단 체
1000	江原實業會,經濟研究會,工業研究會,共濟會,農工研究會,農商工實業會,
1900	江原實業會, 經濟研究會, 工業研究會, 共濟會, 農工研究會, 農商工實業會, 東洋實業獎勵會, 商工勸務社, 商興會, 實業獎勵會, 湖南鐵道株式募集研究會
1000	國民經濟會,婦人經濟會,國民與業會,大邱藥商立規與業會,大韓工業會,大韓農商協會, 大韓商務部,大韓實業會,蠶業同志會,貯金共濟會,濟州民海業保管會,與業會
1303	大韓商務部,大韓實業會,蠶業同志會,貯金共濟會,濟州民海業保管會,興業會
1910	金融合資會,農林研究會,大韓婦人蠶業會,明農會,蠶業同志研究會,靑年實業俱樂部

^{*} 全遇容,《19世紀末~20世紀初 韓人會社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905년에는 평양의 지식인들이 協同社를 조직하였고, 역시 평양에서 상무사 支社의 후신격인 商民共同會가 설립되었다. 또 1906년에는 서울의 고위관료와 유력 자본가들이 大韓殖産獎勵會를 설립하였으며, 1907년에는 牧畜營業會・實業研究會・帝國實業會・大韓工業會 등이 각각 해산 군인・관료・자본가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중 대한공업회는 해산 군인들이 주축이 된 것

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업회사로 확장할 계획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실업 단체의 설립은 1908년 이후 한층 활발해져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매년 10여 개 안팎의 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단체 중에는 제국실업회나 明農會, 大韓商務部와 같이 일제의 침략 책동을 방조하는 활동을 벌인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 회복의 기틀을 다진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식산흥업론이 확산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업단체가 설립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자본의 침투에 대항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서북 일대의 新民會 회원들이 중심이 된平壤瓷器製造株式會社는 鄭仁叔·李昇薰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李昇薰이 제창한 關西資門論이 큰 영향을 미쳤다. 관서자문론은 우선 서북지방의 자산가들이 자본을 모아 대자본을 이루고, 그를 기반으로 각종 근대적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여 일본 자본에 대항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는 논리였다.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가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설립 당초에는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켜 식산흥업운동을 전개하던 계몽운동가들이 다수 주주로 참여하였고, 서울·인천 등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인들도 열렬히 호응하였다. 이밖에도 韓一銀行・湖南鐵道株式會社・湖上館商會・彰興社・廣信交易會社・彰信社 등이 자본규모의증대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투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주요 회사들이었다.

1907년부터 전개된 국채보상운동 역시 경제주권 수호운동의 일환이었다. 처음 이 운동을 발기한 이들은 대구의 지식인들이었지만, 운동의 확산을 주 도한 것은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었다. 특히 인천·원산·평양·부산·진남 포·개성 등의 상업도시에서는 국채보상의연금 모집을 紳商會社 등의 그곳 상인단체가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통감부시기의 식산홍업운동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었다. 식산홍업운동을 주도한 지식인·자본가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실력양성을 추구하였고, 그런 만큼 일본 제국주의를 침략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식산홍업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다. 한국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원인이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경제 재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인들 간의 합자나 신기술의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정·금융의 주권을 박탈당하고, 신기술 습득에 대한 일본인들의 고의적인 방해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식산홍업은 불가능한 것이었다.59) 그런 만큼 일제에 의한 경제 재편이 진전될수록, 이들의 식산홍업론도 일제의 침략논리에 흡수될 가능성이 컸다. 전국의 지식인·자본가들의 열렬한 지원 아래 설립되었던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가 식민지화 이후 총독부의 감독하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全遇容〉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1) 광공업의 전개

조선후기 이래 생산력 발전에 기반한 사회적 분업의 발달에 따라 광공업역시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1876년의 개항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강제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생산방식에도 질적 변화가 있었다. 개항이후 생산의 조건은 종래와 같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만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적 요인, 곧 대외무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물론 이 시기 대량의 곡물 수출로 전반적으로 국내의 수요력이 증진되고 있었고, 국내 상품의 지역간 교역량이나 생산량도 증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수입상품과 대립하는 경우 자본력이나 기술력에서 경쟁이 불가능했던 까닭에 이 시기 각종 산업은 부문에 따라 성장, 몰락, 그리고 예속의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개항 이후 들어 일본은 正貨의 축적을 목적으로 조선에 설치된 일본제일

⁵⁹⁾ 全遇容, 앞의 책, 229~230쪽.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산 금을 매입하고자 했다. 청국의 경우에도 수입품의 대가를 금으로 바꾸어 자국으로 수송하고 있어 양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금의 수요가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더구나 조선 정부도 왕실재정의 확보를 위해 광산의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므로 광산개발 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880년대에 들어 봉건정부의 광업정책은 종래 국가가 지정한 광산만 인정하고 수세하던 소극적·통제적 광업정책인 設店收稅制에서 각 아문과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채광을 가능하게 한 私自開採制로 이행되어 갔다.1) 1887년 총세무사 墨賢理의 보고에 의하면 "본국의 산금지는 종래 '사자개채'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국가의 이 같은 금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계속 사채하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이 금령을 바꾸어 민간의 의사를 들어 채취함을 승인하고 산금량에 따라 백분의 몇을 세로서 징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금의 생산은 앞으로 수출액이 증가할수록 더욱 많아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다.2) 실제로 이 시기 광산의 개발은 대규모화하여 1886년 영흥금광의 경우 광부가 5~6천 내지 1만 명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한다.3) 그런데 이제도를 통해 광업생산의 자유화가 어느 정도 인정됨으로써 광산개발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광산의 소유권까지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또 국가의봉건적 수취체제가 여전히 존속하는 한 그대로 광업의 근대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887년에도 鑛務局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광산현황과 광무행정을 관장토록 하는 한편, 근대적 기술도입을 위한 외국의 광산기사들을 초빙하기도했다. 그러나 이 광무국의 설치는 오히려 열강의 광산이권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뿐 국내자원의 보호와 근대적 광업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고용된 서양의 광산기술자들은 한국광산의 근대화보다 그들의 이권획득을 위한 예비탐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었다.

¹⁾ 柳承宙,〈李朝 開港前後의 鑛業政策 研究〉(《亞細亞研究》55, 1976). 《日省錄》, 고종 18년 2월 27일, 命外道金銀採壙參酌勾檢 참조.

^{2)《}朝鮮通商口岸貿易情形論》(1887), 仁川海關稅務司史納機貿易情形論(出洋生金). 韓沾劢、《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一潮閣, 1970), 294쪽에서 재인용.

^{3)《}明治官報》1018, 1886년 11월 19일, 外報〈元山港商況〉.

1895년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획득한 미국의 경우에도 1888~89년에 걸쳐 광산용기계와 5명의 광산기술자를 파견하고 있었다.4) 이처럼 근대적 광업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실정에서 대량의 금의 국외유출은 조선의 전반적 자본축적을 저애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화폐제도의 개혁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정화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1890년대에 들어서의 몇 차례 화폐제도 개혁시도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광업의 생산조직은 物主-德大-임금노동자로 이어지는 형태로 경영을 담당하는 덕대가 10~20명 규모의 전업적 광산노동자나 농민인 계절노동자를 거느리고 자금을 대는 물주에게 소속된 경우가 많았다. 물주의 자본은 주로 상업이나 고리대자본, 또는 관료자본 등 전기적 자본의 성격이 강했고 덕대는 이에 일정하게 예속되고 있었으나 덕대제 경영은 하나의 경영단위로 노동조직의 기본형태였다.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지만 경제외적 강제가 없는 임노동의 성격을 띠었고 일부 덕대경영에서는 매뉴팩쳐적 형태도 존재했다. 운산금광 등 石金鑛이 열강들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사금업은 달랐다. 청일상에 의한 沙金鑛 투자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식민지가 되기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몇 안되는 수익성 있는 산업분야였다. 그러나 1905년이후 일본자본의 생산지배가 확대되면서 조선인 자본에 의한 사금업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항 광업은 조선후기 이래 어느 산업분야보다 자본주의적 성격의 경영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이 시기 급격한 금수출의 증가와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6)

한편, 조선후기 이래 매뉴팩쳐적 경영형태까지 보이던 제조업분야는 면포

⁴⁾ 李培鎔、〈開港後 韓國의 鑛山政策과 鑛山探香〉(《梨大史苑》10.1972).

⁵⁾ 朴贊一, 《韓末 金輸出과 金鑛業 德大經營에 관한 硏究》(성균관대 무역학과 박 사학위논문, 1982).

⁶⁾ 금 생산만이 아니라 은·동의 경우에도 생산이 증가하고 근대적인 경영형태를 띤 것이 많았다. 북한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금광수는 169개소였고이 가운데 운영되고 있던 것은 97개소였으며, 큰 은광의 수는 21개소였다. 은광에서도 일부는 자본주의적 경영을 하고 있었다. 유기공업의 발전과 화폐주조가 많아짐에 따라 구리의 생산도 늘어나 동광수는 24개소로 늘어났고, 철광은 39개소에 달했다고 한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조선전사》13, 1980, 192~194쪽).

와 같이 외국의 자본제 공산품의 유입과 함께 일부 생산이 위축되어 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항장의 확대와 기선을 통한 교통의 발전, 그리고 금이나 곡물수출의 증가에 유발된 국내의 구매력 증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생산이 증대함으로써 근대적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는 경우도 많았다. 수입 자본제 제품과 대립이 격심하지 않던 상품의 경우 국내수요의 확대와 함께 생산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 추세였다.

이미 개항이전부터 안성과 정주 등지에서 매뉴팩쳐적 경영형태를 보이던 놋쇠업은 이들 지역에서 개성·구례·전주·재령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유기제조공장을 세우는 자가 늘어나 유기제조업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들어 근대적 공장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1887년 李承薰이 세운 납청유기제조공장과 안성유기제조공장이 그것이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분화하여 전문기술자가 각 공정을 전담하도록하고 생산과정에서 근대적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의 유기를 제조하고 있었다.7) 납청지역에서는 19세기말 공장제 수공업장이 30여 개에 달하여 다양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고, 이들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호수가 600여호에 달하는 커다란 店村이 형성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유기제조업의확산은 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여러 형태의 수공업적 동력장치가 도입되고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생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반하였다. 또한이 시기에는 1897년 한성에 세워진 합자회사 조선유기상회의 예에서 볼 수있듯이, 회사형식의 자본결합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산 유기제품의 수입이 1889년부터 시작되면서 모두 740여 톤이 1896년까지 들어 온 데다가 190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값싼 일제 도자기의 대량 수입으로 전통적 유기제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일제 도자기는 싼 가격을 무기로 일반 서민가정에 손쉽게 파고들어 차츰 유기수요를 침식해갔다. 그 결과 이승훈의 납청유기제조공장도 1905년을 전후하여 점차 쇠퇴의 길로접어드는 등 유기제조업은 일부 타격을 입긴 했지만, 전통적 유기의 기술력이

⁷⁾ 권병탁, 〈조선후기 17~19세기의 장인〉(朱宗桓博士華甲紀念論文集《韓國資本主義論》, 한울, 1989).

나 수요자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 식민지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철기류의 제작은 전통적으로 농기구와 솥을 위주로 했다. 이 시기 쇠남비ㆍ 쇠대야ㆍ쇠물통 등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그 수량도 증대하고 있었으나 솥은 품질이 외국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아서 거의 수입되지 못했다.8) 솥의 생산에서도 개천 무진대의 경우 분업적 협업에 기초한 생산이 이루어졌고,9) 경상북도 청도의 한 솥공장에는 매일 평균 40인의 노동자가 생산에 참가하며 각자의 생산조직에서 임금을 받고 있었다.10) 청도군 운문면 일대의 솥계 수공업은 내구연한이 4대 100년에 이를 정도로 양질의 솥을 생산해 경상도일대에서 소비되는 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1904년 현재 이 지역에서는 연인원 248,000명이 동원되어 약 188,000관의 원철을 사용하여 약 18,000개 이상의 솥을 생산했다. 솥을 생산하는 각각의 공정은 분업적 협업에 따른 공장제 수공업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11)

민간 요업에서나 관영의 分院에서 조선후기 이래 매뉴팩쳐적 경영이 나타나던 도자기생산은 19세기 후반에 관영이 민영으로 재편되고 민간공장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1895년 현재 비교적 큰 규모의 도자기공장은 35개였다고 한다.12) 물론 일본도기 특히 茶器의 수입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요업도 일본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외국산 도자기는 주로 개항장과 주요 도시지역에 한정되었고 일본인의 수요도 많았다. 따라서 풍부한 원료, 값싼 노동력으로 싼 가격에 생산되어 민간에서 주로 쓰던 도자기, 옹기류 등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도 1900년대에 들어서면 저가의 일본산 도자기가 본격적으로 밀려들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식개량기계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공장도 나타나고 있었다. 1902년 李某에 의해 세워진 자기제조소에서는 외국인

^{8) 《}明治官報》3307, 1894년 7월 9일, 公使館及領事館報告〈釜山港鐵器及桶類商況〉、 《通商彙纂》20, 1895년 7월 1일,〈仁川港收入本邦重要商品ニ關スル報告〉(1895年6月25日付在仁川領事館報告).

⁹⁾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앞의 책, 188쪽,

¹⁰⁾ 松田行藏、《朝鮮國慶尚・忠清・江原道旅行記事》(1888)、14~15等、

¹¹⁾ 권병탁, 앞의 글 참조.

¹²⁾ 권병탁, 위의 글.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앞의 책, 191쪽.

기술자를 고용하여 새 기술로 자기를 생산하였고, 1908년에는 이승훈이 평양의 유지들과 합자하여 평양 마산동에 근대적 회사조직을 갖춘 평양도자기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료의 분쇄과정에 석유발동기를 사용하는 등 기계를 생산과정에 널리 도입하였다. 한편 1900년대 초 함경도의 성진공업조합에서는 새 기술에 기초한 신식가마를 축조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등 가마의 개량도나타나고 있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간행된 《조선산업지》에 의하면 1909년 현재 10여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액이 1,000원 이상인 비교적 큰 규모의 도자기 공장은 53개소, 가마수는 184개였는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 기술자의 수는 695명, 생산액은 63,001원에 달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동 일대에 자리잡은 '눈배기백자기점' 단지는 전통적인 도자기 생산지역이었는데, 1902년 세워진 민석로의 사기점은 투철한 기업가정신, 작업공정에서의 분업적 협업, 도토를 빻은 데 물레방아의 힘을 이용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해 기술의 개발로 대응한 탓이었다.13)

제지업은 개항이후 계속적으로 생산이 증대한 제조업 중 하나였다. 韓紙는 국내적 상품유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상품으로 개항장간, 미개항장간의 교역에서 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품질의 우수성이 국외에서도 인정되어 많은 양이 청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일본종이가 일부 수입되기는 했지만 갑오전후까지는 대부분 폐지류나 일본인의 수요품으로 수출량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었다. 14) 그러나 갑오이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輸入紙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산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향상하려는 움직임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9세기말 양화진에는 일제 제지기계가 갖추어진 제지공장이 건설되었고, 1901년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외국산기계를 들여와 용산 典園局내에 제지소를 설치하여 한지와 함께 洋紙도 생산했다. 또한 1908년 초에는 서울의 자본가 몇 명이 대한제지회사를 설립하

¹³⁾ 권병탁, 앞의 글 참조.

^{14) 《}國譯韓國誌》(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497\.

[《]通商彙纂》60, 1897년 3월 1일,〈仁川港ニ於ケル陶器外八品ノ情況〉(1896年12月12日付在仁川領事館報告).

고 자본금을 30만 원으로 공덕리에 공장을 세우고 일본인 4~5인을 고빙하여 각종 종이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의 종이생산은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량의 증가를 따라가기 힘든 데다가 1900년대 이후 외국산 종이 수입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한지를 제외한 제지업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1901년 8만 원 미만이던 양지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하여 1904년 30만 원에 육박하고 1910년에는 70만 원에 달하였다. 1910년의 수입액을 양으로 환산하면 288만 근으로 1909년 조선의 연간 한지 총생산고인약 80만 근의 서너배에 달했다. 하지만 한지는 양지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근대적 공업제품으로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생산이 계속되고 있었다.15)

이와 같이 광업은 주로 국외수출을 위한 금 생산이 주종을 이루며 이의대량유출은 조선의 정화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업은 어느 산업분야보다 매뉴팩쳐적 경영이 발달하고 있었다. 기타 제조업도 자본제 상품의유입에 따라 일부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이나 곡물수출로 인한 수요 증대에 힘입은 원격지 유통의 활성화로 생산량이 증대하였다. 제조업은 대개 農工이 미분리된 상태였지만 일부는 생산공정의 근대화를 통하여 매뉴팩쳐적 경영형태를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입 자본제 제품과 대립할 경우 취약한 자본과 생산과정의 전근대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몰락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 일제의 정책에 의해 예속화되어간 금광업과 같이 일본자본에 의한 예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16)

2) 면방직업의 전개

개항초기에 일본상인은 섬유제품 등을 수입하여 수입원가에 비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며 조선시장에 판매했고, 1884년 이전까지는 관세마저 면제받고

¹⁵⁾ 朝鮮總督府,《京城仁川商工業調查》(1913).

¹⁶⁾ 河元鎬、〈開港後 帝國主義의 經濟侵奪과 經濟救助의 變動〉(《朴永錫教授 華甲 紀念 韓國史學論叢》下, 탐구당, 1992).

있었다. 하지만 임오군란이후 청국상인이 조선에 진출해 오면서 사정은 다소 바뀌어 갔다. 일본상인은 청일전쟁이전 단계까지 주로 영국산 섬유제품을 상 해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매입하고 조선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상해에서 조선에 바로 수입하는 청국상인과의 경쟁에서 가격면에 서도 열세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일본상인들은 주로 수입품을 현금이 아닌 荷換으로 수입하고 있어 은행에 대한 이자 지불부담이 컸다. 그 때문에 수입 품에 이자부담을 전가하여 가격을 높이는 데다가 이의 부담을 줄이려면 빠 른 시일 안에 팔아 버려야 헸으므로 큰 이유을 남길 수 없었다.17) 더구나 개 항초기와는 달리 후기로 갈수록 수입되는 섬유제품, 특히 카네킨(金由:옥양 목)의 경우 하등품이 많아 이익이 박약했다.18) 이 같은 사정에서 일본상인이 섬유제품류를 수입했던 것은 단순히 수입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획득보다 그것을 판매한 댓가로 곡물을 매집하여 수출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것이 다.19) 즉. 섬유제품류의 구입원가와 곡물의 일본시장에서 판매가격의 차이에 서 이익을 내는 것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 면제품이 들어와 영국제 카네 킨을 구축하면서부터는 수입품에서 얻는 이유도 커졌지만 섬유제품의 댓가 가 다시 곡물의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전했다.

이 시기 국내시장에서 곡물 다음으로 많은 교역량을 차지하던 상품은 면제품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내재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전망을 보여주던 土布, 곧 조선산 면포는 그 상품의 성격상 수입되는 외국산 면제품, 특히 카네킨과 대립하며 생산조건이 바뀌어 갔다. 〈표 1〉의 카네킨과 토포의 가격을 대비하여 산출한 상대가격을 보면 1890년 전후까지 카네킨의 상대가격이 낮아지고 그 이후는 카네킨의 가격조건이 높아져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우선 1890년 이전의 경우 개항초기의 수입 카네킨이 고가품 중심에서 점차 저렴한 것으로 수입의 형태가 바뀐 데 있었고 다시 1890년대에

^{17) 《}通商彙纂》 4, 1894년 5월 10일, 〈明治26年中京城商況年報〉(1894年4月16日付在京城領事館報告).

^{18)《}日韓通商協會報告》2.1895년 12월.〈金巾貿易〉참조.

^{19) 《}明治官報》 1994, 1890년 2월 25일, 通商報告〈仁川港商況〉(1889년 12월중). "원래 金巾은 이익이 많지 않은 품목으로서 輸入者는 오직 이로써 物品互換 의 용도로 쓰는 데 그친다."

들어 대량의 곡물수출로 인한 수입섬유제품에 대한 구매력 창출이 기호의 고급화를 가져온 결과이다. 그래서 1890년 부산에서는 카네킨에 대한 기호 가 고급화하여 상등품의 매매가 활발했고 하등품은 일체의 수요가 없는 실 정이었다.²⁰⁾

〈표 1〉 자본제 섬유제품과 토포의 상대가격

(카네킨/목면)

연 및	Ē	부	산	인	천	연	도	부	산	인	천
1881	1881 5.44				1888						
1882	1882 4.16		.16			1889		3.08		3.03	
1883	1883 5.33		8.00		1890		2.78				
1884		7	.20	5.81		18	91	2	.72	2	.97
1885	1885 3.		3.85		8.16		92	2	.77	3	.15
1886		2	.89			1893		2.90		3	.27
1887		3	.17			1994		3.70		3	.63

^{*} 河元鎬, 〈開港後의 穀價變動에 대하여(1876~1894)〉(《李佑成教授定年記念論叢》, 創作과 批評社, 1990).

그런데 이러한 기호의 변화는 면포생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1893년의 기록에는 "근년 당국에서 카네킨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금은 각도에 달하고 寒村僻邑이라도 널리 본품의 수요로 채우기에 이르렀다. 목동・나무꾼도카네킨의 의복을 입는 정도라서 점차 그 품격을 낮추어 보기 때문에 근래에는 목면 의류를 입는 쪽이 오히려 귀하게 보이는 경향이 생겨 이 기호의 변천에 따라 카네킨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찾아내고 여러 단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방 농민의 부유한 자 중에는 자국의 면을 제조하여 손으로 목면을 짜거나 또 면화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는 해외에서 방적사를 매수하여 手織의 재료로 삼는 것이 증가했다"고 한다.21) 이 인용문은 자본제섬유제품이 결코 사치품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빈농이하의 계급에도 침투

^{20) 《}明治官報》 2178, 1890년 10월 1일, 通商報告〈釜山港貿易景況〉(1890년 7월증).

^{21)《}通商彙纂》1,1893년 12월 9일、〈朝鮮國綿作ノ景況〉(1893年10月22日付在仁川 領事館報告)。

하며 조선의 면포와 대립하고 있던 사정을 보여준다. 물론 이 기록에서 보는 카네킨의 취약성, 목면보다 세탁에 약하다는 점은 목면의 수요를 완전히 카네킨이 장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상인은 일본산 목면으로이에 대처하려 했지만 갑오이전까지는 일본목면의 수입이 적어 조선 목면을 구축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갑오이전 면포생산의 기본형태는 농가부업적 수공업이었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전대제식 방식에 의한 부농경영도 존재했다. 22) 1892년 서울에서는 일본제 綿繰機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의 근대화를 꾀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3) 그러므로 이 시기는 아직 외국산 섬유제품이 완전히 토포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는 단계여서 면포생산을 통한 부농이나 소상품생산자의 발전 가능성은 일정하게 존재했다. 오히려 원격지 무역의중대에 따라 부산에서 국내 각 개항장 등으로 이출한 면포의 양이 1885년 1,805엔에서 1894년 346,127엔으로 급증하는 등 면포의 국내 교역량이 증대하는 추세였다.

개항기 토포생산의 기본형태는 부녀자에 의한 농가부업적 가내수공업이었다. 가내수공업의 생산력은 紡絲와 織布과정에 각각 5일의 노동력이 필요하여원면에서 1필의 면포를 완성하기까지 적어도 10일간의 노동력이 소요되는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순수하게 방사와 직포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이었으므로 농가부업으로 이루어진 직조량은 연간 30필 정도가 한계였을 것이다. 24) 그런데 1895년 조선 내륙지방을 여행한 한 일본인의 조사에 따르면직포업이 성행했던 경상도 진주는 면직호 1호당 평균 직조량이 60필, 나주·순천·연기 등은 40필 정도였다고 한다. 25) 호당 평균 직조량이 40~60필이었다는 것은 농가부업을 훨씬 넘어서는 경영형태가 존재하였고, 훨씬 큰 생산규모의 면직호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규모는 농공결합에의한 생산단계에서 면작과 직포가 분리되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²²⁾ 梶村秀樹、〈朝鮮末期朝鮮の纖維製品の生産及び流通状況〉(《東洋文化研究所紀要》 46. 1968);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展開》(龍溪書舍, 1977)에 재수록 참조,

^{23) 《}明治官報》 2833, 1892년 12월 6일, 通商報告〈京城ニ於ケル日本綿繰機械ニ關スル調査〉.

²⁴⁾ 梶村秀樹, 앞의 글.

²⁵⁾ 岡崎唯雄,《朝鮮內地調查報告》.

보여준다. 연간 60필의 면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면의 양은 약 100관인데, 이는 면작을 가장 많이 한 자가 겨우 자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면화를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면포의 상업적 생산은 양반이나 상인자본에 의한 선대제적 생산과 부농이고용노동을 이용하여 시장을 위한 생산을 하는 부농경영의 두가지 형태였다. 선대제적 생산은 2필 분의 원료를 貨主로부터 미리 받은 농가에서 자신의직조기를 이용해서 면포를 생산하여 그 중 1필을 화주에게 주고 나머지 1필을 품삯으로 받는 방식이었고, 부농경영의 경우는 고용주가 차려놓은 작업장에 임노동자가 모여서 고용주의 직기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 두가지 생산방식 중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지배적인 생산방식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직물수공업이 발전하였던 지역의 경우는 후자의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대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부농경영에서 임노동자가 받았던 임금의 형태는 현물과 화폐 두가지가 병존하였지만 화폐보다는 현물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직물업이발달하였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화폐형태의 임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²⁶⁾ 임금의 지불형태가 어떠한 방식이었든 고용노동의 보편화에 따라주요 산지가 아닌 지역에까지도 평균노임이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직물업의직공노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 속하여 값싼 노동력의 판매로 빈농경영의 빈곤도가 한층 심화되었다. 하지만 저임금을 바탕으로 고용주는 약간의이윤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갑오이전 시기까지는 면작과 토포생산을 통한 부농이나 소상품생산자의 성장 가능성이 일정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서 언급한 외국산 면제품 수입의 정체 이외에도 田作에서 면화와 대립하고 있었던 콩의상대가격이 토포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갑오이후는 사정이 달라졌다. 갑오이후는 전시기와 달리 수출입 상

²⁶⁾ 권병탁, 《韓國經濟史 特殊硏究》(영남대 산업경제연구소, 1972).

품에 큰 변화가 있었다. 수출품은 역시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물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수입 자본제 상품은 카네킨 위주에서 일본목면・씨이팅・방적사 등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영국산 카네킨의 중계무역을 놓고 일본과 청국이 대립하던 단계에서, 일본산 섬유제품이 여전히 카네킨의 중계무역을 위주로 하는 청국을 압도하면서 조선의 면포시장을 장악해 나갔던 것이다. 일본은 목면과 같은 완제품만이 아니라 半製品인 방적사도 대량으로수출함으로써 조선의 면업생산구조를 뒤바꾸어 놓았다.

1895년 이후의 곡물가격에 수입 면제품의 가격을 나눈 상대가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 표는 모든 곡물과 수입면제품의 상대가격을 구하지 않고 지역적 조건에 따라 대표적 상품을 서로 대립시켜 본 것이지만,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그 경향성은 동일하다. 여기서도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곡물의 가격조건이 수입 면제품의 그것보다 나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2⟩	穀物과	輸入纖維製品의	相對價格

연 도		콩/日本木綿	쌀/씨이팅	쌀/生金巾	
민 포	인 천	부 산	원 산	인 천	부 산
1895	4.42	2.35	3.65	1.46	2.17
1896	4.89	2.46	4.77	1.68	1.84
1897	5.31	3.08	4.97	2.08	2.27
1898	6.01	3.27	5.50	2.61	3.50
1899	6.37	4.34	6.33	1.86	2.29
1901	5.80	3.92	5.82	1.80	2.50
1902	5.04	3.19	5.16	1.78	2.04
1903	5.29	3.56	5.81	2.38	2.01
1904	5.45	4.00	6.20	2.48	2.84
1905	7.03	5.12	6.68	2.36	3.46

^{*1.} 河元鎬,〈開港後 穀價變動研究(1895~1904)〉(《國史館論叢》53, 1994).

수출곡물의 상대가격이 수입제품보다 높아지는 조건하에서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한 곡물의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곡물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2.} 콩과 쌀은 1석 당 엔화가격. 일본목면・씨이팅・牛金巾은 1反 當 엔화가격.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구조도 일정하게 변화시켜 갔다. 수출 곡물인 쌀과 콩의 경작면적 확대나 타경작지의 미작과 대두작으로의 전환은 가격체계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것은 농업생산의 단작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콩과 토포의 상대적 가격조건에서도 비교된 지역 모두콩의 가격조건이 나아진다. 콩과 면포의 가격조건 변동은 자연히 田作에서 대립하던 대두작과 면작에 변화를 가져왔다. 면화재배지의 대두작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1899년《皇城新聞》의 "今에 民이 洋布의 便易함만 旣知하야 女工의 艱難을 旣廢하고 綿田에 易豆함이 處處에 皆然한즉…"이라는지적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27)

〈표 3〉 콩과 土布의 相對價格

(콩/朝鮮木綿)

연 도	인 천	부 산	원 산	연 도	인 천	부 산	원 산
1895	3.18	1.94	3.52	1901	4.46	3.79	5.65
1896	4.06	2.12	4.30	1902	4.06		4.97
1897	4.01	3.22	4.88	1903	4.46	3.45	5.66
1898		3.25	5.44	1904	4.92	4.02	6.21
1899		4.03	6.12	1905	6.74	5.17	7.13

^{*1.} 河元鎬,〈開港後 穀價變動研究(1895~1904)〉(《國史館論叢》53, 1994).

대표적 면화산지인 목포지방에서의 1901년 보고에 의하면, "당 지방은 저명한 면화산지로 이를 원료로 목면을 製織하고 해마다 타도에 수송하는 량이 거액에 달해 실로 주요한 특산물이지만, 개항후는 점차 면화작에 대신해大小豆로 하는 것이 수익이 많고 경작이 면화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은 대소두의 다액의 수출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28) 그래서 "개항

^{2.} 콩은 1석 당 엔화가격, 조선목면은 1反 當 엔화가격.

^{27) 《}皇城新聞》, 광무 3년 10월 4일, 논설.

^{28) 《}通商彙纂》192, 1901년 6월 10일, 〈木浦輸出大・小豆ノ前途〉(1901年5月10日附 在木浦帝國領事館報告).

후는 방적사의 수입이 있어 갈수록 면화작이 불리함을 깨닫고 동시에 본품 (大豆)의 경작을 유일한 業"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29) 가격체계의 변화가 면작의 대두작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두 수출 증가와 방적사 수입이라는 무역과 생산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과정을 목포지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두와 면포의 가격조건의 변화는 면작의 쇠퇴를 강요했고 필연적으로 면업과 이에 기반한 부농경영의 발전 전망을 흐리게 했다.

농민전쟁이후 직접적으로 전통적 토포와 대립하고 있던 것은 일본목면이었다. 일본목면이 토포시장을 탈취하며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세탁에 강하다는 내구력에서 두 제품이 비슷했음에도 가격경쟁력 때문이었다. 둘 다 모두 농가부업의 형태로 생산되지만 일본목면은 방적사를 이용해 박탄 직기로 생산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베틀에서 생산되는 토포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30)

그러나 절대가격의 비교에서는 일본목면이 낮지마는 상대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반드시 가격경쟁력이 계속 낮다고만 할 수 없다. 다음〈표 4〉의 두 제품의 상대가격의 비교에서 보듯이 지역에 따라 가격조건이 정체상태이거 나 후기로 갈수록 일본목면의 가격상승율이 높아져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목면이 조선목면을 구축할 수는 없 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목면의 수입량은 후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토 포는 부산의 이출량과 인천·원산의 이입량이 초기의 축소과정을 거쳐 후기 에는 증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물론 이 문제는 방적사 수입량이 증가하는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방적사는 면포제직에 경험이 적은 함경도지방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토포생산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방적사를 이용한 면포생산은 생산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이 면에서 토포의 생산이 외국면제품의 침투에 대해 일정시기까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일본화물의 수입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29)《}通商彙纂》198, 1901년 9월 10일,〈木浦33年貿易年報〉(1901年8月13日附在木浦帝國領事館報告).

³⁰⁾ 村上勝彦,〈日本資本主義による朝鮮綿業の再編成〉(《日本帝國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經濟研究所, 1979).

模製 木綿이 작년(1899)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퇴한 것이다. 대개 카네킨 무역과 같이 방적사의 호황에 반비례하여 하는 것으로 綿絲무역의 범위가 확장되는데 따라서 목면구역의 축소는 면하기 어렵다"는 기록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31)

〈丑 4〉 日本木綿과 土布의 相對價格

(日本木綿/朝鮮木綿)

연 도	인 천	부 산	원 산	연 도	인 천	부 산	원 산
1895	0.72	0.82	0.96	1900	0.77	0.97	0.97
1896	0.83	0.86	0.90	1901	0.81		0.96
1897	0.76	1.04	0.98	1902	0.84	0.97	0.97
1898	0.99	0.99		1903	0.90	1.01	1.00
1899	0.93	0.97		1904	0.96	1.01	1.07

^{*1.} 河元鎬,〈開港後 穀價變動研究(1895~1904)〉(《國史館論叢》53, 1994).

방적사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지역은 인천이었다. 인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면직물 유통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수입된 방적사는 바로 배 후지로 이송되어 면포생산에 조달되었다. 수송지역은 경인지방에 그치지 않고 평안·황해·충청도, 그리고 면화의 주산지인 전라도지역까지 미치고 있었다.

1900년 목포지방의 일본인의 보고에는 "근래 날줄로는 외국방적사를 사용하고 씨줄로는 자국산 手紡絲를 써서 짜는 경향이 널리 행해진다…그들의말로 목면으로 한 필을 짠 결과는…방적사를 혼용할 경우 크게 이익을 얻는다…방적사는 사용방법이 경편해 수방사와 같이 사선의 가늘고 굵기가 다르지 않아서 織出에 매우 신속하고 시간 소비가 적다. 결국 織女의 임금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노임을 절약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32) 이 때문에 방적사의 주된 수요층은 가내부업적 형태의 자급자족적

^{2.} 각각 1反 営 엔화가격.

^{31)《}通商彙纂》161, 1900년 3월 8일,〈京城31年中貿易年報〉(1899年12月18日附京城帝國領事館報告).

^{32) 《}通商彙纂》181, 1900년 12월 25일, 〈木浦輸入本邦紡績糸〉(1900年11月22日附在 木浦帝國領事館報告).

생산자보다는 상품화를 전제로 생산비를 낮추려는 선대제방식의 생산이나 부농경영에서 볼 수 있었다.³³⁾

수입방적사를 이용한 토포생산이 계속되는 인천 배후지의 토포시장을 일본목면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목면보다는 1900년대 이후 씨이팅 도입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토포생산이 패퇴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4) 그러나 이 견해는 씨이팅의 수요층이 하등층이어서 토포와대립되는 상품이라는 데 근거한다. 그러나 오히려 씨이팅이 처음 수입된 1890년대 중반과는 달리 후기로 갈수록 씨이팅의 품질이 나아지면서 주된사용층도 중류계층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씨이팅의 수요자가 토포수요자와 일치하여 씨이팅의 수입이 방적사를 이용한 토포생산을 일방적으로 '패퇴'시켰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35) 하지만 씨이팅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토포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씨이팅은 판매시장이 서울이나 경인지방의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씨이팅의 시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非면작지대의 광범한 농촌을 대상으로 하던 토포시장을 씨이팅이 바로 탈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36)

그러나 이 시기 수입방적사에 근거한 경인지방과 그 배후지인 평안·황해·충청도의 토포생산은 생산의 기반을 수입제품에 두고 있어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수입방적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방적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성장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취약한 기반위에 있었다. 실제로 〈표 5〉의 인천지역 방적사와 토포의 상대가격대비에서 방적사는 갈수록 토포가격보다 가격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이확인된다. 더구나 "대개 방적사의 수입이 근년 현저하게 진보하여 증가해 오다가 수입이 감소된 것은…韓貨유통가격의 폭락과 면화작의 양호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전자의 영향은 후자의 영향에 비해 한층 심하다"라는 인용

^{33)《}通商彙纂》180, 1900년 12월 10일,〈群山輸入本邦紡績絲〉(1900年11月22日附在 群山帝國領事館報告).

³⁴⁾ 梶村秀樹, 앞의 글(1968).

³⁵⁾ 河元鎬, 《한국근대경제사연구》(신서원, 1997).

³⁶⁾ 吉野誠、〈李朝末期における綿製品輸入の展開〉(《朝鮮歷史論集》下, 龍溪書舍, 1979) 참조.

문에서 보듯이 백동화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수입상품의 가격을 등 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³⁷⁾ 이 같은 원료가격의 상승은 방적사의 수입에 근거한 토포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발전 전망역시 제한적이고 불투명했다.

그러므로 전통적 토포시장을 일본목면에 탈취당한 이들 지역의 토포생산은 당연히 위축되었고, 종래 면업과 면포생산에 기반한 부농경영의 성장은이 시기 들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수입방적사의 가격상승률은 계속 토포의 그것보다 높아지고 있었다. 더구나 방적사의 수입을 일본에기대야 하는 처지여서 紡絲와 織布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없는 한 생산의 지속은 직접생산자의 노임부분을 깎아 먹거나 이윤의 축소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발전 자체가 제한적・종속적인 것이었고 진정한 의미의부르주아적 발전 전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丑 5〉 紡績絲와 土布의 相對價格

(紡績絲/朝鮮木綿)

연 도	인 천	부 산	연 도	인 천	부 산
1895	25.41	29.40	1900	27.17	28.24
1896	28.49	27.85	1901	27.73	
1897	26.44	37.98	1902	28.78	31.29
1898			1903	30.04	32.90
1899			1904	33.54	30.88

- *1. 河元鎬、〈開港後 穀價變動研究(1895~1904)〉(《國史館論叢》53, 1994).
 - 2. 紡績絲는 1擔 當 엔화가격, 朝鮮木綿은 1反 當 엔화가격.

물론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직포에 개량된 기계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시 장환경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광무연간에 서울을 중 심으로 직물업의 발달이 어느 정도 있었음은 지적되어 왔다.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서면서 근대적인 방직공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37) 《}通商彙纂》 臨時增刊 241, 1902년 12월 250일,〈仁川34年貿易年報〉(1902年9月 30日附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확산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직물회사의 설립이 적극 추진되었다. 1897 년 안경수・서재필 등 독립협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大朝鮮苧麻製絲會社 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외국인과 합자하여 상해에 있는 비단제조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삼과 모시로 실을 만들어 수출함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였다. 1899년에는 정변조ㆍ이헌규 등의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어 漢城紡 續股本會社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1897년 안경수를 중 심으로 半官半民의 대한직조공장이 추진되었고 1898년에는 김익승의 주도로 직조권업장의 설립이 기도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들은 실제의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자료에 단편적으로 설립에 대한 기록들만 남아 있다. 1900년대에 들 면 방적사를 수입해 동력을 이용한 개량직기로 생산하는 직조공장이 여러 개 들어섰고 직물업이 상당히 진전되어 갔다. 하지만 값싼 일본산 기계제 면 포에 대응하기에는 생산력 수준이 낮았고, 자본력도 열세였다. 따라서 당시 직물회사의 생산물은 수입면포와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제품에 집중 되었다. 이들 회사의 생산품목은 기계화가 쉽지 않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 닌 絹製品 생산에 집중되거나. 면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면포가 아닌 모자・학 생복·양말·갓끈·허리띠 등 직물업의 주류에서 벗어난 상품이 대부분이었 고 표백·염색 등 영업종목의 다변화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물품의 생 산은 생산력과 자본력의 한계로 인하여 기계제 면포와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한 생존방식이었지만, 면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衣料市場에서 이들 제품 의 비중은 지극히 낮았고 수입 면제품의 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될 수가 없었다.38)

원래 방적업의 발달에 따라 방적과 직포과정이 분리되고 면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에서의 일반적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 의 경우 방적업의 발달이후 방직업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수입방적사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그 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발전에는 한계 가 있었고 대부분 소멸되어 성공적인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전통적 생산방

³⁸⁾ 姜萬吉, 〈大韓帝國時期의 商工業問題〉(《亞細亞研究》, 16-2, 1973). 宮嶋博史, 앞의 글.

權泰檍、〈韓末 日帝初期 서울地方의 織物業〉(《韓國文化》1,1980) 참조.

식 아래 방적과 직포가 미분리된 농촌의 토포생산은 방적사와 면제품의 대 량수입으로 그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고 종래의 부농경영의 한 축으로서의 면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河元鎬〉

4. 교통 · 운수 · 통신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1894년은 한국의 개항기에 있어 한 분수령이었다. 이 때부터 조선정부는 경국대전의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교통·운수·통신제도에 있어서도 역제·봉수제·조운제를 폐지하고, 우편·전신·전화·기선·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운수·통신제도를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역제·봉수제·조운제는 사회경제적 기능과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전통적통치질서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통치질서와 교통체계의 관련성은 역제를 통하여 잘 파악할 수 있다. 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은 중앙과 지방, 또는각 군현간의 政令을 전달하는 기능, 官物이나 사신의 卜物 그리고 진상·공부 등을 운송하는 기능, 사신을 迎送하고 支待하며 역마를 세우는 기능 등이다.1) 이중 진상·공부를 운송하는 기능은 공납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사신을 영송하고 지대하는 기능은 조공무역체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운영방식을 보면, 驛民을 편성하여 그들의 노역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입역제도와분급된 驛田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는 토지분급제도에 기초하고 있다.2)

갑오·을미개혁기에는 신역제를 폐지하였으며, 조공무역·조운제·공납제를 폐지하고, 조세의 금납화를 실시하여 국가에 의한 물자유통체계를 해체함

¹⁾ 조병로, 《조선시대 역제연구》(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44~63쪽.

²⁾ 조병로, 위의 책, 354~357쪽,

으로써 민간에 의한 물자유통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교통·운수·통신제도는 민간의 정보유통과 물자유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교통·운수·통신제도의 정비과정은 당담기관의 형성과정과 운영실 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담당기관은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관과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현업기 관으로 구성된다. 갑오개혁기에는 우선 중앙기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894 년 6월에는 중앙관제를 8衙門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工務衙門에 통신사무 를 관장하는 국으로 驛遞局과 電信局을 두었으며, 철도를 관장하는 국으로 鐵道局을 두었고, 항구의 등대와 浮椿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燈椿局을 두었 다. 이로서 교통・운수・통신을 관장하는 중앙관제는 마련되었다. 1895년 3 월에는 중앙관제를 8아문에서 7部로 개편하였다. 이 관제개편은 교통・운 수 · 통신사업에 관한 한 개악이었다고 평가된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전신 · 해운·철도를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중앙관제의 개편은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무아문은 농상아문과 합쳐서 농상공부로 되었는데, 농상공부에 는 교통・우수・통신을 관장하는 기관은 통신국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통신 국 아래에 遞信課와 管船課를 두어 통신과 해운을 관장하게는 하였으나. 철 도를 관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철도관장기관이 없는 중앙관제가 만 들어졌다. 그리고 통신과 해운을 관장하는 기관도 통신국 하나로 통합하여. 공무아문의 역체국과 전신국은 체신과로, 등춘국은 관선과로 격하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개악속에서도 등춘국에서는 없었던 선박과 해운 및 수운회사와 水陸운수사업의 관장사무가 관선과의 업무로 포함되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 었다.

각 중앙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기관으로서 現業機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갑오개혁 때에는 현업기관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을미개혁에 와서야 우편사업을 수행하는 현업기관인 郵遞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편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집행할 현업기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획관리기관의 창설에 비하여 현업기관의 창설이 더 늦고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갑오개혁기에는 중앙관제의 개정만이 이루어졌을 뿐 지방제도개혁은 을미개혁기에 진행되었다. 교통·운수·통신의 현업기관은 기획관리기관의 지방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업기관은 지방제도개혁 이후에 이루어졌다.

둘째는 일본은 조선의 전신·해운·철도를 장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선정부의 전신·해운·철도 관련 현업기관의 창설을 막고 있었다. 전신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조선정부는 갑오개혁이전에 이미 전신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오개혁기 동안에는 청일전쟁에 의해 중단되었던 전신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전신선을 복구하고,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우편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현업기관이 창설되지 못하였다. 전신사업의 현업기관은 아관파천이후에야 만들어지게되었다.

셋째는 이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한편, 우편사업은 을미개혁기의 지방제도개혁과 더불어 급진전되었다. 1895년 5월 26일에는 전국을 8道에서 23府로 재편하는 지방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지방제도개혁은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도된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신체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地方制度改正에 관한 件〉이 나온 지 한달 후인 1895년 윤 5월 26일에 〈郵遞司官制〉를 제정하여, 23부의 府所在地와 개항장 중 유일하게 부소재지가아니었던 元山을 포함하는 24개 지역을 우체사 설치 예정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우편사관제〉에 의거하여 우체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896년 7월 25일에는 우체사의 설치가 일단락되었는데, 이 때 23부중 강릉ㆍ제주ㆍ갑산을 제외한 20府와 원산에 우체사가 설치되었으며, 수원에는 한성우체사지사가 설치되어 21郵遞司 1郵遞支司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당시 우체사는 부소재지와 개항장에 한정되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개항장과 주요 행정중심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포구와 장시로 이루어진 말단의 상업네트워크를 포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성과 23부로부터 각 군으로 가는 행정통신망도 갖추지 못한 매우 빈약한 상대

에 그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개항장에 일본의 우편국이 진출하여 우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신주권이 채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신사업은 갑오개혁이전부터 한성전보총국과 조선전보총국에 의해 운영 되었다. 이 전신사업은 청일전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첫째는 청일전쟁이전에는 1885년에 조선과 청국사이에 체결된〈義州電線合同〉에 의 해 청국이 조선내 전신가설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에 의해 이러한 청국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조선정부의 전신사업에 대한 주권이 부 분적으로 회복되었다. 둘째는 청일전쟁과 갑오농민전쟁으로 조선의 전신선 및 전신주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이 서로전선과 북로전선을 강점하고 있었으며, 경인간과 경부간에는 군용전선을 가설하여, 일본군에 의한 전신선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은 조선의 전신사업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정부는 電郵 總局의 主事와 學員을 司事로 임명하여 전신선을 보수하게 함으로써 전신사 업의 재개를 기도하고 있었으나. 일본군의 전신선 강점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을미개혁기에 통신사업의 기획관리기관의 축소 와 병행하여 사사의 일부만을 농상공부주사로 임명함으로써 전신사업의 재 개에 투입된 인원을 감축시켰다. 한편 일본은 군용전선으로 가설된 경인선ㆍ 경부선을 이용하여 公衆電報事業을 실시하였다.

해운사업은 갑오개혁이전에는 이운사라는 관영기선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운사는 조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과 화물운송사업도 실 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조운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운사의 해운사업 일 체를 日本郵船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조선의 해운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이 갑오·을미개혁기에는 구래의 교통·운수·통신제도가 해체되었으며, 근대적인 교통·운수·통신제도의 정비가 시도되었지만, 당시 근대적 교통·운수·통신제도의 정비는 조선정부의 교통·운수·통신주권의 확립이나 조선인 상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의한 교통·운수·통신주권의 침해와 일본인 상인의 조선진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아관파천은 1894년 이래의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한 전환점을 이룬다. 아관파천 이후 개혁의 중점은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에 있었다. 아관파천 이후의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개혁도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를 지향하면서 전개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몇 개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근대화의 초기에는 국가에 의한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정비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동력이었다. 조선의 경우에도 민간자본이 취약하여 국가에 의한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먼저 국가의 교통·운수·통신사업정책은 이를 담당하는 관제의 개혁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을미개혁기의 관제는 교통·운수·통신을 기획관리하는 기관이 그 중요성과는 걸맞지 않게 한 局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획관리업무에는 철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현업기관은 우편사업의 경우만 약간 설치되었을 뿐이고, 전신·해운·철도에 관한 현업기관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대한제국기의 관제개혁은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 추진력은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였다.

그리하여 아관파천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 7월 15일에 농상 공부관제를 개정하여 농상공부 통신국 체신과의 업무에 철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상공부 통신국이 철도사업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를 위해 조선정부가 직접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립되면서, 1898년 7월 6일에 철도사업을 기획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상공부에 鐵道司를 설치하였고,3) 얼마 있지 않아 鐵道局으로 승격시켰다.4) 이 때에 이르러 교통과 해운은 통신국이, 철도는 철도국이

³⁾ 朱炳基 外,《韓末近代法令資料集》2(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1898년 7월 6일, 칙령 제26호〈철도사관제〉, 384~387쪽.

^{4)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1898년 7월 27일, 칙령 제29호 〈철도사를 철도국으로 개칭하고 해관제를 개정하는 건〉, 388~389쪽.

기획관리하는 체계가 되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이들 기관의 활동이 증대 되면서 통신국과 철도국은 각각 通信院5)과 鐵道院6)으로 승격되었다.

기획관리기관의 이러한 정비와 함께 현업기관도 충실화되어 갔다. 먼저 우 편사업을 보면, 을미개혁기에는 우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현업기관으로 우체사를 설치하였는데, 1896년 7월 26일에도 21우체사 1우체지사라는 빈약 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항장에는 일본의 우편국이 활동하고 있어 서 조선정부의 통신주권도 침해되어 있는 상태였다. 조선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편으로는 일본 우편국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른 하편 으로는 우체사를 증설하여 전국적인 우편망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우선 일본 우편국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우편업무 를 개시하였다. 開港國이 우편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각 통상국들이 개항 장에 자국의 우편국을 개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개항국에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우편을 실시하게 되면 개항장에 설치되어 있 는 제외국의 우편국을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정착되고 있었다. 즉 개항장에 진출한 외국의 우편국은 개항국이 개항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의 우편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동안 작정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으로 위치 지워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조선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국제우편을 실시함으로 써 통신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1893년부터 진행되었 다. 1893년에는 朝鮮電報總局을 電郵總局으로 승격시켜 전우총국으로 하여금 국제우편을 실시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청일전쟁과 갑오을미개혁기의 친일내각의 수립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국제우편을 실시함으로써 통신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재개되었다. 그 결실로 1900년에는 국제우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1900년 3월 16일에 대한제국은 일

⁵⁾ 통신원은 1900년 3월에 농상공부 대신의 감독을 받는 농상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해 9월에 독립관청으로 승격되었다.

^{6) 1900}년에 창설된 철도원은 농산공부 철도국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철도원은 황실재산인 철도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1901년 농상공부 철도국이 폐지됨으로써, 대한제국의 철도에 관한 유일한 기획관리기관으로 되었다.

본정부에게 조선에 진출한 일본 우편국의 폐쇄를 요구하였다.7)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한제국 우체사의 국제우편물을 개항장에 진출한 일본 우편국이 인수받아 일본의 선박에 의해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일본 우편국을 존속시켰다.8) 대한제국은 1900년 6월 대한협동우선회사를 인가하 여 대한제국의 기선회사로서 국제항로를 운영하게 하여 대한제국이 자립적 으로 국제우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일본 우편국의 철폐를 요구 하였다. 일본은 일본인의 조선시장 진출을 위하여 小包郵便‧郵便換‧郵便貯 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조선시장진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포 우편에 대하여 無檢杳無關稅를 요구하는 한편.9) 대한제국의 우편기관이 소 포우편 · 우편환 · 우편저금을 취급하지 않아 일본 우편국을 대체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일본 우편국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일본 어민의 조선연안 어 업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조선연안에 우편기관을 증설하여 갔으며. 철도의 부 설이 진행되면서 일본인이 철도연변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 해 우편기관을 증설하여가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국제우편을 실시하여 통신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일 본 우편기관을 증설하고, 취급업무를 확대하여, 일본인들이 정보수집, 물자유 통,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우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본 우편기관의 발전이 대한제국 우편기관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대한제국의 우편사업도 체계화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외국인들이 대한제국 우체사를 신뢰하여, 일본 우편국이 아니라 대한제국 우체사를 이용 하는 서양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파악할 수 있다.10)

대한제국은 또 전국적 우편망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우편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21우체사 1우체지사로서는 포구·장시의 네트워크를 포섭하지 못

⁷⁾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舊韓國外交文書》4(高麗大 出版部, 1968),《日案》 4, 문서번호 5567 日本郵遞局增設停止 및 旣設局漸次鐵鎖斗 郵約一節削除要請, 596쪽(이후는《舊韓國外交文書》는 생략하고《日案》으로만 표기한다).

^{8) 《}日案》 4, 문서번호 5573 在韓日本郵遞局整理에 對한 同意不能의 件, 601~602쪽.

 [《]日案》4, 문서번호 4894 小包郵便物의 無檢查無稅通關에 對한 同意要請, 166~ 167쪽.

^{10) 《}通商彙纂》 241, 1902년 11월 25일, 61쪽.

할 뿐만 아니라, 행정통신망으로서도 미흡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군의 행정통신망을 우편사업에 포섭하여 전국적 우편망을 구축하고자 臨時郵遞司制度를 창설하였다. 임시우체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임시우체사 및 확대된 우편체송망의 관리를 위하여 우체사도 증설하였다. 대한제국기 우체사의 증설은 이 이외에 개항장이 늘어남에 따라개항장의 통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체사를 증설하였으며, 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이 철도에 의해 유발된 통신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철도역에 우체사를 증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철도역에 우체사를 증설하여 철도에 의해유발된 통신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는 완수되지 못하고, 통신기관을 일본에게 탈취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임시우체사제도의 실시와 우체사의 증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포구·장시로 구성되어 있는 말단의 통신네트워크를 포섭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전신사업은 갑오개혁이전에 이미 조선정부가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일본의 조선 전신선 장악 의도에 의해 갑오·을미개혁기에는 전신사업의 현 업기관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전신사업의 현업기관은 아관파천이후에 만들어 졌다. 아관파천 이후 전신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우선 이루어져야 하였던 것은 일본이 강점하고 있는 전신선을 반환받는 것이었다. 일본이 강점하고 있는 전신선을 반환받으려는 조선정부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서 1896년 7월 17일에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반환을 확약받을 수 있었다.11) 그러 나 경인선과 경부선은 군용전선이라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였다.

조선정부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반환을 확약받은 얼마후인 1896년 7월 26일에 전보사관제를 제정하여, 전신사업의 재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때는 아직 23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기여서, 〈전보사관제〉에 규정된 전보사설치예정지는 이를 반영하여 우체사와 마찬가지로 23부 소재지와 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이외의 설치예정지로는 경흥과 회령과 고성이 있다. 경흥과 회령은 러시아 전신선과의 연접을 의도하여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보사는 이들 지역에 모두 설치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11) 《}日案》 3, 문서번호 4089 京義・京元電線 正式返還의 件, 465쪽.

는 〈전보사관제〉가 제정되고 얼마있지 않아 지방제도가 13道制로 개정되어서 23부제를 바탕으로 한 전보사 설치예정지는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당시에는 청일전쟁이전에 가설한 전신선을 복구하여 이들 지역에 전신업무를 재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전신선의 복구를 넘어선 전신선의 확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재정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기에는 전보사를 증설하고 전신선을 신설하여 사업의 확장을 도 모하였는데 갑오개혁이전과 비교할 때 대한제국의 전보사는 크게 여섯 종류 의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첫째는 관찰도 소재지, 둘째는 새로 개항한 지역, 세째는 외국인 개발광산이 소재한 지역, 셋째는 북로전선의 북쪽으로의 연장 을 위한 거점, 다섯째는 한성 인접의 주요지역, 여섯째는 기설 전신선의 중 간에 존재하는 지역이다.

전신사업도 우편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행정도시와 개항장을 연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전신사업에 있어 특이한 점은 외국인 개발광산이 소재한 지역에 전보사를 개설한 것이다. 철도와 전기와 광산은 그 사업의 특성상 자 체의 통신망이 필요하다. 광산개발특권을 얻은 외국인들은 광산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자체의 통신망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대한제국은 외국인 에 의해 가설되는 국내전신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산개발특권을 가 진 외국인들이 외교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대한제국은 이들 지역에 전보사를 설치하여 직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북로전선의 북쪽 으로의 연장은 조선과 러시아의 전선의 연접을 고려한 것이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의 실현을 막고 있었던 것은 1883년 일본과 체결한〈釜山口設海 底電線條款〉에 입각한 일본의 개입이었다. 1883년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은 조선정부가 일본과 부산을 연결한 해저전선인 부산구설해저전선과 대항할 수 있는 해저전신선을 가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연접은 러시아 를 통한 유럽으로의 전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산구설해저전선의 수 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은 이를 허용해 주는 대신 일본에게 전신사업에 대한 새로운 특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은 군용전 선이라는 미명하에 경인전선과 경부전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육상전신선은 절단 등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는데, 대한제국과 조선인은 이 전신선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電線守備憲兵을 파견하고 있었다. 12) 이와 같은 전신보호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선전신에 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해저전선에 의한 방법이다. 따라서 일본은 경인간의 무선전신과 경인간의 해 전선의 부설을 허용할 것과, 이 전신을 조선정부의 전신선과 기계적으로 通連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이 조선의 전신선과 러시아의 전신선의 연접을 허용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은 이 이외의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특권요구와 결합되어 있는 조선과 러시아와의 전신선 연접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경부철도가 건설되어 가자, 우체사 증설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한 전보사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것은 우체사의 증설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대한제국은 청일전쟁기에 일본이 강점한 전신선을 되찾아 전신사업을 재개하여 갑오개혁이전의 전신사업보다 더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직 주요 행정거점과 개항장을 연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체사보다 그 보급의정도가 더 일천하여, 포구·장시 네트워크를 포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전신망으로도 불충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전신자주권이완전한 것도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883년〈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인 전신사업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인선과 경부선을 군용전선이라는 미명하에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1902년부터 경성과 인천에 전화교환사업을 시작하고, 경인선을 이용하여 경성과 인천간의 시외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화사업의 개시에 대해 대한제국은 그 불법성을 주장함13〉과 동시에 대한제국 스스로 전화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당시 대한제국의 전화사업은 일본의 전화사업 진출에 대한 대항적인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대항적인 사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화사업은 지속되고 있어서, 대

^{12)《}日案》3, 문서번호 4332 京釜電線守備憲兵中百三十名交代의 件 및 문서번호 4522 京釜電線守備交代兵到着 및 配置에 關한 通報、570・645~646쪽.

^{13)《}日案》 5. 문서번호 6706 仁川日本郵局京仁電話增設置計劃의 禁止要請, 622쪽.

한제국의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신전화사업의 전개도 통신주권의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일본은 이 속에서 조선의 전신전화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확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해운사업을 살펴보면, 갑오·을미개혁기에 수운·선박·선원에 관한 기획 관리기관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현업기관은 마련되지 못하였 다. 대한제국은 포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연안해운권 침 탈을 막고, 조선인 기선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비개항포구에 외국인기선의 진입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는 船稅規則과 관련 하여 마련되었다. 1899년에는 〈국내선세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인이 구입하거 나 용선한 선박은 모두 농상공부 통신국 관선과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으며,14) 이를 집행하기 위해 주요 각 항과 각 포구에 사무를 구관할 위원을 파송하 도록 하였으며, 위원을 파송할 지역으로는 경강·양근·강화·인천·해주· 장연·삼화·평양·박천·의주·원산·성진·경흥·영동·연일·부산·김해· 창원·무안·옥구·아산·제주·법성¹⁵⁾ 등 23개 지역을 설정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內部에서는 각 지방관에게 비개항포구와 鐵路 각 지역에 行棧을 개설하 는 것과 외국인들의 선박이 왕래하는 것을 막으라는 훈령을 발하였다.16) 1900년에는 이러한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는데, 선세위원의 관할구역을 29개로 증설하고. 이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197곳의 개항장 및 미개항포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 시기 관할구역의 증설은 충청남도와 전라도 연안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대한제국은 정부가 소유한 선박을 조선인 민간기선회사에게 불하하고, 우체기선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 민간 기선회사의 발전을 독려하였다. 당시 기선회사에 의한 우편물 체송은 우체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물의 해상 체송을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기선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물 체송이라는 공무수행을 명분으로 하여 기선의 운항을 신속

^{14) 《}韓末近代法令資料集》2, 1899년 7월 12일, 칙령 제33호〈국내선세규칙〉, 530~532쪽.

¹⁵⁾ 법성은 위원을 파견할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가 번극할 때 임시 위원을 파견할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다.

^{16) 《}독립신문》, 1899년 10월 25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조선인 우체기선회사는 1898년 7월에 설립된 한국우체기선회사와 1900년 6월에 인천에 설립된 대한협동우선회사를 들 수 있다. 양 회사 모두 연안항로 뿐만 아니라 대외항로도 운항하고 있다.17) 그러나 정부의 우체기선회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우편항로의 경우, 명령항로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갑오을미개혁기 이운사의 기선을 위탁경영하였던 日本郵船의 경우 수입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6년에는 19%였으며, 몇 년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18) 그러나대한제국은 이와 같은 보조금정책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무역이 발전하고 조세의 금납화가 실현되어 민간기선회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속에서, 대한제국이 연안해운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 기선회사의 발전을 독려함에 따라 당시에는 조선인 민간해운업이 상당 정도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국내무역에 있어서는 조선인 기선회사의 우위가 어느정도 확립되었지만, 국제무역에 있어서 조선인의 성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19) 반면 일본의 기선회사들은 원양항로 보조정책에 힘입어 국제무역에 있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1900년대 이후에도 조선인의 명의만을 빌리거나 동업관계를 맺어 비개항포구로의 항로를 운영하는 일본인 기선회사의 불법적인 침투는 근절되지 않았다.

철도사업은 아관파천 이후 농상공부 관제를 개정하여 농상공부의 업무에 철도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켰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농상공부에서는 우선 국내 철도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철도규칙은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1896년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외국인회사가 철도를 설치할 때에도 철도역에서 외국인이 行棧할 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외국인에 의한 철도

¹⁷⁾ 나애자, 〈개항기(1876~1904) 민간해운업〉(《국사관논총》 53, 국사편찬위원회, 1994). 79~80쪽.

¹⁸⁾ 加藤幸三郎、〈産業資本確立期の日本海運〉(《社會經濟史學》48권5호, 1983), 39等.

^{19) 1901}년 군산항 출항선박톤수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외국무역에 있어서는 일본이 18,350톤이고, 중국이 23톤이며, 대한제국은 존재하지 않아서 99.9%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무역에 있어서는 대한제국이 13,586톤, 일본이 6,672톤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한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通商彙纂》231, 1902년 9월 29일, 87쪽).

건설을 허용하더라도 철도건설을 매개로 한 외국인의 내국시장 침투는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²⁰⁾ 그리고 1898년에는 국내 철도건설에 있어서 외국인과의 합동을 불허하고,²¹⁾ 조선정부가 직접 철도를 건설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²²⁾ 농상공부에 철도사를 신설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철도는 부설되지 못하였다. 1900년부터는 철도업무를 황실이 장악하면서 철도의 부설도 황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철도원을 만든 지 얼마되지 않아, 경의선과 경원선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 西北鐵道局을 만들었다.²³⁾ 서북철도국은 경의선 건설을 착수하였지만, 준공하여 영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한제국이 철도 주권의 유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철도부설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조선인의 철도회사 설립에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조선인 민간 철도회사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그리고 조선인의 철도부설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대한제국과 조선인에 의한 철도건설이 좌절된 이유는 철도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철도부설에 대한 외국의 이권요구를 억누르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가졌다고하겠다. 이 시기에는 철도주권을 위한 대한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의해 경인선이 준공되고, 경부선과 경의선이 부설되어 사실상 철도 주권은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교통·운수·통신사업의 전개는 민족경제에 다음의 여러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첫째, 근대적 교통·운수·통신기관이 구래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을 어느 정도 대체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조선의 구래의 교통·운수·통신제도는 국

^{20)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1896년 8월 4일, 칙령 제40조〈국내철도규칙 개정〉, 128쪽.

^{21)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1898년 1월 12일, 〈국내철도·광산의 외국인 합동을 불허하는 건〉, 326쪽.

^{2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2, 1898년 6월 19일, 〈경성 목포간 철도를 부설하는 건〉, 374쪽.

^{23) 《}韓末近代法令資料集》 3, 1900년 9월 3일, 포달 제63호 〈궁내부관제 개정〉, 140쪽.

가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역제·조운제·봉수제·파발제 등을 들수 있는데, 이들 전통적인 교통·운수·통신제도는 해체되고, 대신 근대적인 교통·운수·통신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통신기관은 개항장과 주요 행정도시에 설치되었고, 기선은 개항장과 미개항 주요 포구의 연결이라는 형태로진행되어서 개항장을 중핵으로 한 집산지 구조로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조선의 기저적인 교통·운수·통신 네크워크인 포구·장시의 네트워크는 거의 포섭하지 못하여서 포구·장시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보부상단의 人馬에의해 유지되고 있었다.²⁴⁾

둘째, 근대적 교통·운수·통신기관의 보급이 상업체계에 미친 영향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우편·전신·기선·철도와 같은 근대적 교통·운수·통신기관은 국내시장의 확대 및 국내시장의 전국적 통합을 이루는 수단임과 동시에 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현하였으며, 이들 교통·운수·통신수단은 상인들에게 각지의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유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생산지와 소비지의 신결합을 추구하는 혁신가적 상인의 활동기반을 확충하여 주는 것이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영사관 보고체계와 遠洋航路補助政策을 실시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였다. 이 시기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통신·해운·철도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제국은 조선의 시장에 침투하려는 일본에 대항하여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교통·운수·통신기관을 갖추어 나갔다. 대한제국의 교통·운수·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진출에 의한 주권의 침해와 상권의 침탈도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였다. 조선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은 일본의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진출에 제동을 걸고, 조선인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의 침탈을 저지함으로써, 당시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고 있었던 조선의

^{24) 《}한국의 시장상업사》(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1992), 132~133쪽.

상업체계에 조선인이 대응하여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국제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선인 상인세력은 어떻 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가. 당시 일본인 상인들은 영사관보고가 제공하는 조 선각지에 대한 정보와, 일본제국이 구축하고 있었던 원양항로체계에 기반하 여, 일본제품과 조선시장의 신결합, 조선제품과 일본시장의 신결합을 추구하 고 있었다. 이들 상인은 정보의 획득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무기로 하여 새로 우 시장을 개척하는, 슘페터의 용어로 표현하면, 혁신가였다. 반면 조선에서 는 대한제국과 특권상인층이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호라는 공동목표하에 공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공조체계는 상권의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 에 대한 영업권을 특권상인층에 할당하고 특권상인층은 이러한 독점권으로 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상납함으로써, 주권의 회복과 상권의 보 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요구에 부응하는 都賈商業體系의 강화에 다름 아니었다.25) 물론 이러한 공조체계가 상권의 보호와 근대화를 담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재정 위기는 여전하였고, 이러한 재정위기로 일본의 교통 · 운수 · 통신기관의 진출 에 대응할 만큼의 교통・운수・통신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도고상업체계와 교통・우수・통신기관의 미흡함은 정보의 획득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기반으 로 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결합을 추구하는 상인층의 형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인층의 성장이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은 당시 대 하제국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별로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26)

셋째는 관련산업에 있어 조선인기업이 어느 만큼 성장하였는가의 문제이다. 교통·우수·통신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²⁵⁾ 전우용, 〈개항기 한인자본가의 형성과 성격〉(《국사관논총》41, 국사편찬위원회, 1993), 50쪽.

²⁶⁾ 당시 대한제국이 운영하는 통신기관의 통신사용량은 명치 전기 일본과 비교하는 경우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이택, 《해방이전의 통신사업의 전개과정과 고용구조》(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35~136쪽).

機資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급기술에 의해 제작되는 기자재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이를 국산화하는 기업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않았다. 교통·운수·통신산업과 관련하여 조선내에서 조달되고 있었던 것은 電信柱나 枕木, 석탄 등에 국한되었을 뿐이어서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거의가져오지 못하였다.

건설을 담당한 기관을 보면, 전신선을 가설한 것은 電報司였으며, 철도공사를 담당한 것은 토목건축청부회사였다. 전보사는 전신선을 가설하여 감으로써 가설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여 갈 수 있었다. 철도공사의 경우, 1899년부터 조선인 토목건축청부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실제 수주를 받아 작업을 하였지만, 일본 토건회사들이 진출하여 한국 토건회사들의 입지는 축소되었으며, 러일전쟁기의 速成工事 체계하에서 경부철도주식회사와 臨時軍用鐵道監部가 경부·경의철도의 부설공사를 일본 토건회사에게 독점적으로 청부함으로써, 일본인 토건회사는 이를 계기로 하여 국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조선인 토건회사는 몰락하게 되었다.27)

교통·운수·통신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된 산업으로는 신문업과 소운 송업을 들 수 있다.28) 당시 조선의 신문사들은 자체적인 신문배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신문사는 한성에서는 판매점을 설치하여 구독자가 직접구입하여 보도록 하고, 지방구독자에게는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06년 조선인이 발송한 우편물중 60%가 신문이었음은 당시 통신사업과 신문업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통신기관과신문업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인 신문사의 정보의 원천 중 중요한 것은 官報, 외국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外信, 서울이나 지방에서 보내는 投書였다. 이중 외국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외신은 전신을 통하여이루어졌으며, 투서도 전신이나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당시 조선의 통신사업은 조선인 신문업 발전의 기반이었다.

넷째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의 문제이다. 전신ㆍ기

²⁷⁾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서울대 출판부, 1999), 178~244쪽.

²⁸⁾ 소운송업은 철도와 해운의 발전에 따라 성장하였는데, 경부철도와 경의철도가 준공되어 운영된 保護國期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선 · 철도의 관리자와 운영기술자는 대표적인 기술관료이다. 이들 산업의 발 전은 기술관료의 성장을 유발하는데, 이 시기 조선인 기술관료는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통신사업은 점차 확대하여 감으로써. 1904년 말 에 통신원·우체사·전보사에 소속된 관리는 칙임관이 2명 주임관이 45명 판임관이 274명 총 321명에 달하였다.29) 통신원은 국가관료제내에서 기술관 료의 성장의 거점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이들 기술관료는 근대적인 학문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학문이수자의 수용처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 또 통신사업은 이러한 기술관료의 양성체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관이기도 하였다. 우편과 전신사업에 종사함 기술관료의 양성 기관은, 우편의 경우 1895년부터 전신의 경우 갑오개혁이전부터 조선정부가 운영하였으며, 이 양성기관은 1899년에는 郵務學堂과 電務學堂으로 체계화되 었다.30) 철도의 경우에는 한국인 토건회사의 설립 붐과 때를 같이 하여 각종 철도학교에서 서양식 토목기술을 습득한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였다. 1900년 에는 사립철도학교, 낙원학교 철도학과, 그리고 흥화학교 양지과에서 철도기 사를 양성하였지만.31) 그 규모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들의 이후의 진로는 어 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선의 경우에는 기술자는 거의 모두 일본인 으로서 조선인 기술자는 일본유학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한 몇 명에 불과하 였다. 당시 기술관료는 통신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철도와 기선에서 도 미약하나마 조선인 기술관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술관료 이외에 현업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층도 축적되고 있었다. 통신사업에서는 체전부·전전부·공두·보방직 등의 현업노무자 층이축적되었는데, 임시체전부까지 합친다면 1904년에 2,000여명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³²⁾ 해운업과 관련하여서는 부두노동자의 축적이 이루어졌는데, 1904년에는 3,540여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³³⁾ 그리고 철도건설은 철도건설에 종사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축적을 가져왔다. 이들 중 통신업무에 종사

²⁹⁾ 박이택, 앞의 책, 185쪽.

³⁰⁾ 박이택, 위의 책, 201~208쪽.

³¹⁾ 정재정, 앞의 책, 187~188쪽.

³²⁾ 박이택, 앞의 책, 185쪽.

^{33) 《}조선무역사》(조선무역협회, 1943).

하는 체전부·전전부·공두 등은 양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숙련노동자는 아니었으며, 1903년부터는 현업노무자에게도 연공가급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현업노무자의 노동시장도 내부노동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³⁴⁾ 그리고 부두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1898년에 결성된 성진 부두노동조합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다섯째는 근대적인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운영이 재정에 미친 영향이다. 우편과 전신은 반드시 적자로 운영되는 산업인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창설한 지 10여 년만에 우편과 전신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청국의 경우, 관독상판으로 운영되었던 전신국은 흑자여서 주가의 상승과 민간자본의 흡수가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통신기관은 통신기관이 피탈될 때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업이 아직 초기의 단계이며, 또 일본의 통신기관과의 경쟁관계였다는 점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조선인의 통신수요가 매우 적었다는 것에 있다.36) 그러나통신기관의 적자가 재정위기를 가속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이전에는 역제·봉수제·파발제를 운영하였는데, 이들 사업은 국가적 수요에 의해 운영되어서 수입은 없고 지출만이 발생하였다. 근대적통신사업은 이들을 대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엄밀하게 근대적 통신사업의 실시가 재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 작업을 실시한 연구는 없다.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일본은 러일전쟁기간 중에 경부선과 경의선을 거의 완성하여 조선을 가로 지르는 종단철도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1905년 4월 1일에는 〈한국통신기관위 탁에 관한 협정서〉를 조인시켜, 통신권을 장악하였으며, 1905년 8월 13일에 는 〈한국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를 조인하여 일본선박의 조선내

³⁴⁾ 박이택, 앞의 책, 215~216쪽.

^{35)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39쪽.

³⁶⁾ 박이택, 앞의 책, 118~121쪽.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조선의 교통·운수·통신을 체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우선 통신사업을 살펴보면, 1905년 4월 1일에 체결된 협정서에 기반하여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인수하여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재편의 방법은 일본 우편기관이 진출해 있는 지역은 조선의 우체사와 전보사를 일본 우편기관에 흡수통합하고, 일본 우편기관이 없는 지역은 대한제국의 우체사와 전보사를 인본 수편기관에 흡수통합하고, 일본 우편기관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시우체사는 일본이 인수하였지만, 인수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명칭만을임시우체소로 바꾸었다. 우편기관의 흡수통합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신기관의 재편과정이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대한제국기에 축적되어온 조선인 기술관료를 구축하여 상급관리자—일본인,하급노무자—조선인으로 하는 식민지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통신기관은 인수통합된 후 식민지재정제도의 창출과 식민지치안제도 창출 의 첨병으로 활용되었다.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郞) 재정고문이 추진하 재정개혁은 징세과정에서 군수를 배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국고금제 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별로 존재하 지 않아서, 우편기관에, 당시 일본에서도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국고금취급사 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고금제도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이 소재하지 않은 군에 소재하는 우편기관은 거의 모두 임시우체소였다. 임시우 체소의 전신인 임시우체사는 군의 행정통신망을 우편사업에 포섭한 것으로 서, 군수가 임시우체사장을 例兼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임시우체소를 그대로 국고금취급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주요한 군의 임시우체소 를 우편취급소로 승격시켜 국고금취급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우체소도 일본인이 장악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또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어 감에 따라 조선인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조 선인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치안통신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치안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비전화제도를 창설하였다. 경비전화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마련하였으며, 그 건설 및 운영은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수행하였다. 경비전화제도는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치안통신망을 구축하는 제도였다. 또 이 경비전화망을 공중통신망으로 사용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의 정보수집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통신기관의 업무는 우편·전신·전화와 같은 고유한 통신업무와 국고금취급사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운송대행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소포우편, 자금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환과 우편대체(postal giro), 영세자금의 동원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저금 등을 모두 취급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해운사업을 살펴보면, 1905년 8월 13일 〈한국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에 의해 일본선박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해운보조제도를 만들어 대한제국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대상은 일본인 기선회사에 한정하여, 구래에 조선인 기선회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항로들을 일본인 기선회사가 대체하도록 하였다.

철도사업의 경우, 1907년 7월 1일부터 조선의 각 역과 일본의 각 역간의 여객·수화물·화물의 연대급을 취급하였으며, 1907년 9월 20일부터 조선 각역과 안동역간의 여객 및 화물의 연락운수를 실시함으로써, 일본과 조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는 일본군의 수송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철도역은 일본인이 조선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발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대한제국의 교통·운수·통신망은 상권보호라는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격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교통·운수·통신망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권보호의 측면이 사리지게 됨으로써 일본인의 조선인 상권으로의 침투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권의 독점에 기반한 특권적 상인집단은 쇠퇴하여 갔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영업권의 독점에 기반한 특권적 상인집단 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조선인 상인이 성장하고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인 상인의 경쟁력은 일본제국주의의 지원에도 기인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통·운수·통신기관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기하여 신결합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의 우위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조선인 상인 중 일부는 이들 일본인 상인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기하여 신결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조선인 상인층의 동향은 조선인 소포우편물의 성장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는 등기소포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등기소포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고가품의 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인 소포우편물의 성장은 소포우편을 수단으로 하여 이 고가품의 판매시장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 이러한 상인층의 성장은 식민지시기에 교통·운수·통신수단을 일본시장개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선인의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한제국기에는 통신사업에 있어서 조선인 인적자본이 상당정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통신 기관을 탈취하면서, 이 조선인 인적자본을 통신기관으로부터 구축시켰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를 통하여 상급관리자—일본인, 하급노무자—조선인이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창출되었다. 선원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떠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수는 없지만, 1914년의 고용구조를 보면, 상급기술자—일본인, 하급노무자—조선인이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의 경우에도 이 시기 고용구조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그 이후의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면, 상급관리자—일본인, 하급노무자—조선인이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어드 청도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37) 그러나 해운과철도에서의 식민지적 고용구조의 형성과정은 통신사업에서와는 달리 형성되어 있었던 조선인 기술관료를 일본인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대한제국기에 선원이나 철도직원으로 성장한 조선인은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교통·운수·통신사업과 관련된 산업에서의 조선인의 성장과 관련 된 문제이다. 일본은 조선인의 해운계 진출을 철저히 방해하는 정책을 고수

³⁷⁾ 정재정, 앞의 책, 511쪽.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해운대리점업, 회조업, 화물중개업 등에 침투하는 것도 억제하여,38) 이 분야에 있어 조선인의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철도와 관련된 소운송업에 있어서는 철도국이 승인운송점제를 도입하여 일본인이 소운송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하였지만, 조선인 소운송업도 상당히 발전하여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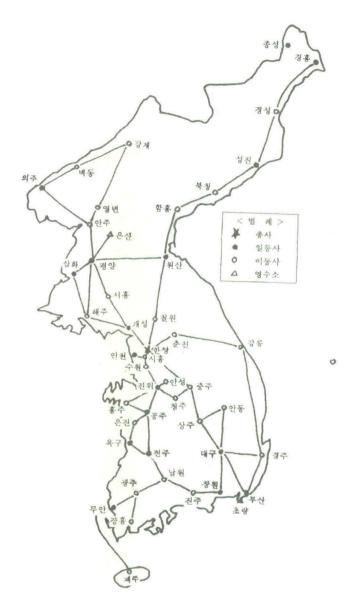
이 시기에는 조선인 상권의 보호체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도고상업체계는 와해되어 가고 있었으며,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인은 식민지 교통·운수·통신체계와 무관하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말단부에 편입되어 있는 형태였다. 식민지기에는 장시·포구의 네트워크까지 근대적인 교통·운수·통신 네트워크에 포섭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 경향은 통감부의 정책에서도 그리고 조선인의 동향에서도 포착할수 있다. 통감부는 우편기관과 철도기관을 이용하여 주변의 물류체계를 조사하여 이를 장악할 교통·운수·통신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조선인중 일부는 근대적인 교통·운수·통신수단을 자신의 성장의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조선인은 교통·운수·통신기관을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상징으로 파악하여, 철도역과 우편국, 철로와 전신선은 의병의 주된 공격대상이 되었다.

〈朴二澤〉

^{38) 《}한국해운항만사》(해운항만청, 1980), 2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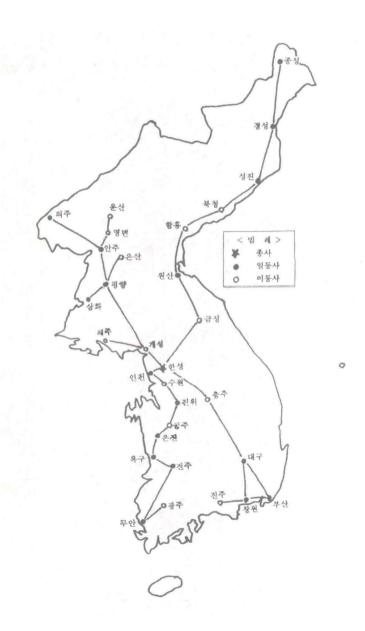
³⁹⁾ 정재정, 앞의 책, 565~567쪽.

〈그림 1〉 대한제국이 경영하는 郵便機關(1905년 3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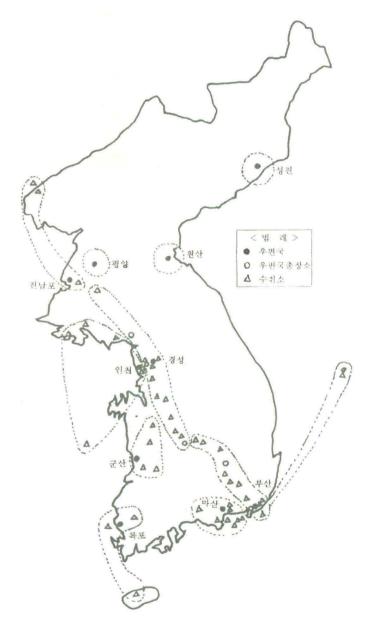


*임시우체사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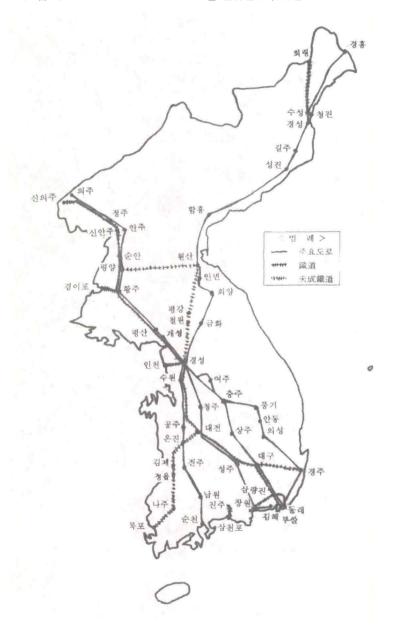
〈그림 2〉 대한제국이 경영하는 電信機關(1905년 3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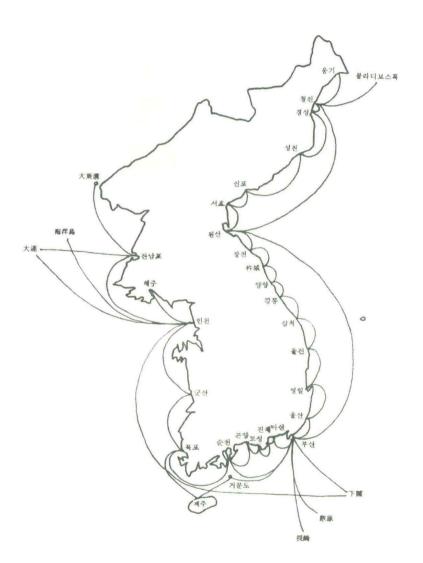


〈그림 3〉 일본이 경영하는 通信機關(1905년 3월말)



〈그림 4〉 1905~1910년 主要道路와 鐵道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 · 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가. 광무정권의 양전 · 지계사업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경상·강원·황해도에 걸쳐 1년여 동안에 치열하게 전개된 1894년의 농민전쟁은 두 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하나는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여 도탄에 빠진 농민을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을 빌미로 군대를 앞세워 한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4년의 농민전쟁은 일본 군대와 그에 의해 자행된 경복궁 쿠데타로 출범한 갑오내각의 官軍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농민전쟁을 진압한 갑오내각은 개화파의 오랜 구상이었던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하였다. 그것은 지주경영의 합리화내지 근대화와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위로부터 조속히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갑오내각의 이러한 구상은 量田事業으로 구체화되었다. 1894년 갑오내각의 핵심세력이었던 金弘集·林泳孝·魚允中 등은 전국적인 토지조사와 그에 근거한 地契의 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양전사업을 국왕에게 청하였다. 이 사업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농민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부세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말기에 각종의 부세는 점차 토지로 수렴되는 結斂化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양전이 실시되지 않아 전정이 문란하였으므로 부세의 결렴화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유발하였다. 1894년의 농민전쟁이 폭발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19세기에 변통을 요구한 개혁론자들은 한결같이 양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바, 갑오내각이 이를 수용해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농민전쟁에서 크게 위협받았던 지주적 토지

소유를 차제에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함으로써 지주제 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양전사업은 농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94년에 발의되었다. 당시 농민군들은 지주나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개혁강령으로 토지의 '平均分作'을 요구하는 등 지주적 토지소유를 위협하고 있었다.1) 갑오내각은 이를 제압하고 위로부터 근대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지주적 토지소유를 확고히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며, 이에 양전사업을 서둘러입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갑오내각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1895년에도 농민군 잔여세력을 진압하느라 이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고, 그러던 차에 乙未事變이 발생하고 반일의병운동이 일어나 개화파 정권 자체 가 붕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양전·지계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관파천을 거쳐 출범한 광무정권에 이르러서였다. 광무정권은 '舊本新參'을 표방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갑오내각이 외세에 의존해 모방적으로 근대개혁을 달성하려다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舊法과 舊制를 무리하게 폐기하여 폐단을 일으키기 보다 조선의 현실을 숙고하여 구법을 중심으로 新法을 참작하는 신·구법 절충의 개혁을 모색한 것이다.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마련되었다. 즉 종전의 結負法과 田品六等制에 따라 양전을 실시하되 근대적인 서양의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2)

광무 양전사업은 量地衙門이 담당하였다. 양지아문은 189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토지측량에 들어갔다. 양전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01년의 흉년으로 그 해 12월부터 잠시 중단되었다. 양전이 궤도에 오르자 광무정권은 1901년 11월에 地契衙門을 설치하고 지계 발행에착수하였다. 토지소유권 증서라 할 지계는 田畓・山林・家垈 등 전국의 모든

 ⁽貞鏞度,〈甲午農民戰爭과 두레와 執綱所의 폐정개혁〉(《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 집》8, 문학과지성사, 1987).

金容燮,〈朝鮮王朝 最末期의 農民運動과 그 指向〉(《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²⁾ 金容燮、〈光武年間의 量田地契事業〉(《亞細亞研究》31, 1968).

토지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지만 내국인 토지소유자에게만 발급되었다. 지계의 발급과 양전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1902년 3월 양지아문은 지계아문에 통합되었고, 이후 1904년 4월까지 지계아문이 양전과 지계 발급 을 담당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무년간에 양전이 시행된 곳은 전국의 3 분의 2에 달하는 총 218郡이었다.3)

광무양전의 목적은 갑오내각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양전을 통해 부세제도의 모순을 개혁하는 것에 더해 稅源 확대에 주력한 것과, 지계 발급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潛買나 盜買를 철저히 금지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었다. 4) 그렇지만 지주를 토지소유권자로 법인하고자 한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되었다. 양지아문의 양안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을 時主와 時作으로 기재하면서 소유권을 시주에게만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지계아문의 지계 발급에이르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 지계아문은 양안에 時主名 즉 지주의 이름만기재하였고, 소유권증서라 할 지계를 지주에게만 발급하였다. 말하자면 광무정권의 양전사업은 결국 대한제국정부가 지주적 입장에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도한 토지조사사업이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개화파 정권의 위로부터 근대화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었다.5)

한말 봉건적 토지소유의 치폐를 둘러싸고 지배층과 농민층은 수많은 민란과 대규모의 전국적인 농민전쟁을 치르면서 첨예하게 격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단행된 광무정권의 양전·지계사업은 지주층의 토지소유를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보증함으로써 지주제가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나. 역·둔토 정리사업

갑오개혁에는 재정제도와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驛·屯土 정리사업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 사업은 종래 각종 관아에 부속되어 있던 둔토와 역의 馬戶

³⁾ 왕현종,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⁴⁾ 이영호, 〈광무양안의 성격과 기능〉(《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⁵⁾ 金容燮, 앞의 글.

崔元奎,〈대한제국기 양전과 관계발급사업〉(《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首에게 지급되었던 역토를 각각 度支衙門과 工務衙門으로 이속시켜 관리하게 하고, 아울러 둔토・역토의 실제면적과 作人 및 賭租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이었다. 乙未查辦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서는 역토・둔토의 實結과 陳廢地 및 新墾地를 조사하였으며, 旣耕地의 작인과 도조을 조사하고 아울러 작인 1인당 10斗落 원칙에 따라 소작지 분배를 평준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6) 이로써 국가는 지주로서 역토・둔토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위한 기구 및 기초자료를 정비한 것이었다.

광무정권은 갑오개혁의 역둔토 정리사업을 이어받아 역토·둔토에 대한 정리사업을 일층 강화하였다. 광무정권은 1899년과 1900년에 각각 둔토와 역토의 관리권을 전부 宮內府 內藏院으로 이속시키고 또 한 차례의 역둔토 정비를 단행하였다. 광무사검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내장원에서 과견된 사검위원이 모든 역토와 둔토에 대해 토지를 조사하고 도조를 다시 책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토지조사는 당시 진행중이던 광무양전사업과 연계해 역·둔토에서 국가의 지주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을미사판(1895년)과 다른 점은 역·둔토에 편입되어 있는 民有地 중에서 공적 기록상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토지를 전부 국가소유로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광무사검이 국유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7) 한편 도조 책정은 광무개혁에 소요되는 경비조달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내장원이 그 경비조달에 큰 몫을 담당했던 바, 이를 도조 인상으로 충당하려 했던 것이다. 내장원은 광무사검에서 역·둔토의 도조 인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총 수확에 대한 도조율을 종전의 2~3할에서 3~4할로 높이고자 하였다.

광무사검의 역·둔토 도조 인상은 작인들의 반발로 실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광무정권의 도조 인상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1904년 내장원의 경리원은 역·둔토에 대해 일제히 打作制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이를 불변의 관례로 못박는 分半打作에 의한 賭租永定을 발

⁶⁾ 朴贊勝,〈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租〉(《韓國史論》9, 서울대 국사학과, 1983).

⁷⁾ 裵英淳,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研究》(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표하였다. 역·둔토의 도조를 일반 민전과 동일하게 총 수확의 5할로 인상하는 분반타작제를 향후 영구히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갑오내각에서 광무정권으로 이어지는 역·둔토 정리사업은 역· 둔토에서 국가의 지주적 토지소유권을 강화하고,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인 지대수취를 인상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위로부터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역·둔토 정리사업은 이 시기에 실시되었던 양전·지계사업과 연결되면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주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되었다.

역·둔토 정리사업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해 한국 내정을 지배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통감부는 1907년 역·둔토의 收租 업무를 탁지부로 이관하고, 역·둔토를 국유화함과 동시에 그 명칭도 역둔토로 통일시켰다. 이어 1908년에는〈驛屯土管理規定〉을 반포하여 소작료 수취업무를 각 지방의 재무감독국이 담당하게 하고 소작료도 부근의 민간소작료의 9할 수준까지 일괄 인상시키려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제국 시기에 비해 훨씬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가.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상업적 농업의 재편

일본은 1894년에 기습적인 전쟁도발로 청국을 구축하는 한편 친일내각을 앞세워 농민전쟁을 진압함으로써 조선을 자국의 독점적인 식민지로 강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정책은 요동반도 할양을 둘러싼 프랑스·독일·러시아의 이른바 삼국간섭과 민비시해사건에 촉발된 조선에서의 의병운동에 부딪쳐 일단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즉각 러시아와 협상을 벌여 조선에서의 이권을 균점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자신이 탈취한경제적·군사적 기득권을 고수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확대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접근해 러시아를 구축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8) 그리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1896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협력해 목포·진남포·마산·성진을 추가로 개항시켰고, 일본 상인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사실상 철폐시켰으며, 조선의 중요 도시

⁸⁾ 朴宗根,《日淸戰爭と朝鮮》(東京:靑木書店, 1982).

들과 정거장·항만 등에 상점·공장·경찰서·헌병대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 침략요새를 건설하였다. 또한 철도와 전신의 부설권을 탈취하였고, 금광을 위시해 철·동·흑연광의 채굴권을 강탈하였다. 이에 기반해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한 자본제 상품들을 아무런 제한없이 조선 전역으로 침투시켰으며,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였던 쌀·콩·牛皮·금·철광석 등을 대량으로 수탈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1893년에 130만 円이던 것이 1900년에는 995만 엔, 1904년에는 2,039만 엔으로 폭증했으며, 조선으로부터의 수입도 1893년 252만 엔에서 1900년에는 1,178만 엔, 1904년에는 1,154만 엔으로 확대되었다.9)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확대되고 조선과 일본간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조선 경제에는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면업, 鐵手工業 등 조선의 농촌 수공업이 급속히 궤멸해 간 것이었다. 면업과 철수공업 등은 개항후 상품경제가 일층 더 발전함에 따라 자본제 수공업경영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가령 면업의 경우 18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진주・의성 등 면업중심지에는 여러 명의 직공을 고용하여 전업적으로 목면을 상품생산하는 부농경영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농경영은 1895년 이후 값싼 일본 면포가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시장에 침투하면서 급속히 몰락하기시작하였다. 조선농민들은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수입한 방적사를 이용해일본 수입면포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환율변동으로 수입방적사의 가격이 인상되자 그 또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05년 이후가 되면 조선의 면업은 자가용 농가부업으로 몰락하였다. 군사적 침략을 앞세운 일본의이러한 경제침략은 결국 조선의 주요 수공업을 거의 다 궤멸시켰고, 조선을일본의 상품판매지로 재편시켰던 것이다.100

다른 한편 일본은 조선에서 쌀·콩 등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매집해 자국으

⁹⁾ 村上勝彦,〈植民地〉(《日本産業革命の研究-確立期日本資本主義の再生産構造》,東京大學 出版會,1975).

¹⁰⁾ 梶村秀樹、〈李朝末期の棉業の流通と生産構造〉(《朝鮮に於ける資本主義の形成と 發展》、東洋文化研究所、1968).

宮嶋博史,〈土地調査事業の歷史的前提條件の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로 수입해 갔다. 당시 일본은 殖産興業을 위한 자본을 농업수탈에서 조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자국 농업의 생산력만으로는 일본 자본주의의 국제경쟁력이 되었던 '저임금=저곡가 체제'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은 1895년 이후 쌀과 콩을 중심으로 하는 값싼 곡물을 대량으로 조선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취했다. 일본은 정치적·군사적 압박으로 조선의 방곡령을 무력화시키면서 자국 상인들을 주요 곡물산지에 침투시켜 곡물을 수집하였다.11이로 인해 쌀과 콩의 상품성이 높아지면서 농업생산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상품성이 하락하고 있던 면화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콩 재배를 위해 개간이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다각적으로 발전해 왔던 조선의 상업적 농업은 점차 일본 수출곡물이었던 쌀과 콩으로 단순화되어 갔던 것이다.12이 일본의 경제적 기관을 이되지 되었다. 지원 경구 조선과 이보 사이에 싸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조선과 일본 사이에 쌀·콩 등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위시한 각종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인 국제 농공분업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국내적인 분업관계의 발전에 기반해 전개되었던 다각적인 상업적 농업을 몰락시킴으로써 농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농민경제의 몰락은 면화나 면포를 생산했던 지역일수록 더욱심각하였다. 또한 화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조선의 농민들에 대한 일본 상인의 고리대 자본이나 前貸資本의 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의 토지상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것은 지주제가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다른 한편 곡물 상품화의 확대는 지주들로 하여금 지대수취를 강화하고, 토지소유를 확대하며, 지주제를 상업적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일제의 농업식민책과 토지법제의 개정

일본은 무역과 상품유통상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을 자국 공산품의 독점적 상품시장이자 농산물 공급지로 지배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은

¹¹⁾ 吉野誠, 〈李朝末期に於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1978).

河元鎬,〈開港後 防穀令實施의 原因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9・50・51, 1985).

¹²⁾ 李澗甲, 〈1894~1910년의 상업적 농업의 변동과 지주제〉(《韓國史論》25, 서울 대 국사학과, 1991).

명치유신 이후 지주제를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자본주의를 성립시켜왔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소작지·소작농을 기초로 한 과소 영세농경영의 확대 및 노동쟁의, 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등 사회모순이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군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개발을 통해 해소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상품시장으로 지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고 보완할 식민지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그러한 의도는 먼저 조선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농업식민 책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1900년부터 다년간 조선의 농업에 대해주도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는 기후・土性・수리・농구 및 주요작물 재배법에서 지가, 토지매매의 관습, 지주소작제, 교통운수 등에 이르는 광범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韓國土地農産調查報告》・《朝鮮農業概說》・《韓國殖民策》・《朝鮮農業移民論》등으로 간행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사에 근거해 조선의 농업을 자국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식민지 농업으로 재편하는 방도로 자국의 지주·자본가 계급이 중심이 되어 한국농민을 소작농민으로 지배하는 농업식민책을 수립하였다. 일본 자본주의의 농업문제를 식민지 지주제로 해결하는 식민정책이었다.13)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농업식 민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지주·자 본가 계급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금 지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광무정권의 지계발급사업을 강압적으로 중단시 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중 단된 양전을 다시 계획하는 한편, 한국의 전체 토지를 관리할〈不動産所關法〉 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의 토지 잠매가 급증하자 일 본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여기에 힘을 얻어 한국정부

¹³⁾ 金容燮,〈日帝의 初期 農業殖民策과 地主制〉(《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一潮閣, 1992).

는 1907년 6월〈不動産所關法〉을 입안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다는 대전제하에 紙券 발행, 등기제도의 시행, 경작권을 포함한 賃租權登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은 동년 10월 16일 법률 제 6호〈土地建物의 賣買 交換 讓與 典當에 관한 法律〉로 공포되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일본이 추진하는 농업식민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본은 이 법률을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한국인과 동등하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1906년 10월 26일에 공포하여 법률 제 6호 〈토지건물의 매매 교환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게 한 〈土地家屋證明規則〉이 그것이다.14〉

일본의 강요로 제정된〈토지가옥증명규칙〉은 민간에서 관행되던 토지 거래에 관청의 증명을 덧붙여 盜賣・偸賣 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외국인에게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인정하였다.15) 일단 이 규칙의 제정으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한 일본은 곧이어 이 규칙 공포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다량의일본인 소유 潛賣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1908년에 제정되는〈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이 그것이었다. 이 규칙은〈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 이전에 잠매되었던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公簿로 소유권 보존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16)

또한 일본은 농업식민책을 추진하기 위해〈國有未墾地利用法〉의 제정을 강요하였다. 1907년에 공포된 이 법령은 민유지가 아닌 原野・황무지・간석지

¹⁴⁾ 崔元奎, 《韓末 日帝初期 土地調査와 土地法 研究》(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5)《}舊韓國官報》, 제3598호, 1906년 10월 31일, 〈勅令 제65호:土地家屋證明規則〉. 제8조 당사자의 一方이 외국인으로 本則을 依호야 증명을 受혼 경우에는 日本 理事官의 査證을 受호되 若 査證을 受치 못한면 제2조의 효력을 生치 못홈이라.

^{16)《}舊韓國官報》, 제4130호, 隆熙 2년 7월 20일, 〈勅令 제47호: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제1조 토지 又는 가옥의 소유자가 左記各號의 一에 해당한는 자(土地家屋證明 規則施行前에 토지 又는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의 증명을 군 수 又는 부윤에게 신청홈을 得喜.

제3조 외국인이 제1조의 증명을 受코져호는 자는 此屋 日本理事官에 신청홈이 可홈.

등을 개인에게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대부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한 토지를 개간할 경우 이 토지를 불하하거나 분여할 수 있게 하였다. 농업조사에서 농지로 전용이 가능한 막대한 미간지가 존재함을 확인한 일본은 이를 개간해거대 규모의 농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토지법의 개정은 결국 일본이 의도한 바대로 조선에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확대시키고 식민지 지주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농업식민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인 지주의 육성에 더해 조선인 지주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농업식민책은 일본의 과잉자본 또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수단도 되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본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농업의 전면적 재편은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인 대지주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중핵이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농업식민책은 일본인 대지주를 우선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에서 지주제 전반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주제 육성책은 대한제국의 지주보호정책보다 훨씬 강력하였다. 대한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정부는 지주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대를 앞세워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해 갔던 일본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농업식민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한국농민들의 저항을 군대로 제압해 갔다. 그로 인해 일본의 농업식민책은 지주제 발전의 보다 강력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대한제국의 농업정책이나 일본의 농업식민책이 지주적 토지소유를 보호하고 지주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다른 한편 일본으로 곡물수출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지주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 변동 양상을 살피면 우선 지주들의 토지겸병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토지겸병은 먼저 조선인 지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농민층의 반봉건투쟁이급격히 고양되었던 1894년까지는 지주층의 토지소유 그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였다. 지주가 농민들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보유하지 못하는 한지주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작인 관리가 철저하지못했던 궁방전에서도 나타났다.17) 그러나 1894년의 농민전쟁 진압을 계기로이후 지주적 토지소유가 확고해질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은 경쟁적으로 토지겸병에 나섰다. 개별 지주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면 羅州 李氏家나 古阜 金氏家 등 상당수의 지주가 이 시기에 토지소유를 확대하고 있었다.18) 지주층의 토지 겸병은 당시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 농민들이 몰락하고 있었으므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주들은 곡물판매로 얻어진 수입으로 몰락하는 농민들이 방매한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으나, 주로 고리채를 매개로 토지소유를 늘려갔다. 농민들의 대부분은 지주로부터 農糧이나 農資金을 빌려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주들은 이를 년간 이자율이 5할을 상회하는 長利나 甲利로 대부하여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토지를 빼앗았던 것이다.

이 시기 지주층의 토지겸병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각도별《小作慣行調査》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던 소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작관행을 조사한바 있었다. 이 때 '대지주로 성장한 연대'를 조사하였는데 1894년에서 1910년사이에 토지를 겸병해 대지주로 상승한 경우가 다수를 점했다. 다음으로 보다 상세하게 충청남도의 조선인 대지주의 창업연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이를 정리해 보면 총 89명의 지주 가운데 1894년에서 1910년사이에 토지를 겸병해 대지주가 된 경우가 30건에 달한다. 전체 대지주 가운데 창립연도가 밝혀지지 않은 21건을 제외하면 약 4할에 달하는 지주들이 이 시기에 집중

¹⁷⁾ 李榮薰,〈開港期 地主制의 一存在形態와 그 停滯的 危機의 實相〉(《經濟史學》 9, 1985).

¹⁸⁾ 金容燮、(韓末・日帝下의 地主制-事例 3, 羅州 李氏家의 地主로의 成長과 農場經營〉(《震檀學報》42, 1976).

^{———,〈}韓末·日帝下의 地主制-事例 4, 古阜 金氏家의 地主經營과 資本轉換〉 (《韓國史研究》19, 1977).

적으로 토지를 겸병해 대지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19)

〈표 1〉 충청남도의 조선인 대지주의 군별· 창업연도별 분포

		1875년 이전	1876 ~1893	1894 ~1903	1903 ~1910	1911 ~1920	1921 ~1930	미 상	계
공	주	- 1 -	1	2	1010	1020	1	5	9
연	7]		_	_	1	1	_	Ü	2
대	전								
논	산			3	7		2	1	13
부	여								
서	천		1						1
보	령								
청	양	2	1						3
홍	성	1	1	1					3
예	산		2	2	1	3			8
서	산		4	3	3	4	1	2	17
당	진			2	2				4
아	산			1				1	2
천	안								
서	울		2	2		6	2	12	24
인	천					1			1
고	양					1			1
대	구					1			1
계		3	12	16	14	17	6	21	89

^{*}安薺霞堂,《忠淸南道發展史》(湖南日報社, 1930), 269~300\.

그러나 이 시기의 토지겸병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가는 일본에 비해 5분의 1에서 최고 30분의 1까지 저렴하였고, 따라서 지주경영을 할 경우 풍흉을 평균하더라도 1할 8분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의 지주경영에 비교해 무려 1할 4분이나높은 수익율이었다. 20) 따라서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조선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농장을 개설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의 토지겸병은 1900년대 초반

¹⁹⁾ 宮嶋博史, 〈植民地下朝鮮人大地主の存在形態に關する試論〉(《朝鮮史叢》5・6, 1982).

²⁰⁾ 金容燮,〈日帝의 初期 農業殖民策과 地主制〉(《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一潮閣, 1992).

부터 몰락농민의 토지를 잠매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의 토지겸병은 한국정부가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토지법제를 개정하게 하는 등 농업식민책을 본격화함으로써 일본인의 토지겸병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적게는 수십 정보에서 많게는 무려 6천여 정보에 이르는 대토지를 겸병해 지주제 농장을 창설한 일본인 회사수가 1908년에 이미 29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중에서 1909년말 현재 비교적 큰 규모의 농장을 개설했던 일본인 회사들의 토지겸병실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韓國與業株式會社가 황주・나주・무안・해남・함평・김해・양산 등의 곡창지대에서 무려 6,095정보에 달하는 농지를 겸병하였고, 히가시야마 농장과 무라이 농장이 4천 정보를 상회하는 토지를 겸병하였으며, 1천 정보 이상의 토지를 겸병한 회사가 8개나되며, 이들 15개 농장회사가 겸병한 토지만도 무려 2만 7천여 정보에 달했다.

〈표 2〉 1900년대의 일본인 농장회사의 토지겸병 실태

우지모또 농장 91 구니다께 농장 90 이시까와현농업주식회사 73	소유면적 정보) 소유지 분포 지역
오꾸라 농장 2,38 아사히 농장 1,78 구마모도 농장 1,59 모리 농장 1,52 호소가와 농장 1,00 한국실업주식회사 98 우지모또 농장 91 구니다께 농장 90 이시까와현농업주식회사 73	
구니다께 농장 90 이시까와현농업주식회사 73	212 김해・창원・함안・양산 380 익산・금구・만경・김제 780 강진・나주・무안・광주 590 김제・금구・태인・고부 520 황주・용강
미야사끼 농장 48	구성 900 수원·남양·안산 736 김제 499 익산·김제·만경 488 옥구·임피·익산·만경 525 영일·홍해

^{*}山口 精,《朝鮮産業誌》上(寶文館, 1910), 709~710\.

일본인의 토지겸병은 1908년 일본이 東洋拓植株式會社를 설립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일본은 1908년 식민지 침략의 별동대 역할을 담당할 국책회사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일본은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정부에 300만 원의 출자를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역·둔토와 宮庄土 가운데서 東拓이 사업을 경영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우량한 團聚地 9개처를 선정하여 총 17,714정보의 농지를 동척에 인도하였다. 21) 동척은 정부출자지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 농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농지를 대량 매입하여 일거에 64,862정보의 토지를 겸병하는 대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일본인의 토지겸병은 국유화된 역문토를 불하받거나〈국유미간 지이용법〉(1907)에 의해 대부받은 미간지를 개간하여 불하받는 방식으로도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인 개인 및 회사 또는 일 제가 겸병한 토지는 무려 40여 만 정보에 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인 지주 및 일본인 지주·자본가의 이러한 토지겸병이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그것도 곡물운송과 유통에 편리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표 2〉를 보면 일본인 지주·자본가들은 철도로 곡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부선 유역이나, 배를 이용해 강 또는 바다의 수로로 곡물을 운송할 수 있는 김제·만경·익산·나주·광주·해남·김해·영일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농장을 개설하였다. 일본인의 토지투자는 소작료 취득에 목적을 두었고, 소작료로 취득한 곡물은 상품으로 판매되어야만 이윤을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겸병도 〈표 1〉을 보면 유통조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더욱 활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대지주의 형성이 두드러진 지역은 금강을 수 송로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주·논산과 서해 수로를 통해 바로 곡물을 반출할 수 있었던 예산·서산·당진이었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일부 지주들이 유통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고부 김씨가의 당초 세거지는 고부군 富安面이었다. 그러나 이 곳

²¹⁾ 한국정부가 출자한 토지는 9,932정보였으나, 이는 結負·斗落·日耕으로 측량 된 면적을 町步로 환산한 수치였다. 이 토지를 실측하였을 때 17,714정보가 되 었다.

은 치안상의 문제도 있었고 소작료를 판매할 茁浦港까지 거리가 멀어 지주 경영을 발전시키기에 애로가 많았다. 이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김씨가는 1907년 곡물 운송항이었던 부안군의 줄포로 이사하였으며, 그것이 이후 비약 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²²⁾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의 지주제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갈 뿐만 아니라 구조나 성격면에서도 일본이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자본가들을 앞세워 추진하려 했던 농업식민책의 의도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특히 농업식민책에 규정되어 지주경영과 유통경제의 결합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한국의 지주제가 일본 자본주의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의 지주제는 점차 소작농민에 대한 수탈로 일본 자본주의의 농업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주·자본가의 식민지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식민지지주제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선도한 것이 다름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농장을 개설한 일본인 지주·자본가들이었다.

지주제의 성격이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었으므로 지주 구성에서도 변화가일어났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일제의 농업식민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유통경제에 잘 적응하는 지주일수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한 지주경영을 대표했던 것이 기업형 일본인 농장들이었고, 조선인으로서는 고부 김씨가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대농장들은 단기간에 조선의 지주제 전반을 선도하는 중핵으로 성장하였으며, 고부 김씨가도 100정보를 소유하던 지주에서 불과 십수년만에 2,000정보가 넘는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지주구성을 보면 조선인 서민지주층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거의가 유통경제 속에서 성장한 상인이나 부농 출신들로 거기서 축적한 부로 토지를 매입한 자들이었다. 나주 이씨가의 지주로의 성장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제에 저항한 지주들이나 아니면 지주경영을 구래의 봉건적 특권에 의존하려 했던 양반 지주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급 속히 몰락하였다. 개항후 강화지방에서 곡물수출로 지주경영을 크게 성장시

²²⁾ 金容燮, 앞의 글(1977).

켰던 김씨가가 1907년 의병운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경우가 그것이었다.²³⁾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가, 역둔토에서 중답주의 제거와 소작권의 약화

이 시기 지주제의 발전은 역으로 소작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지주적 토지소유권이 강화되면 농민적 토지소유권이라 할 소작권이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농민적 토지소유가 가장 발전하였던 토지는 역둔토였다. 따라서 역둔토에서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지주제 발전에 따른 소작권 변동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역문토에서는 을미사판(1895년)이래로 몇 차례의 토지 조사와 도조 책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주제를 강화하려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역문토에서 본격적으로 소작권이 약화되는 것은 일제의 강요로〈역문토관리규정〉이 만들어지는 1908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때는 일본이 추진하는 농업식민책에 따라 일본인 지주·자본가들이 본격적으로 토지겸병에 나서고 있었고, 역문토 또한그들의 겸병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차제에 이러한 농업식민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작농민의 권리를 약화시켜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역문토의 소작관행이었다. 〈역문토관리규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역둔토관리규정〉에서 소작권의 약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中畓主, 즉 중간소작인의 존재를 허용했던 농업관행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었다. 역·둔토나 궁장토 등은 그 성립 사정이 복잡하였다. 이들토지를 조성할 때 당해 관청이나 궁방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농민들이낮은 지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지를 투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경우 관청이나 궁방은 佃作 농민의 경작권에 대해서 일정한특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령 수해로 파괴

²³⁾ 金容燮, 〈韓末·日帝下의 地主制 -事例 1, 江華 金氏家의 秋收記를 통해서 본 地主經營〉(《東亞文化》11, 서울대, 1972),

된 경지를 작인의 노력과 경비로 복구할 경우 경작권에 대해 특권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그 특권은 지대를 저렴하게 하고 경작권을 永代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나아가 가령 도지권과 같이 작인이 경작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역둔토에서는 경작권이 轉貨되어이중으로 소작관계가 성립하였다. 이중의 소작관계란 작인이 자신의 차경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작인은 중간에서 고율의 지대를 수취하여 저율의 도조를 납부하고 중간 차액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인을 중답주라 불렀다.

중답주는 지주측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의 노력 중간에서 가로채는 존재였고, 소작인 측에서 보면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존재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러한 존재형태는 지주제라는 체제 속에서는 작인이 반지주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형태이고 과정이었다. 중답주에 의한 이중의 소작관계는 한말에 반봉건투쟁이 발전하면서 지대율이 낮아지자 크게 확대되었다.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에는 지방의 유력자, 즉 권세가나 舊史屬 가운데서 중답주로 되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중답주는 지주로서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고 지주제가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쐐기역할을 하였다.²⁴⁾

그러므로 지주층은 가능한 한 이들을 지주경영에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궁장토를 소유하였던 宮房들은 여러 차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답주의 저항으로 그러한 조치들은 실효를 내기 어려웠던 것인데, 일제는 〈역둔토관리규정〉을 제정하게 하고 물리력으로 이들을 해체시켜 갔던 것이다. 일제는 중답주를 제거할 필요성에 대해 "小作權의 安固를 期하고 농사의 개량을 도모"25)하기 위해서라 했지만, 그 주목적은 지주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었다.

둘째는, 소작농민의 소작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소작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었다. 〈역둔토관리규정〉은 역둔토의 관리를 각 지방의 재무감독 국장 관할로 변경하고, 소작인은 반드시 문서로 소작계약을 체결하게 했으

²⁴⁾ 金容燮, 〈韓末에 있어서의 中畓主와 驛屯土地主制〉(《東方學志》20. 1978).

²⁵⁾ 朝鮮總督府, 《驛屯土實地調査概要》(1911), 8\.

며, 소작기간은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물론 계약의 갱신은 가능한 것이었지만,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작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소작인이 소작권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매매·전당·전대하지 못하게 명시하였고, 소작인이 소작료를 체납하거나, 토지의 형태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혹은 토지를 황폐하게 했을 경우, 그리고 역둔토 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정당치 못한 소행을 할 때에는 정부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260 요컨대 소작기간이 단축되었으며소작권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 지주권은 월등히 강화된 것이다.

나. 지대 수취의 강화와 집수법의 도입

지주권이 강화되면서 이 시기에는 지대 수취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었다. 당시 지대의 인상은 국가에 의해 선도되었다. 역·둔토의 지대는 1904년 반타작제의 도입 시도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후 탁지부가 전국의 역·둔토와 궁장토를 관할하게 되면서 지대는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그러나 탁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09년에 다음과 같은 소작료 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종래에 있어서의 소작료는 現物納制를 채용하며, 그 요금은 上中下로 구분된 品等마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수확고를 조사하고, 또 당해 지방에서 많이 행해진 민간 소작관례에 의하여 小作料額을 조사하고, 이에 1906년이래 3개년간의 平均穀價를 곱한 額에서 1割을 공제한 것을 소작료액으로하여 이를 각 역둔토에 구분 적용하여 改定貸與料額으로 詮定한다(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下,參考篇, 1932, 337쪽).

즉 민간소작료의 9할 수준으로 소작료를 인상하고자 한 것이다. 19세기말역·둔토 소작료가 총수확의 2~3할 수준이었음을 생각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2할여의 소작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민유지에서도 지대가 크게 인상되고 있었다. 민유지에서는 대체로 1904년 이후 지대의 급속한 인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주목할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대의 인상은 곡물의 상품화가 발전했던

²⁶⁾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下, 參考篇(1932), 310\.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토지를 매집해 농장을 개설한 지역과 한국인 지주들이 활발하게 토지를 겸병하였던 지역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수년 사이에 1~2할 정도의 지대인상이 이루어졌다. 둘째, 한말 棉業을 위시해 농민적 상품생산이 번성하였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농민 경제가 몰락한 지역에서도 역시 1~2할 정도의 지대 인상이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여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변동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지대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제의 확대는 물론이고 지주제의 강화도 식민지 지주제로의 구조 재편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임을 나타낸다.27)

지대의 인상은 田·畓 모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더 많았다. 그 방법은 지대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지주와 소작이 반씩 부담해 왔던 지세나 種子穀을 전부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수취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즉 수확을 절반씩 나누던 打租法 대신에 執穗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집수법은 執賭法・檢見・執穗畓檢으로도 불린 것으로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소작인 입회 하에 직접 일정 면적의 수확을 엄정히 조사하여 전체 수확고를 산정하고, 조세・종자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수확의 절반을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었다. 타조법은 비록 수확의 절반씩을 나눈다 하지만 관례상 지대는 통상 수확의 4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집수법은 수확고의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지주가 일방적으로 주도함으로써지대를 1~2할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대 인상이나 집수법 도입에 앞장선 것은 일본인 농장 지주들이 었다.

[소작] 계약양식의 연혁: 口頭約束에 의한 것은 재래의 계약방법으로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小作證書에 의한 계약은 明治 43년경부터 驛屯土 小作認許證 및 鄕校土地小作認許證 東洋拓殖株式會社의 小作證書가 그 범례로 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여 차제에 증가하였다.

²⁷⁾ 李潤甲, 앞의 글.

[소작계약 기간의] 변천경향: 古來의 소작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함없이 소작인 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는 한 永年 계속되는 관습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약 25년(1905년경-인용자 주)전 驛屯土 소작지의 소작기간을 설정하자 그것을 모방하여 기간을 정하게 되었다.

(慶尙北道,《小作慣行調杏書》, 1930, 2 · 37 等).

[畓의 執和의 기원 연혁]

京畿: 약 20년 전 동척회사가 소작료 징수에 檢見制를 행하고, 뒤이어 東 山農事株式會社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을 시발로 이후 각 지역에서 행해 집.

忠北:약 15년전 동척회사가 행하자 지주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점차 시행 되기에 이름.

忠南: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약 15년전 내지 20년전 동척회사 기타 농사회사가 이를 도입한 것이 가장 유력한 동인이 됨.

黃海: 근년 동척회사를 시발로 기타 회사농장 및 일본인 지주 및 조선인 부재지주 등이 이를 본받아 평야지대에서 일시에 성행하게 됨.

忠南・咸南・咸北: 동척회사가 처음으로 시행함 (朝鮮總督府,《朝鮮의 小作慣行》上, 1932, 128~129쪽).

이 자료들에 의하면 동척을 위시한 일본인 농장들이 먼저 소작기간을 제한하는 소작계약서와 집수법을 도입하여 소작권을 약화시키고 소작료를 인상했으며, 이를 인근의 한국인 지주들이 본받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지주제는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의 실현을 노리고 농장을 개설하였던 일본인 지주들의 선도하에 재정비되고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갑오개혁 이후 한국 농업에서는 일본의 침략으로 농민경제가 몰락하고 대신 지주들의 토지겸병이 확대되고 지대수탈이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지주제의 확대와 강화는 일본이 추진한 농업식민책에 호응해 한국의 주요 농업지대에서 대량으로 토지를 겸병해 일거에 거대지주가 되었던 일본인지주·자본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지주제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강화

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나 재생산구조면에서도 식민지 지주제로 재편되는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지주제가 확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농민층은 강력히 저항하였다. 그 저항은 단순한 抗租運動으로 전개되기도 했으나, 이 시기 지주제 변동의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반제 반봉건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의 항조는 지대 인상폭이나 소작 조건의 변화가 가장 컸던 역둔토에서 가장 활발했다. 역둔토에서 항조는 개별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집단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²⁸⁾

개별적인 항조는 지방사회에서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豪勢家・富家・吏屬・兵丁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중에는 직접 역·둔토를 경작하는 소작인도 있었지만 중답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집단적인 항조는 영세 빈농층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집단적인 항조는 내장원에서 타작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대를 인상하려한 1904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작인들은 타작제의 도입을 '加賭' 즉 지대 인상이라 거부하며 捧稅官이 파견한 幹事人이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심지어는 실력행사로 구축하기까지 하였다. 작인들은 항조투쟁에 자신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한 '一心契'・'農契' 등의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909년 安邊郡 朔安驛에서는 타작제에 반대해 수십 명의 작인이 '일심계'를 칭하면서 마름[舍音]을 난타하고, 일부에서 타작해 거두어 둔 도조를 도로 나누어 가져가 버린 사태가 발생하였다.29) 한편 작인들의집단적인 항조는 민란을 방불케 하는 형태로까지 격화되기도 하였다. 1899년 低平郡에서는 壯屯의 無土屯에 대한 도조 강제에 대항하여 각 洞의 작인들이 沙鉢通文을 돌려 賭稅 납부를 거부하고, 觀察府에서 巡檢을 파견해 주동자를 검거하려하자 수백 명의 작인이 이를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30)

지주제 강화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저항은 나아가 반제 반봉건의 義兵 운

²⁸⁾ 朴贊勝, 앞의 글(1983).

^{29) 《}訓照》 14冊, 光武 4年 12月 20日, 安邊郡守에의 訓令.

^{30)《}經理院驛屯土成冊》2冊, 光武 3年 9月 23日, 砥平郡守報告書.

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31) 의병들은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에 편승해 치부에 열중한 지주나 富民들을 "다만 부자될 생각만 하고 나라 일은 돌보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고 공격하였다. 의병들은 소수 애국적인 지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주층을 공격하였다. 의병의 공격은 추수곡을 탈취하거나 마름이지대를 징수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경우 의병들은 소작인들에게 추수곡을 지주에게 납부하지 말고 대신 의병부대에 납부해 국권회복을 후원하게 하였다. 의병이 지주층을 공격하면서 防穀수을 공포하기도하였다. 그 방곡령은 지방의 富饒民들이 곡가의 지역간 차액을 노리고 곡물을 타지역으로 暗賣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농촌시장을 보호하고 곡가를 안정시켜 소빈농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이 시기에는 비록 지주제가 확대,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지주경영 자체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거두어들인 지대를 경찰서로 옮겨보관하는 지주도 있었고, 도조를 운반할 때 일본 순사의 호송을 받는 지주도 있었다. 또한 의병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 일본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서울이나 항구・읍 등지로 피신하는 지주도 적지 않았으며, 헌병출장소를 자기 지역에 유치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지주도 있었다. 경영이 불안정하기는 일본인 농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일본 헌병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지만 그렇더라도 자체 경비체제를 갖추고 늘 경계 속에서 불안하게 지주제를 경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제가 자국의 지주·자본가를 앞세워 추구하고자 한 식민지 지주제 체제로의 재편은 착수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재편은 일제가 폭압적으로 의병전쟁을 진압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화 될 수 있었다.

〈李潤甲〉

³¹⁾ 金度亨,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研究》(知識産業社, 1994), 350~365\.